구분	세번	품명	수 입 요 령	관 련 법 령	비고
	0101211000	농가 사육용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211000	농가 사육용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211000	농가 사육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12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21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21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1291000	경주말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291000	경주말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291000	경주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12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2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29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1300000	당나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1300000	당나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1300000	당나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 5에 기재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190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90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1900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211000	젖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211000	젖소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2212000	육우(肉牛)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212000	육우(肉牛)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221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219000	기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22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21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291000	젖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292000	육우(肉牛)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29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2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2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310000	번식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310000	번식용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310000	번식용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391000	젖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392000	육우(肉牛)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39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3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3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901000	번식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901000	번식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2901000	번식용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901000	번식용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909010	젖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909010	젖소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2909020	육우(肉牛)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909020	육우(肉牛)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2909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909090	기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290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290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100000	돼지(번식용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3100000	돼지(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100000	돼지(번식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100000	돼지(번식용의 것)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3100000	돼지(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통합공고 별표 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4101000	면양(번식용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4101000	면양(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4101000	면양(번식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4109000	면양(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4109000	면양(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4109000	면양(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4201000	젖염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4201000	젖염소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4201000	젖염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4201000	젖염소	염소(유산양 포함)는 (사)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42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42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42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11000	닭(번식용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111000	닭(번식용의 것)	대한양계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5111000	닭(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11000	닭(번식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1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1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1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20000	칠면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131000	오리(번식용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131000	오리(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31000	오리(번식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31000	오리(번식용의 것)	(사)한국오리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513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13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3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40000	거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140000	거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40000	거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50000	기니아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150000	기니아새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150000	기니아새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941000	닭(번식용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941000	닭(번식용의 것)	대한양계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5941000	닭(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941000	닭(번식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949000	닭(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94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5991010	오리(번식용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991010	오리(번식용의 것)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991010	오리(번식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991010	오리(번식용의 것)	(사)한국오리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105991090	오리(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991090	오리(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991090	오리(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992000	칠면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99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999000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59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10000	영장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위생조건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10000	영장류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10000	영장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10000	영장류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121000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21000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고래류(돌고래 포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106121000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고래류(돌고래 포함)는 제외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22000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22000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3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41000	토끼(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41000	토끼(번식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41000	토끼(번식용의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41000	토끼(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141000	번식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49000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4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4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14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14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91000	개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1000	개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1000	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91000	개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3000	사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93000	사슴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3000	사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3000	사슴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3000	사슴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193000	사슴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194000	곰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4000	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4000	곰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4000	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95010	여우(번식용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95010	여우(번식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5010	여우(번식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5010	여우(번식용의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5090	여우(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95090	여우(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5090	여우(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5090	여우(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6010	밍크(번식용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96010	밍크(번식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6010	밍크(번식용의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6010	밍크(번식용의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196090	밍크(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96090	밍크(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6090	밍크(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6090	밍크(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196090	밍크(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19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1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1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1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1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3에 게기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201000	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1000	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1000	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1000	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201000	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202000	자라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106202000	자라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2000	자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2000	자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203000	거북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3000	거북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3000	거북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203000	거북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3000	거북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2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20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2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310000	맹금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310000	맹금류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310000	맹금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310000	맹금류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330000	타조와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390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3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3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390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3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1063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106410000	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곤충, 응애, 선충 ,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꿀벌은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역・품목 및 위생조건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0106410000	벌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꿀벌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0106410000	벌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410000	벌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4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곤충, 응애, 선충 ,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01064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4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490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4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1064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106490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901000	양서류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901000	양서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901000	양서류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106901000	양서류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901000	양서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106901000	양서류	통합공고 별표7의3에 게기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106901000	양서류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106903010	갯지렁이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106903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9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90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106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106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106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곤충,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1201000	갈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1201000	갈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1201000	갈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1201000	갈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12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12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12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12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1300000	뼈없는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1300000	뼈없는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1300000	뼈없는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1300000	뼈없는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2201000	갈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2201000	갈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2201000	갈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2201000	갈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2201000	갈비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2022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22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22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22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2300000	뼈없는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2300000	뼈없는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2300000	뼈없는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2300000	뼈없는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3191000	삼겹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191000	삼겹살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91000	삼겹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91000	삼겹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319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1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19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3291000	삼겹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291000	삼겹살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91000	삼겹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91000	삼겹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329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32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329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4230000	뼈 없는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4230000	뼈 없는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230000	뼈 없는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230000	뼈 없는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4430000	뼈 없는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4430000	뼈 없는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430000	뼈 없는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4430000	뼈 없는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4500000	염소의 고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4500000	염소의 고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4500000	염소의 고기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5000000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5000000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역・품목 및 위생조건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5000000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10000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10000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610000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10000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210000	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210000	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6210000	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210000	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220000	간(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220000	간(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6220000	간(肝)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220000	간(肝)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291000	꼬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291000	꼬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검사소장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6291000	꼬리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291000	꼬리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292000	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292000	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6292000	족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292000	족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29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29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62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2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6410000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410000	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10000	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10000	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6491000	족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491000	족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91000	족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91000	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649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4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49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6800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800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800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800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800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31000	절단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31000	절단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31000	절단육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3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32010	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32010	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32010	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3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32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3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3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1010	다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41010	다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41010	다리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1010	다리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1020	가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41020	가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41020	가슴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1020	가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1030	날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41030	날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41030	날개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1030	날개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41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4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42010	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42010	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2010	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142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14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14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261000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61000	절단육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26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62010	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26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62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271000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71000	절단육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27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72010	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27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272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272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검사소장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41000	절단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41000	절단육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441000	절단육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41000	절단육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41000	절단육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42010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42010	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442010	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42010	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42010	간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42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42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44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4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42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51000	절단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51000	절단육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451000	절단육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51000	절단육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51000	절단육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52010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52010	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452010	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52010	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52010	간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52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452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45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5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452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41000	절단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41000	절단육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541000	절단육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41000	절단육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41000	절단육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42010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42010	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542010	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42010	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42010	간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42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42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54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4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42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51000	절단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51000	절단육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551000	절단육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51000	절단육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51000	절단육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52010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52010	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552010	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52010	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52010	간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52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552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55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5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552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3100	절단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603100	절단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603100	절단육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3100	절단육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3100	절단육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3210	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603210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603210	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3210	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3210	간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329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6032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6032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32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32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4100	절단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604100	절단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604100	절단육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4100	절단육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4100	절단육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4210	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604210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604210	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4210	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4210	간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429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76042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76042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42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76042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100000	토끼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8100000	토끼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100000	토끼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100000	토끼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8300000	영장류의 것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메추리, 꿩, 타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8300000	영장류의 것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300000	영장류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300000	영장류의 것	다음의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8401000	고래 · 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8401000	고래 · 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수입할 수 없음	IWC협약
	0208401000	고래 · 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401000	고래 · 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바다소의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840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840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바다소의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600000	낙타 및 기타 낙타과(카멜리대과)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8901000	사슴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8901000	사슴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901000	사슴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901000	사슴의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901000	사슴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8909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08909090	기타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메추리, 꿩, 타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890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90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909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8909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9100000	돼지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9100000	돼지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9100000	돼지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9100000	돼지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990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09900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0990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990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09900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120000	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120000	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20000	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20000	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190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190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2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2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2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2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10000	영장류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910000	영장류의 것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소, 말, 돼지(사육멧돼지), 사슴, 토끼, 메추리, 꿩, 타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10000	영장류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10000	영장류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21000	고래 · 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고래의 것	IWC협약
	0210921000	고래 · 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소, 말, 돼지(사육멧돼지), 사슴, 토끼, 메추리, 꿩, 타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21000	고래 · 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21000	고래 · 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21000	고래 · 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92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소, 말, 돼지(사육멧돼지), 사슴, 토끼, 메추리, 꿩, 타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2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포함)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검역소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2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92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소, 말, 돼지(사육멧돼지), 사슴, 토끼, 메추리, 꿩, 타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10991010	소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991010	소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91010	소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91010	소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9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99109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91090	기타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소, 말, 돼지(사육멧돼지), 사슴, 토끼, 메추리, 꿩, 타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91090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9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91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9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고래의 것	IWC협약
	0210999020	가금류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999020	가금류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99020	가금류의 것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99020	가금류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99020	가금류의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고래의 것	IWC협약
	0210999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2109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99090	기타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소, 말, 돼지(사육멧돼지), 사슴, 토끼, 메추리, 꿩, 타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99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포함)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검역소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210999090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9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10999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111000	비단잉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111000	비단잉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111000	비단잉어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119000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11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11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1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11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11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3에 게기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301190000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1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190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301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301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3에 게기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30191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1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191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21000	실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식용에 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1921000	실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식품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뱀장어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21000	실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22000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식용에 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29010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29010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	식품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뱀장어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29010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29090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29090	기타	식품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뱀장어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2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290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식품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1940000	대서양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thynnu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1940000	대서양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40000	대서양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5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의 통계서류(별지 제1,2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SBT협약
	030195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maccoyii)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SBT협약
	030195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5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5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2000	방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2000	방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4010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409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40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5000	붕장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5000	붕장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6000	갯장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6000	갯장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7000	먹장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7000	먹장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8000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8000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10	능성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10	능성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20	복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20	복어	다음의 것으로 식품공전이 정한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범위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복섬(Fugu niphobles) ② 흰점복(Fugu poecilonotus) ③ 졸복(Fugu pardalis) ④ 메리복(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⑤ 검복(Fugu vermicularis porphyreus) ⑥ 황복(Fugu obscurus) ⑦ 눈불개복(Fugu chrysops) ⑧ 자주복(Fugu rubripes rubripes) ⑨ 검자주복(Fugu rubripes chinensis) ⑩ 까치복(Fugu xanthopterus) ⑪ 금밀복(Lagocephalus inermis) ⑫ 흰밀복(Lagocephalus wheeleri) ⑬ 검은밀복 (Lagocephalus gloveri) ⑭ 불룩복(Sphoeroides pachygaster) ⑮ 삼채복(Fugu flavidus) ⑯ 강담복(Chilomycterus affinis) ⑰ 가시복(Diodon holocanthus) ⑱ 브리커가시복(Diodon liturosus) ⑲ 쥐복(Diodon hystrix) ⑳ 거북복(Ostracion cubicus) ㉑ 까칠복(Fugu stictonotu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9051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식용에 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1999051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9059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5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5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9060	숭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60	숭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60	숭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9070	미꾸라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70	미꾸라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70	미꾸라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9070	미꾸라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1999070	미꾸라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1999080	메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80	메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80	메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9080	메기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1999080	메기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Hexagrammos)속·아그라무스(Agrammus)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Hexagrammos)속·아그라무스(Agrammus)속]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Hexagrammos)속·아그라무스(Agrammus)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9092	붕어[카라시우스(Carassius)속은 제외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92	붕어[카라시우스(Carassius)속은 제외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92	붕어[카라시우스(Carassius)속은 제외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9095	민어(Argyrosomus japonicus와 Sciaenops ocellatus은 제외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95	민어(Argyrosomus japonicus와 Sciaenops ocellatus은 제외한다)	식품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95	민어(Argyrosomus japonicus와 Sciaenops ocellatus은 제외한다)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1999096	남방먹조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97	점성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99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199909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199909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1999099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211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1300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양코링쿠스 게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14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190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2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스테노레피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2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240000	터벗(프세타 맥시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290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3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기타의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사이프러스, 에콰도르, 마이크로네시아,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바누아트, 베네쥬엘라, 벨리제가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한 것	ICCAT협약
	0302330000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눈다랑어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ATTC 눈다랑어재수입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선망선 또는 낚시배(Baitboat)로 잡은 눈다랑어와 통조림용 또는 눈다랑어의 고기가 아닌 다른 부분(머리, 눈, 알, 내장, 꼬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IATTC협약
	03023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3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thynnu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23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3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남방참다랑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CCSBT)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남방참다랑어 어획모니터링 서식(CATCH MONITORING FORM) 원본 1부 또는 남방참다랑어의 재수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남방참다랑어 재수출/국내제품 양륙 후 수출서식(RE-EXPORT/EXPORT AFTER LANDING OF DOMESTIC PRODUC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CCSBT협약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해수부 고시)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maccoyii)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SBT협약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39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200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24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91000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92000	병어[팜푸스(Pampus)종]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93000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4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5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5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5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5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560000	블루 화이팅스(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590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7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7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7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74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뱀장어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74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274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2790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1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1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28200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어획선적국의 어획증명서류(별지 제3,5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2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이빨고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CCAMLR 어획증명서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2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50000	돔(스파리대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91000	방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92000	갈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93000	붕장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94000	갯장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95000	학꽁치(Hyporhampus sajori)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96000	돔(스파리대과를 제외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99020	복어	다음의 것으로 식품공전이 정한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범위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복섬(Fugu niphobles) ② 흰점복(Fugu poecilonotus) ③ 졸복(Fugu pardalis) ④ 메리복(Fugu vermicularis porphyreus) ⑤ 검복(Fugu vermicularis porphyreus) ⑥ 황복(Fugu obscurus) ⑦ 눈불개복(Fugu chrysops) ⑧ 자주복(Fugu rubripes rubripes) ⑨ 검자주복(Fugu rubripes chinensis) ⑩ 까치복(Fugu xanthopterus) ⑪ 금밀복(Lagocephalus inermis) ⑫ 흰밀복(Lagocephalus wheeleri) ⑬ 검은밀복 (Lagocephalus gloveri) ⑭ 불룩복(Sphoeroides pachygastes) ⑮ 삼채복(Fugu flavidus) ⑯ 강담복(Chilomycterus affinis) ⑰ 가시복(Diodon holocanthus) ⑱ 브리커가시복(Diodon liturosus) ⑲ 쥐복(Diodon hystrix) ⑳ 거북복(Ostracion cubicus) ㉑ 까칠복(Fugu stictonotu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99040	아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99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899090	기타	이빨고기는 어획선적국의 어획증명서류(별지 제3,4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2899090	기타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289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29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91	간·어란(魚卵)·어백(魚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911000	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911000	간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2912000	어란(魚卵)·어백(魚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912000	어란(魚卵)・어백(魚白)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2920000	상어 지느러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920000	상어 지느러미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29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2990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120000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13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14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190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23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24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25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25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326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뱀장어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26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326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3290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3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3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340000	터벗(프세타 맥시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3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4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기타의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사이프러스, 에콰도르, 마이크로네시아,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바누아트, 베네쥬엘라, 벨리제가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한 것	ICCAT협약
	0303430000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정부기관이 승인한 눈다랑어(Thunnus obesu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OTC협약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눈다랑어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ATTC 눈다랑어재수입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선망선 또는 낚시배(Baitboat)로 잡은 눈다랑어와 통조림용 또는 눈다랑어의 고기가 아닌 다른 부분(머리, 눈, 알, 내장, 꼬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IATTC협약
	03034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4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thynnu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34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4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thynnu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남방참다랑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CCSBT)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남방참다랑어 어획모니터링 서식(CATCH MONITORING FORM) 원본 1부 또는 남방참다랑어의 재수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남방참다랑어 재수출/국내제품 양륙 후 수출서식(RE-EXPORT/EXPORT AFTER LANDING OF DOMESTIC PRODUC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CCSBT협약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해수부 고시)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maccoyii)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SBT협약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3490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5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5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5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5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5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5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35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591000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592000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5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6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64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65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66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67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680000	블루 화이팅스(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691000	새꼬리민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69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3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3821000	가오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22000	홍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어획선적국의 어획증명서류(별지 제3,4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3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이빨고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CCAMLR 어획증명서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3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1000	은대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2000	갈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3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3020	옥두어[브랜치오스테거스 알부스(Branchiostegus albu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3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4000	붕장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50	조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6000	학꽁치(Hyporhamphus sajori)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8000	복어	다음의 것으로 식품공전이 정한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범위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8000	복어	다음의 것으로 식품공전이 정한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범위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복섬(Fugu niphobles) ② 흰점복(Fugu poecilonotus) ③ 졸복(Fugu pardalis) ④ 메리복(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⑤ 검복(Fugu vermicularis porphyreus) ⑥ 황복(Fugu obscurus) ⑦ 눈불개복(Fugu chrysops) ⑧ 자주복(Fugu rubripes rubripus) ⑨ 검자주복(Fugu rubripes chinensis) ⑩ 까치복(Fugu xanthopterus) ⑪ 금밀복(Lagocephalus inermis) ⑫ 흰밀복(Lagocephalus wheeleri) ⑬ 검은밀복 (Lagocephalus gloveri) ⑭ 불룩복(Sphoeroides pachygaster) ⑮ 삼채복(Fugu flavidus) ⑯ 강담복(Chilomycterus affinis) ⑰ 가시복(Diodon holocanthus) ⑱ 브리커가시복(Diodon liturosus) ⑲ 쥐복(Diodon hystrix) ⑳ 거북복(Ostracion cubicus) ㉑ 까칠복(Fugu stictonotu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10	보리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20	홍살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30	달고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40	임연수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5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60	아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70	먹장어(대서양 또는 태평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80	밀크피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91	민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92	까나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9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9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	어획선적국의 어획증명서류(별지 제3,5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389909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	이빨고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CCAMLR 어획증명서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389909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899099	기타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389909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3899099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39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91	간·어란(魚卵)·어백(魚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911000	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911000	간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39120	어란(魚卵)·어백(魚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912010	명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91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9120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3920000	상어 지느러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920000	상어 지느러미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39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3990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43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3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3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390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100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게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20000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31000	가자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3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40000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 마크로우리대과 · 멜라노니대과 · 메르루치대과 ·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46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6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어획선적국의 어획증명서류(별지 제3,5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446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이빨고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CCAMLR 어획증명서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447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7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44800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91000	붕장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92000	참다랑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92000	참다랑어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49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통계서류(①의 것은 별지 제1,2호 서식, ②의 것은 별지 제3,4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② 이빨고기의 것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499000	기타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49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99000	기타	기타 어류의 피레트중 복어의 것은 식품공전이 정한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범위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499000	기타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눈다랑어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IATTC 눈다랑어재수입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선망선 또는 낚시배(Baitboat)로 잡은 눈다랑어와 통조림용 또는 눈다랑어의 고기가 아닌 다른 부분(머리, 눈, 알, 내장, 꼬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IATTC협약
	0304511000	연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1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19000	기타	어획선적국의 어획증명서류(별지 제3,5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4520000	연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300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6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6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457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91000	붕장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91000	붕장어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4592000	가자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93010	연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93010	연육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593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93090	기타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599010	연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99010	연육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599010	연육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599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5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통계서류(①의 것은 별지 제1,2호 서식, ②의 것은 별지 제3,4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② 이빨고기의 것	CCSBT협약 CCAMLR협약
	0304599090	기타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599090	기타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6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6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6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6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6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6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6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690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6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6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7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7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7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7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790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7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7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100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게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100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게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100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앙코링쿠스 게타 · 앙코링쿠스 챠비챠 · 앙코링쿠스 키수츠 ·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20000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20000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20000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31000	가자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3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3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3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8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어획선적국의 어획증명서류(별지 제3,5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486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71000	참다랑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71000	참다랑어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thynnu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87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79000	기타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thynnu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87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7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8	곱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81000	곱상어, 그 밖의 상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81000	곱상어, 그 밖의 상어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488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91000	붕장어의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92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의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92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의 것	어획선적국의 어획증명서류(별지 제3,5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4892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93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은 제외한다]의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94000	쥐치의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95000	고등어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9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899000	기타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눈다랑어(Thunnus obesu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OTC협약
	0304899000	기타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눈다랑어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IATTC 눈다랑어재수입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선망선 또는 낚시배(Baitboat)로 잡은 눈다랑어와 통조림용 또는 눈다랑어의 고기가 아닌 다른 부분(머리, 눈, 알, 내장, 꼬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IATTC협약
	03048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8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11000	냉동 연육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911000	냉동 연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19000	기타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0304919000	기타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21000	냉동 연육	어획선적국의 어획증명서류(별지 제3,5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4921000	냉동 연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29000	기타	어획선적국의 어획증명서류(별지 제3,4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AMLR협약
	030492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31000	냉동 연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31000	냉동 연육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31000	냉동 연육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3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3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3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41000	냉동 연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4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51000	냉동 연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51000	냉동 연육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51000	냉동 연육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5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5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5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6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6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49700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91000	냉동 연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91000	냉동 연육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눈다랑어(Thunnus obesus)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IOTC협약
	0304991000	냉동 연육	기타 어류의 피레트중 복어의 것은 식품공전이 정한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범위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91000	냉동 연육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눈다랑어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IATTC 눈다랑어재수입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선망선 또는 낚시배(Baitboat)로 잡은 눈다랑어와 통조림용 또는 눈다랑어의 고기가 아닌 다른 부분(머리, 눈, 알, 내장, 꼬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IATTC협약
	0304991000	냉동 연육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91000	냉동 연육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9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49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49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1000	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201000	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1000	간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2000	건조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202000	건조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2000	건조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3000	훈제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203000	훈제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3000	훈제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4010	명태의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204010	명태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4020	조기의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204020	조기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4030	청어의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204030	청어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4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204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204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1100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311000	건조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11000	건조한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1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31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1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2100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321000	건조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21000	건조한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2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32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2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9100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391000	건조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91000	건조한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3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3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410000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430000	송어(살모 트루타 · 앙코링쿠스 미키스 · 앙코링쿠스 클라키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앙코링쿠스 길래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4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4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5491000	멸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491000	멸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492000	명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492000	명태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49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4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4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49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52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20000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553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4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410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4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94000	조기(굴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94000	조기(굴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595000	복어	다음의 것으로 식품공전이 정한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범위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복섬(Fugu niphobles) ② 흰점복(Fugu poecilonotus) ③ 졸복(Fugu pardalis) ④ 매리복(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⑤ 검복(Fugu vermicularis porphyreus) ⑥ 황복(Fugu obscurus) ⑦ 눈불개복(Fugu chrysops) ⑧ 자주복(Fugu rubripes rubripus) ⑨ 검자주복(Fugu rubripes chinensis) ⑩ 까치복(Fugu xanthopterus) ⑪ 금밀복(Lagocephalus inermis) ⑫ 흰밀복(Lagocephalus wheeleri) ⑬ 검은밀복 (Lagocephalus gloveri) ⑭ 불룩복(Sphoeroides pachygaster) ⑮ 삼채복(Fugu flavidus) ⑯ 강담복(Chilomycterus affinis) ⑰ 가시복(Diodon holocanthus) ⑱ 브리커가시복(Diodon liturosus) ⑲ 쥐복(Diodon hystrix) ⑳ 거북복(Ostracion cubicus) ㉑ 까칠복(Fugu stictonotu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95000	복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596000	갯장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96000	갯장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597000	까나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97000	까나리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59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5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5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5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르크로세팔루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르크로세팔루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31000	멸치젓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31000	멸치젓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3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3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3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 (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 (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 (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 (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5691000	연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91000	연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92000	송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92000	송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93000	갈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93000	갈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94000	정어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94000	정어리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95000	고등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95000	고등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96000	조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96000	조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98000	꽁치(학꽁치 포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98000	꽁치(학꽁치 포함)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9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6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6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71100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71200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712000	건조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7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7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5720000	어류의 머리・꼬리・부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57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11000	훈제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1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19000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6121000	훈제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1010	훈제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109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2000	왕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301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301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꽃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2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3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3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꽃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2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901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901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꽃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2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9010	훈제한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49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9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꽃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2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49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5100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양식산 새우류등은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5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양식산 새우류등은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6101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양식산 새우류등은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61010	훈제한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61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꽃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2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61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양식산 새우류등은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61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61090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616901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양식산 새우류등은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69010	훈제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6169010	훈제한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69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양식산 새우류등은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69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69090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617101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양식산 새우류등은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71010	훈제한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71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양식산 새우류등은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71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71090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617901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양식산 새우류등은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79010	훈제한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6179091	흰다리새우[리토페나 에우스 바나메이 (Litopenaeus vanname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79091	흰다리새우[리토페나 에우스 바나메이 (Litopenaeus vanname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6179099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79099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6191000	훈제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9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19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63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3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63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3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63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33	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331000	꽃게[포르투누스 트리투버큘라투스(Portunus trituberculatus)]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6331000	꽃게[포르투누스 트리투버큘라투스(Portunus trituberculatus)]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332000	대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6332000	대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33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8에 기재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6339000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633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33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30633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3063400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63400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350000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6350000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360000	그 밖의 새우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6360000	그 밖의 새우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360000	그 밖의 새우류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306360000	그 밖의 새우류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306360000	그 밖의 새우류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8에 기재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6390000	기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63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3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63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6390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6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파누리루스(Panulirus)속・자수스(Jasu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30000	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30000	게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8에 기재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69400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5	새우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510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51020	건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51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51040	훈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59020	건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59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59040	그 밖의 새우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59040	훈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92000	건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92000	건조한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69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69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6994000	훈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111010	종패용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식용에 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굴치패(종패용, 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7111010	종패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111090	기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식용에 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굴치패(종패용, 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7111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1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거나 냉장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굴(살아있거나 냉장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11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120000	냉동한 것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원형의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12000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19200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1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19400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가리비과의 조개(펙텐.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펙텐속의 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 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22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29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홍합(미틸루스종, 페르나종, 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30732000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39200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39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2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210	갑오징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2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2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42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21090	기타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42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2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42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22090	기타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42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3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310	갑오징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3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3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3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3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3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3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92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9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9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93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93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93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94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494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511000	낙지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낙지(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7511000	낙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512000	주꾸미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주꾸미(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7512000	주꾸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519000	기타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문어(옥토퍼스종, 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751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52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521000	문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522000	낙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523000	주꾸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5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59200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59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600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600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곤충, 응애, 선충 ,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0307600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달팽이(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600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7600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307711000	백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11000	백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712010	종패용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식용에 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피조개(종패용, 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7712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12090	기타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피조개(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713000	새조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13000	새조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새조개(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714000	바지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14000	바지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바지락(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715000	개조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715000	개조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1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연체생물 중 패류-이식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②연체동물 중 두족류(살아있는 것으로 이식용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72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21000	새조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22000	개량조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23000	바지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24000	피조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25000	개조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92010	개량조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92020	바지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92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93010	개량조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93020	바지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93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94010	새조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794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10000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전복(살아있거나 냉장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810000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20000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거나 냉장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820000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20000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7830000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원형의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830000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40000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40000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787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71000	건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7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73000	훈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8	그 밖의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81000	건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81000	건조한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788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88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7883000	훈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11000	소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11000	소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912010	종패용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식용에 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진주조개(종패용, 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912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12090	기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식용에 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진주조개(종패용, 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913000	조개관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14000	재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14000	재첩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식용에 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재첩(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91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연체생물 중 패류-이식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②연체동물 중 두족류(살아있는 것으로 이식용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030791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791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792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21000	조개관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22000	소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2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7992100	조개관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929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929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79929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3079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3079941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941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949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7994900	기타 연체동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3081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1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해삼(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812000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19200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1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19400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성게(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822000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29200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29400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294000	훈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30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30200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30300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304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30500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901011	종묘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우렁쉥이(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8901011	종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901019	기타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우렁쉥이(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890101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901090	기타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수생무척추 생물 중 미색류(살아있는 것에 한함) ② 수생무척추 생물 중 개불류(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308901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902010	우렁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902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903000	건조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904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8905000	훈제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9100000	어류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9901000	갑각류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9902000	연체동물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3099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1401000	냉동크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1401000	냉동크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1401000	냉동크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1409000	기타	[식품위생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14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14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14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1501000	냉동크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1501000	냉동크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1501000	냉동크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검사소장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1501000	냉동크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401509000	기타	[식품위생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15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1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15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검사소장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2101010	탈지분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2101010	탈지분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2101010	탈지분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210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21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2101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21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2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21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2211000	전지분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2211000	전지분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2211000	전지분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221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22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221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2290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2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2290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2911000	무가당연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2911000	무가당연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2911000	무가당연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291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29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291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2991000	가당연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2991000	가당연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02991000	가당연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299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2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중 다음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2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299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3201000	액체 상태인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3201000	액체 상태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3201000	액체 상태인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3202000	냉동한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3202000	냉동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3202000	냉동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32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3209000	기타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3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32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3901000	버터밀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3901000	버터밀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3901000	버터밀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39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3909000	기타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3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39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1011	사료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1011	사료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1011	사료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404101019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1019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1091	사료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1091	사료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1099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1099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11	사료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2111	사료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19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2119	기타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19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21	사료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2121	사료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21	사료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404102129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2129	기타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29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31	사료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2131	사료용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31	사료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31	사료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404102139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2139	기타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39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91	사료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2191	사료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91	사료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404102199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2199	기타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199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910	사료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2910	사료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9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102990	기타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1029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405100000	버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	가축전염병예방법
	0405100000	버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5100000	버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	가축전염병예방법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5900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5900000	기타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5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5900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101020	크림 치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101020	크림 치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101020	크림 치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10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1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101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102000	커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102000	커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102000	커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 (Camembert cheese)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 (Camembert cheese)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 (Camembert cheese)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 (Camembert cheese)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904000	에멘탈 치즈 (Emmental cheese)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904000	에멘탈 치즈 (Emmental cheese)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904000	에멘탈 치즈 (Emmental cheese)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904000	에멘탈 치즈 (Emmental cheese)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9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6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69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6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4071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1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4071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7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7190000	기타	[식품위생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7190000	기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190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407190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검사소장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검사소장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4072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7290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7290000	기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290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407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407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7900000	기타	[식품위생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7900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7900000	기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7900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407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408110000	건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8110000	건조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8110000	건조한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10000	건조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10000	건조한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10000	건조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8110000	건조한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408190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8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8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8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190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8910000	건조한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8910000	건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8910000	건조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8910000	건조한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10000	건조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10000	건조한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10000	건조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9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408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8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089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0899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9000000	천연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중 다음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09000000	천연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410100000	곤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10100000	곤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살아있는 곤충)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0410100000	곤충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410100000	곤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410901000	칼새둥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중 다음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10901000	칼새둥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10902000	로열젤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중 다음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10902000	로열젤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10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10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중 다음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10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109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10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10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410909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4109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410909000	기타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자라알(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410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410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41090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2900000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2900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504001010	소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1010	소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10	소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10	소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4001021	소시지 케이싱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4001021	소시지 케이싱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1021	소시지 케이싱용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21	소시지 케이싱용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21	소시지 케이싱용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검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29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4001029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1029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2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29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검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31	소시지 케이싱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1031	소시지 케이싱용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31	소시지 케이싱용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31	소시지 케이싱용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31	소시지 케이싱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4001039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1039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3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39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39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400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1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4002000	방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2000	방광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2000	방광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2000	방광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2000	방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4003000	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003000	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3000	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3000	위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4003000	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510000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510000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10000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10000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10000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5901000	깃털 가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5901000	깃털 가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05901000	깃털 가루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901000	깃털 가루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901000	깃털 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59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5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9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5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05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6901020	소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6901020	소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6901020	소의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06901020	소의 것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0506901020	소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1020	소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1020	소의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1020	소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690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69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중 다음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6901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6901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0690109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050690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6902000	뼛가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6902000	뼛가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06902000	뼛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중 다음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6902000	뼛가루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6902000	뼛가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06902000	뼛가루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0506902000	뼛가루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2000	뼛가루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2000	뼛가루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2000	뼛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69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6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06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중 다음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69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6909000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05069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0690900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0506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6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7101000	상아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101000	상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101000	상아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101000	상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7101000	상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071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1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1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710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07901110	전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7901110	전지	식품·식품첨가물용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7901110	전지	광우병(BSE)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7901110	전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507901110	전지	한약재(녹용, 녹각, 생녹용으로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0507901110	전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07901110	전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7901110	전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1110	전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1110	전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11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79011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07901190	기타	식품·식품첨가물용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79011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7901190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507901190	기타	한약재(녹용, 녹각, 생녹용으로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05079011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079011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79011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11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119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1200	녹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7901200	녹각	식품·식품첨가물용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7901200	녹각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7901200	녹각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0507901200	녹각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507901200	녹각	한약재(녹용, 녹각, 생녹용으로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0507901200	녹각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07901200	녹각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7901200	녹각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1200	녹각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1200	녹각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2010	귀갑과 귀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507902010	귀갑과 귀판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507902010	귀갑과 귀판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507902010	귀갑과 귀판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2010	귀갑과 귀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7902010	귀갑과 귀판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2010	귀갑과 귀판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2010	귀갑과 귀판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07902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07902090	기타	식품·식품첨가물용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7902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507902090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507902090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0507902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0790209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0507902090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79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0790209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1000	산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1000	산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2010	진주패각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2020	청패각(전복)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2050	트로커스 패각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2060	아고야 패각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이아스네보사(Megalonaiasnervosa), 앰브레마프리카타(Amblemaplicata), 콰드루라 콰드루라(Quadrula quadrula) 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0508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80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08009000	기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080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10003000	사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0510003000	사향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510004000	우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0004000	우황	한약재(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0510004000	우황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10004000	우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5100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10009000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00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511100000	소의 정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100000	소의 정액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0511100000	소의 정액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11100000	소의 정액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511100000	소의 정액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100000	소의 정액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알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알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브라인 슈림프알(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511911090	기타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 및 갑각류의 그 정액, 난자, 수정란 ② 이식용으로 수입되는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및 고래류의 그 정액, 난자, 수정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051191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동물(곤충,응애등의 마디발동물, 선충 기타 무척추동물 또는 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051191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1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1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	식품・식품첨가물용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 공고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1191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511919000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511919000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5119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1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1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11991000	동물의 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1000	동물의 피	식품・식품첨가물용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 공고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11991000	동물의 피	기타 용도의 것은 주무부처장의 확인분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11991000	동물의 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11991000	동물의 피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0511991000	동물의 피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1000	동물의 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1000	동물의 피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1000	동물의 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11991000	동물의 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11992010	돼지의 정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2010	돼지의 정액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511992010	돼지의 정액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2010	돼지의 정액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3010	소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3010	소의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11993010	소의 것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0511993010	소의 것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511993010	소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3010	소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3010	소의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3020	돼지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3020	돼지의 것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축산법
	0511993020	돼지의 것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3020	돼지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3020	돼지의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11993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3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3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3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3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5030	정돈한 말의 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5030	정돈한 말의 털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511995090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50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11999010	잠종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수입하는 누애씨에 대하여는 시·도 잠업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0511999020	누에번데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11999020	누에번데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9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9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511999090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오공, 금와, 건사, 반묘, 야명사	약사법
	0511999090	기타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오공, 금와, 건사, 반묘, 야명사	약사법
	051199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51199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601101000	튤립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1000	튤립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102000	백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2000	백합의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2000	백합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107000	프리지어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7000	프리지어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108000	수선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8000	수선의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8000	수선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1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1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109000	기타	9. 통합공고 별표 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601201000	튤립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201000	튤립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202000	백합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202000	백합의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202000	백합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208000	프리지어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208000	프리지어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209010	수선화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209010	수선화의 것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209010	수선화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209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120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20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12090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60210000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10000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60210000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602201000	사과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202000	배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203000	복숭아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204000	포도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206000	귤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2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2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2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1010	난초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1010	난초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1010	난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1020	카네이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1030	구즈마니아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1040	안개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1050	국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1050	국화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1050	국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1050	국화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602901060	선인장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1060	선인장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1060	선인장류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60290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60290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602902010	분재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2010	분재용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2010	분재용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2021	단풍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2021	단풍나무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602902029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2029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602902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20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602909010	목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9030	뽕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9040	버섯의 종균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9040	버섯의 종균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다음의 실시기관 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한국종균생산협회장 :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잎새, 버들송이, 만가닥버섯, 상황버섯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표고, 목이, 복령	종자산업법
	0602909050	잔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9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290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9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2909090	기타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딸기	종자산업법
	060290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60290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0603110000	장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3110000	장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10000	장미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20000	카네이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3120000	카네이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31000	심비디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3131000	심비디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31000	심비디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32000	팔레놉시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3132000	팔레놉시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32000	팔레놉시스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3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313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3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40000	국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3140000	국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40000	국화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50000	백합[릴리움(Lilium) 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3150000	백합[릴리움(Lilium) 속]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50000	백합[릴리움(Lilium) 속]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91000	튤립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3191000	튤립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31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9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199000	절화와 꽃봉우리(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603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390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900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3900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기재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604201000	이끼와 지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4202000	식물의 잎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4202000	식물의 잎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6042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42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420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4901000	이끼와 지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49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604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6049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490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604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1100000	종자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1100000	종자용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감자(식량작물) 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목초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 감자	종자산업법
	0701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1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2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2001000	방울토마토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20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31010	양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3101010	껍질을 벗긴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310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3103000	샬롯(shallot)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3103000	샬롯(shallot)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3201000	마늘 (껍질을 깐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3201000	마늘 (껍질을 깐 것)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마늘	종자산업법
	0703201000	마늘 (껍질을 깐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3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3209000	기타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마늘	종자산업법
	07032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3901000	리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3901000	리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3902000	대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3902000	대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3903000	쪽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3903000	쪽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3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3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4100000	꽃양배추와 브로콜리(broccoli)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4100000	꽃양배추와 브로콜리(broccoli)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4901000	양배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4901000	양배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4901000	양배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4902000	배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4902000	배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4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4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5110000	결구 상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5110000	결구 상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5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51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52100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52100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52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52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6101000	당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6101000	당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6102000	순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6102000	순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6901000	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6901000	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6903000	더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6903000	더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6904000	도라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6904000	도라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6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6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8100000	완두(피셈 새티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8100000	완두(피셈 새티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8200000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8200000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8900000	그 밖의 채두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8900000	그 밖의 채두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400000	셀러리(샐러리액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400000	셀러리(샐러리액은 제외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17000	양송이 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17000	양송이 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5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1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520000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20000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530000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 버섯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30000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 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540000	표고버섯(Lentinus edode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40000	표고버섯(Lentinus edodes)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550000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50000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560000	송로버섯[튜버(Tuber) 속]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60000	송로버섯[튜버(Tuber) 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593000	영지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93000	영지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594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94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595000	팽이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95000	팽이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5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5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6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6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700000	시금치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700000	시금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910000	글로브 아티초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910000	글로브 아티초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920000	올리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920000	올리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930000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930000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991000	고사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991000	고사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992000	고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992000	고비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993000	깻잎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993000	깻잎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09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099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100000	감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100000	감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210000	완두(피셈 새티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210000	완두(피셈 새티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220000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220000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2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2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300000	시금치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300000	시금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400000	스위트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400000	스위트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801000	양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801000	양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802000	마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802000	마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804000	당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804000	당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805000	고사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805000	고사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806000	송이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806000	송이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808010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808010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808020	고려엉겅퀴(곤드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808020	고려엉겅퀴(곤드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8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809010	대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809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1200000	올리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400000	오이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5100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591000	송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5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901000	마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903000	죽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904000	당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905010	고사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905020	고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905091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905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200000	양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200000	양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311000	양송이 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311000	양송이 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3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31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340000	표고버섯(Lentinus edode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340000	표고버섯(Lentinus edodes)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391010	송이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391010	송이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391030	영지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391030	영지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391040	느타리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391040	느타리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391050	팽이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391050	팽이버섯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39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39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392000	송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392000	송로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1000	마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1000	마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10	고사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10	고사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20	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20	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30	대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30	대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40	당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40	당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50	호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50	호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60	양배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60	양배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70	토란줄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70	토란줄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80	고구마줄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80	고구마줄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93	감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93	감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94	고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94	고비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95	더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95	더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96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96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97	고려엉겅퀴(곤드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97	고려엉겅퀴(곤드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2099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2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101000	종자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102000	사료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102000	사료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713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1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200000	병아리콩[가반조스(garbanzos)]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200000	병아리콩[가반조스(garbanzos)]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311000	종자용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녹두	종자산업법
	0713311000	종자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3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31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321000	종자용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팥	종자산업법
	0713321000	종자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3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32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331000	종자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33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33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3400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 또는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3400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 또는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350000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350000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3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3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400000	렌즈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400000	렌즈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71360000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60000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3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3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101000	신선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101000	신선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102010	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102010	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102020	펠릿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102020	펠릿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102020	펠릿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7141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102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103000	냉장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103000	냉장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10400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104000	냉동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201000	신선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201000	신선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201000	신선한 것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고구마	종자산업법
	0714202000	건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202000	건조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203000	냉장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203000	냉장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204000	냉동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20400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30100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301000	냉동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3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3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40100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401000	냉동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4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4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50100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501000	냉동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5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5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90101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901010	냉동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9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90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909010	냉동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90901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909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714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714909090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갈근, 산약	약사법
	0714909090	기타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갈근, 산약	약사법
	0714909090	기타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에 합격한 품종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대상작물 : 마(산약)	종자산업법
	0801110000	말린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1110000	말린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1110000	말린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1110000	말린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8011200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11200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1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1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11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8025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5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5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8025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5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5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8026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6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6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6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70000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70000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800000	빈랑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800000	빈랑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800000	빈랑자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빈랑자(Arecae semen)	약사법
	0802800000	빈랑자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빈랑자(Arecae semen)	약사법
	0802910000	잣(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910000	잣(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910000	잣(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2920000	잣(껍데기를 벗긴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920000	잣(껍데기를 벗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2920000	잣(껍데기를 벗긴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920000	잣(껍데기를 벗긴 것)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080299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99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99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2991020	껍데기를 벗긴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991020	껍데기를 벗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2991020	껍데기를 벗긴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9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2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2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3100000	플랜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3100000	플랜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3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3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4100000	대추야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4100000	대추야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4200000	무화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4200000	무화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4300000	파인애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4300000	파인애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4400000	아보카도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4400000	아보카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4501000	구아바(guava)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4501000	구아바(guava)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4502000	망고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4502000	망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4503000	망고스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4503000	망고스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5100000	오렌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5100000	오렌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521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5211000	감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5 참조)	식물방역법
	0805211000	감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521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6 참조)	식물방역법
	080521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5220000	클레멘타인(clementine)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7 참조)	식물방역법
	0805220000	클레멘타인(clementine)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52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8 참조)	식물방역법
	08052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5501000	레몬(시트리스 리몬·시트리스 리머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5501000	레몬(시트리스 리몬·시트리스 리머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5502010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5502010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5502020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5502020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5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5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6100000	신선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6100000	신선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6200000	건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6200000	건조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06200000	건조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7110000	수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7110000	수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71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7191000	참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71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7200000	포포(파파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7200000	포포(파파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8100000	사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8100000	사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8300000	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8300000	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8400000	마르멜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8400000	마르멜로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9100000	살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9100000	살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92100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92100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92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92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930000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930000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9401000	자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9401000	자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09402000	슬로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09402000	슬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0100000	초본류 딸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0100000	초본류 딸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0200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0200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0300000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1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0300000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040000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040000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0500000	키위프루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0500000	키위프루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0600000	두리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0600000	두리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0701000	단감	1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0701000	단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0709000	기타	1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07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0903000	대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0903000	대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0905000	매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0905000	매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0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0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1100000	초본류 딸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1100000	초본류 딸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1100000	초본류 딸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811901000	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1901000	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1901000	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811902000	대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1902000	대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1902000	대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811903000	잣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1903000	잣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1903000	잣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11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1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1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12100000	체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2901000	초본류 딸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2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3100000	살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3100000	살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13100000	살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3200000	프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3200000	프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13200000	프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3300000	사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3300000	사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13300000	사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3401000	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3401000	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13401000	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3402000	대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3402000	대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13402000	대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34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34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134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진피	약사법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진피	약사법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진피	약사법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진피	약사법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903000000	마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3000000	마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903000000	마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905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5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5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5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6110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6110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06110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06110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	4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61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61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6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6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7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7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7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07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7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7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8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8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8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8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8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8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8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08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8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8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09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9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9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9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9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9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9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9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9611000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9611000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9612000	캐러웨이의 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9612000	캐러웨이의 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9613000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9613000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9621000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9621000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9622000	캐러웨이의 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9622000	캐러웨이의 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09623000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09623000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11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11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11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1011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생강	종자산업법
	0910112000	건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112000	건조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112000	건조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101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11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10119000	기타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10122000	건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122000	건조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122000	건조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101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12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1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10200000	사프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200000	사프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10200000	사프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10200000	사프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10200000	사프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300000	심황(강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300000	심황(강황)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10300000	심황(강황)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0910300000	심황(강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10300000	심황(강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300000	심황(강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0910911000	카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911000	카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109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919000	기타	2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99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99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99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09109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0910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910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001110000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1110000	종자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밀	종자산업법
	1001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11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1190000	기타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밀(식량작물)	종자산업법
	1001911000	메슬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1911000	메슬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1911000	메슬린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10019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191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1919000	기타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밀	종자산업법
	1001991010	메슬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1991010	메슬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199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199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1991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001992010	메슬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1992010	메슬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199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1992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1999010	메슬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1999010	메슬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19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1999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2100000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2100000	종자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호밀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목초, 사료 또는 녹비재배용 호밀	종자산업법
	1002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2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3101000	맥주보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3101000	맥주보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3101000	맥주보리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보리(식량작물)	종자산업법
	1003102000	겉보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3102000	겉보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3102000	겉보리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보리(식량작물) 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목초, 사료 또는 녹비재배용 보리	종자산업법
	1003103000	쌀보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3103000	쌀보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3103000	쌀보리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보리(식량작물) 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목초, 사료 또는 녹비재배용 보리	종자산업법
	1003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31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3109000	기타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보리(식량작물) 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목초, 사료 또는 녹비재배용 보리	종자산업법
	1003901000	맥주보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3901000	맥주보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3902000	겉보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3902000	겉보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3902000	겉보리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003903000	쌀보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3903000	쌀보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3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3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4100000	종자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사료용 귀리	종자산업법
	1004100000	종자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1004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4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490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005100000	종자용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옥수수(식량작물)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료용 옥수수	종자산업법
	1005100000	종자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5901000	사료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5901000	사료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005902000	팝콘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5902000	팝콘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5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5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005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1006100000	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6100000	벼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1006100000	벼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벼(식량작물)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료용 벼	종자산업법
	1006201000	메현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6201000	메현미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1006201000	메현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6202000	찰현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6202000	찰현미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1006202000	찰현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6301000	멥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6301000	멥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1006301000	멥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6302000	찹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6302000	찹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1006302000	찹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6400000	쇄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6400000	쇄미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1006400000	쇄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7100000	종자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수수(식량작물)	종자산업법
	1007100000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7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7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790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008100000	메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8100000	메밀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메밀(식량작물)	종자산업법
	1008100000	메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8211000	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8211000	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8211000	조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조(식량작물)	종자산업법
	10082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821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8219000	기타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조(식량작물)	종자산업법
	1008291000	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8291000	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8291000	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008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82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8300000	카나리시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8300000	카나리시드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8500000	퀴노아(체노포디움 퀴노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8500000	퀴노아(체노포디움 퀴노아)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8600000	라이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8600000	라이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	약사법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	약사법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1001000	밀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1001000	밀가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단,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1101002000	메슬린 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1002000	메슬린 가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단,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1102200000	옥수수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2200000	옥수수가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단,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1102200000	옥수수가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102901000	보릿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2901000	보릿가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단,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1102902000	쌀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2902000	쌀가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단,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1102902000	쌀가루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1102903000	호밀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2903000	호밀가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단,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1102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2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단,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1103110000	밀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3110000	밀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3191000	보리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3191000	보리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3192000	귀리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3192000	귀리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3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31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3201000	밀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3201000	밀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3203000	보리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3203000	보리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3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32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4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4199000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199000	기타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1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4291000	율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4291000	율무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291000	율무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291000	율무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4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4299000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299000	기타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42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4301000	쌀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4301000	쌀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43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43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1043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5100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5100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5200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5200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이인의 것	약사법
	1105200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106201000	칡뿌리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6201000	칡뿌리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6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62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62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다만,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7201000	훈연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7201000	훈연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7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72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108110000	밀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8121000	식품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8121000	식품용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110812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1081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812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1108141000	식품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814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814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11081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108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819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1108200000	이눌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01101000	콩나물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1101000	콩나물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1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11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1902000	사료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1902000	사료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1903000	콩나물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1903000	콩나물용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1201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1909000	기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1201909000	기타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대두(식량작물)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목초,사료 또는 녹비재배용 대두	종자산업법
	1202301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2301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2302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2302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2410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2410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2420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2420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3000000	코프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3000000	코프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3000000	코프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사용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사료용 유채	종자산업법
	12051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5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5109000	기타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사용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사료용 유채	종자산업법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사용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사료용 유채	종자산업법
	1205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5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5909000	기타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사용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사료용 유채	종자산업법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07100000	팜너트와 핵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7100000	팜너트와 핵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210000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291000	사료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291000	사료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0729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72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2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07300000	피마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7300000	피마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400000	참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7400000	참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500000	겨자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7500000	겨자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600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 종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7600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700000	멜론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910000	양귀비씨	수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마약취급 학술연구자용 ② 공무상 필요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07910000	양귀비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991000	들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7991000	들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992000	시어너트(캐리트너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7992000	시어너트(캐리트너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9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대마종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07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79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79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8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8901000	고추・단고추류(Capsicum annuum)의 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8901000	고추・단고추류(Capsicum annuum)의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89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08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100000	사탕무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210000	루우산(알팔파) 종자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1209210000	루우산(알팔파)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속] 종자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속] 종자	①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크림손클로버	종자산업법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속]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230000	페스큐 종자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1209230000	페스큐 종자	① 틀페스큐, 메도우페스큐	종자산업법

	1209230000	페스큐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250000	라이그래스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 및 로리엄 페레네 엘)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1209250000	라이그래스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 및 로리엄 페레네 엘)	① 퍼레니얼라이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산업법
	1209250000	라이그래스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 및 로리엄 페레네 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291000	루핀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291000	루핀종자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09292000	수단그라스 종자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1209292000	수단그라스 종자	① 수단그라스교잡종(Sorghum Sorghum grass Hybrid)	종자산업법
	1209292000	수단그라스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293000	오차드그라스 종자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1209293000	오차드그라스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 종자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299000	기타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1209299000	기타	① 레드톱, 리드카나리그라스, 버즈풋 트레포일, 브롬그라스, 수수교잡종(Sorghum X Sorghum Hybrid), 헤어리베치, 콤먼벳치, 자운영	종자산업법
	12092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아편 알카로이드를 함유한 앵속식물 화훼종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통합공고 별표 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1209911010	양파 종자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양파	종자산업법
	1209911010	양파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911090	기타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대파	종자산업법

	120991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912000	무 종자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무	종자산업법
	1209912000	무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913000	고추・단고추류(Capsicum annuum)의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 참조)	식물방역법
	1209913000	고추・단고추류(Capsicum annuum)의 종자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고추,단고추 및 착색단고추	종자산업법
	1209914000	양배추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4 참조)	식물방역법
	1209914000	양배추 종자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양배추	종자산업법
	1209915000	토마토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5 참조)	식물방역법
	1209915000	토마토 종자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토마토	종자산업법
	1209919000	기타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배추, 오이, 호박, 당근, 상추, 시금치, 브로콜리	종자산업법
	120991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991010	참나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09991010	참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5 참조)	식물방역법
	120999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0999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5 참조)	식물방역법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5 참조)	식물방역법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1209993000	담배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994000	잔디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9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099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 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2099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099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1209999000	기타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참외, 수박	종자산업법
	121010000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010000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0201000	홉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0201000	홉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0202000	루플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0202000	루플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1110	산양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1110	산양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1110	산양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110	산양삼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110	산양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1201120	새싹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1120	새싹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1120	새싹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11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11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1190	기타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인삼산업법
	12112011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190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1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1201211	본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1211	본삼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인삼산업법
	1211201211	본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211	본삼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211	본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1211	본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121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1219	기타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인삼산업법
	1211201219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219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219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1219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1291	본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1291	본삼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인삼산업법
	1211201291	본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291	본삼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291	본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1291	본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12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1299	기타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인삼산업법
	1211201299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299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299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1299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1311	본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1311	본삼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인삼산업법
	1211201311	본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311	본삼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311	본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131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1319	기타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인삼산업법
	1211201319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319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319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1391	본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1391	본삼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인삼산업법
	1211201391	본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391	본삼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391	본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13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1399	기타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인삼산업법
	1211201399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399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1399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2110	가루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2110	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2110	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211202110	가루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110	가루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110	가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단,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1211202110	가루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2120	태블릿이나 캡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211202120	태블릿이나 캡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120	태블릿이나 캡슐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120	태블릿이나 캡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2120	타브렛이나 캡슐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21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21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2112021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190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1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21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2210	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2210	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211202210	가루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210	가루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210	가루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2220	태블릿이나 캡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2220	태블릿이나 캡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211202220	태블릿이나 캡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220	태블릿이나 캡슐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220	태블릿이나 캡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2220	태블릿이나 캡슐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22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22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2112022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290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22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3	인삼잎과 줄기・종자(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3200	종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3200	종자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3200	종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3200	종자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3200	종자	[종자산업법] .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생약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인삼	종자산업법
	1211203200	종자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2099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2099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9900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2099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2099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30	코카잎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130	코카잎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30	코카잎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30	코카잎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30	코카잎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30	코카잎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30	코카잎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3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3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3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3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3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3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3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3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309000	기타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309000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3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309000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309000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3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309000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309000	기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3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40	양귀비줄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140	양귀비줄기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40	양귀비줄기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40	양귀비줄기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40	양귀비줄기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40	양귀비줄기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40	양귀비줄기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4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4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4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4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4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4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4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4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409000	기타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409000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4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409000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409000	기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4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50	마황(麻黃)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50	마황(麻黃)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50	마황(麻黃)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50	마황(麻黃)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50	마황(麻黃)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50	마황(麻黃)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5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5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5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5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5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5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5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5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509000	기타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509000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5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509000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509000	기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5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6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6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6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6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100	부자(附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100	부자(附子)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100	부자(附子)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100	부자(附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200	황련(黃連)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200	황련(黃連)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200	황련(黃連)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200	황련(黃連)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300	원지(遠志)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300	원지(遠志)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300	원지(遠志)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300	원지(遠志)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400	패모(貝母)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400	패모(貝母)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400	패모(貝母)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400	패모(貝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500	두충(杜沖)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500	두충(杜沖)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500	두충(杜沖)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500	두충(杜沖)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600	감초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600	감초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600	감초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600	감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700	사인(砂仁)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700	사인(砂仁)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700	사인(砂仁)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700	사인(砂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800	산조인(酸棗仁)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800	산조인(酸棗仁)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800	산조인(酸棗仁)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800	산조인(酸棗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	기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	기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10	용안육(龍眼肉)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10	용안육(龍眼肉)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10	용안육(龍眼肉)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10	용안육(龍眼肉)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20	산사자(山査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20	산사자(山査子)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20	산사자(山査子)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20	산사자(山査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30	연자육(蓮子肉)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30	연자육(蓮子肉)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30	연자육(蓮子肉)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30	연자육(蓮子肉)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40	박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40	박하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40	박하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40	박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50	초피(椒皮)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는 수입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901950	초피(椒皮)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901950	초피(椒皮)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50	초피(椒皮)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50	초피(椒皮)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50	초피(椒皮)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70	구기자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70	구기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80	오미자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80	오미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9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90199	기타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90199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90199	기타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90199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9	기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91	사군자(使君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91	사군자(使君子)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91	사군자(使君子)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91	사군자(使君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92	백수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92	백수오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92	백수오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92	백수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93	하수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93	하수오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93	하수오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93	하수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93	하수오	[종자산업법] .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산림청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하수오	종자산업법
	1211901999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901999	기타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901999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약사법
	1211901999	기타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901999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1999	기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199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1901999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1999	기타	[종자산업법]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산림청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백출 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생약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산약, 우슬, 작약, 지황,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종자산업법
	1211901999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1909010	식용에 적합한 것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9010	식용에 적합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909090	기타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11909090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대복피	약사법
	12119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약사법
	1211909090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9090	기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1909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1909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2119090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221101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1020	냉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103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1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1090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 또는 관상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산업법,농농수산물품질관리법
	121221201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2020	염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2030	냉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204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2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2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2213010	건조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3020	냉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303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3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4010	신선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4020	냉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403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4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5010	염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5020	냉장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503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5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5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221601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6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701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701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702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702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703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703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801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801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802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802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803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8031	냉동한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221803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8039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221803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221901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901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909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19091	냉동한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221909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101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1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1090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201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2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2090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미역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2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229301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3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3090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톳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401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4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4090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파래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4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229501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5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5090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다시마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6010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609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6090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우뭇가사리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701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701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7019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돌가사리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702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702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7029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뜬세모가사리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703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703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7039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불등가사리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801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801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8019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도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802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802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8029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진두발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803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8031	냉동한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229803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8039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말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8039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229803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229901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901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9019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코토니 및 스피노잠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9091	냉동한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909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299099	기타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타 해조류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21229909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2910000	사탕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2910000	사탕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9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9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2930000	사탕수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930000	사탕수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2940000	치커리 뿌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940000	치커리 뿌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2940000	치커리 뿌리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2992000	곤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993000	꽃가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한다.(본문 제62조 참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1212993000	꽃가루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화분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993000	꽃가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2993000	꽃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993000	꽃가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2996000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2996000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9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2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299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② 왕겨 및 쌀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4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214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4101000	사료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4101000	사료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41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41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410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490901	루우산(알팔파)의 베일(bale)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21490901	루우산(알팔파)의 베일(bale)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4909011	사료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4909011	사료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4909019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490901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214909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214909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214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1490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301200000	아라비아 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1901000	올레오레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1902010	쉘락(shellac)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19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1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감초엑기스	약사법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302130000	홉(hop)으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30000	홉(hop)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302140000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02140000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0219119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1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1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3021911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302191210	인삼 추출물(extract)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3021912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0219129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2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2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3021912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021919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19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3021919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02192000	캐슈너트 쉘액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2000	캐슈너트 쉘액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알로에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02199020	콜라 추출물(extract)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20	콜라 추출물(extract)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③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④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 추출물, Opium tinctru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③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④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 추출물, Opium tinctru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③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④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 추출물, Opium tinctru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③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④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 추출물, Opium tinctru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③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④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 추출물, Opium tinctru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302199039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③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④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9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 추출물, Opium tinctru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9	기타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3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39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30219903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30219903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302199099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③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④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99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 추출물, Opium tinctru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99	기타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02199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199099	기타	마약 및 대마가 아닌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1302199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30219909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302199099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02199099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02200000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200000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302311000	실 한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312000	가루 한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3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3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3023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401102000	청환죽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11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1200000	등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1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200000	면 린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1000	조각용 종자·껍질·너트(예: 상아야자)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404901000	조각용 종자·껍질·너트(예: 상아야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2010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2010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0490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404902090	기타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1404903010	떡갈잎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404903010	떡갈잎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3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404903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404903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3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식물성 헤어·거머리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5000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piassava)·카우치 그라스(couch-grass)·이스틸리(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6010	오배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6020	아몬드 껍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6020	아몬드 껍질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404906020	아몬드 껍질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404906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6090	기타	다음의 것 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홍화	약사법
	1404906090	기타	다음의 것 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홍화	약사법
	14049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404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404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4049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404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404909000	기타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01101000	산가가 1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1101000	산가가 1 이하인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1101000	산가가 1 이하인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1101000	산가가 1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1101000	산가가 1 이하인 것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1101000	산가가 1 이하인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1101000	산가가 1 이하인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1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11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110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1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1109000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11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110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11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1200000	그 밖에 돼지의 지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1200000	그 밖에 돼지의 지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01200000	그 밖에 돼지의 지방	축산물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120000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01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1900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1900000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190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1900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190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1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2101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2101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50210109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502101090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10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101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101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2101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21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021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502109000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1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10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21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21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약사법
	1502109000	기타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화장품법
	15021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2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02901000	소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2901000	소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2901000	소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02901000	소의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2901000	소의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029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2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2909000	기타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9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90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290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3002000	라드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03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30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50300900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5030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300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30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04101000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4101000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4101000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101000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4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41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1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뱀장어유제품 ② EPA/DHA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4301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4301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3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43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43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43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5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50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50500900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5050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500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6001000	우각유와 그 분획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506001000	우각유와 그 분획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BSE관리대상 품목임)	사료관리법
	1506001000	우각유와 그 분획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506001000	우각유와 그 분획물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506001000	우각유와 그 분획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060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60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506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60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50600900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506009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60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060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7101000	식품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7101000	식품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7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7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71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7901010	식품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7901010	식품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79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7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7901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07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7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8100000	조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8100000	조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8901000	정제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8901000	정제유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1508901000	정제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8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89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1508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92000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9300000	버진 올리브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9400000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9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09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0100000	올리브 퍼미스 조유(粗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090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1100000	조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1100000	조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1901000	팜 올레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1901000	팜 올레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1902000	팜 스테아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1902000	팜 스테아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1902000	팜 스테아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11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1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1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2112000	잇꽃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2112000	잇꽃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2191020	잇꽃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2191020	잇꽃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2199020	잇꽃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2199020	잇꽃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221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221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2291000	정제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2291000	정제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2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2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3110000	조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3110000	조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3191000	정제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3191000	정제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3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3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3211000	팜핵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3211000	팜핵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3212000	바바수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3212000	바바수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3291010	팜핵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3291010	팜핵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3291020	바바수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3291020	바바수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3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3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4110000	조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4110000	조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4191000	정제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4191000	정제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4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4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491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491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4912000	겨자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4912000	겨자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499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499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4991020	겨자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4991020	겨자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4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4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110000	조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110000	조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19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15210000	조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210000	조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2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600000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909030	호호바유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909030	호호바유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909040	동유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909040	동유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59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② 배아유제품 ③ 배아제품 ④ 포도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5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590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16101000	우지와 그 분획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516101000	우지와 그 분획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BSE관리대상 품목임)	사료관리법
	1516101000	우지와 그 분획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516101000	우지와 그 분획물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516101000	우지와 그 분획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101000	우지와 그 분획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16102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102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161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516109000	기타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돈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1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51610900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5161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1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161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1620101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20101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620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20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6202010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202010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6202010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620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20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62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62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6300000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7902000	쇼트닝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7902000	쇼트닝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7902000	쇼트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17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뱀장어유제품 ② EPA/DHA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7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79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7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517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18009010	사료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180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1800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동식물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동식물유 ②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521101000	카나버 왁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21102000	팜왁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21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21901000	고래 왁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21902000	밀랍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21902000	밀랍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521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5220000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601001000	소시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1001000	소시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5. 식육제품 5-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미만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1001000	소시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1001000	소시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601001000	소시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10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1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5. 식육제품 5-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미만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10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1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6010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2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2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209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2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2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1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3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31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21010	삼계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321010	삼계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중 다음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닭고기 내부에 인삼과 기타 부원료를 혼합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21010	삼계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21010	삼계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21010	삼계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321010	삼계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2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321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2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2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321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검사소장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210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232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32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32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2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239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39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39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39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41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4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4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419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1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1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42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4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4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429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2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2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49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4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4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499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49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검사소장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25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5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5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5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5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9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2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5. 식육제품 5-1. 식육가공품중 (21) 기타식육가공품 ②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5. 식육제품 5-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미만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9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29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2909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29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3002000	육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603002000	육즙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3002000	육즙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3002000	육즙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3002000	육즙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3002000	육즙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3002000	육즙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3004000	어류의 즙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3004000	어류의 즙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3004000	어류의 즙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3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30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3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30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1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1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2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2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3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3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3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3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공식품이 아닌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41012	삶은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공식품이 아닌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12	삶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12	삶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41012	삶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41019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공식품이 아닌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19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1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4101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4102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29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2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4102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4103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39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103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4103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4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4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4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5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5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5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5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6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6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6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6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79000	기타	1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7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7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7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79000	기타	동부태평양수역에서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1604180000	상어 지느러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8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80000	상어 지느러미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4191010	꽁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91010	꽁치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91010	꽁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91010	꽁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91020	전갱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91020	전갱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91020	전갱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91020	전갱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9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91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9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99010	쥐치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99010	쥐치포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99010	쥐치포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99010	쥐치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1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9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19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1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203000	생선소시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3000	생선소시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3000	생선소시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203000	생선소시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204010	게맛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4010	게맛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4010	게맛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204010	게맛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204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4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4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204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2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20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604310000	캐비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310000	캐비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310000	캐비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4310000	캐비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310000	캐비어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4320000	캐비어 대용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320000	캐비어 대용물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4320000	캐비어 대용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101091	붉은대게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101091	붉은대게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101091	붉은대게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605101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101099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101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605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1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605211000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211000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211000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052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21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2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052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290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3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3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4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4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4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1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1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20000	가리비과의 조개(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20000	가리비과의 조개(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55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3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3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3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41000	갑오징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41000	갑오징어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554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4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4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42091	조미오징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42091	조미오징어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42091	조미오징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42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4209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42099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42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50000	문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50000	문어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6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6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1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6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6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6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6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2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6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6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6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6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9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6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7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7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7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7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8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8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8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8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9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9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9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9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9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9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9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9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9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92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92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9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9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9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9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9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5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59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9909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5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6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6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6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61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6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6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6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62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2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6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6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63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63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39000	기타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0563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056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05690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01121000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1121000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701122000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1122000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701141000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1141000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701142000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1142000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7019100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19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111000	유당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702111000	유당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702111000	유당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111000	유당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111000	유당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702119000	유당시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119000	유당시럽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702119000	유당시럽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702119000	유당시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119000	유당시럽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191000	유당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702191000	유당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702191000	유당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191000	유당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191000	유당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702199000	유당시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199000	유당시럽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1702199000	유당시럽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1702199000	유당시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199000	유당시럽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201000	단풍당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201000	단풍당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202000	단풍당시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202000	단풍당시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301000	포도당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702301000	포도당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301000	포도당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1702301000	포도당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302000	포도당시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302000	포도당시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401000	포도당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702401000	포도당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401000	포도당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1702401000	포도당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402000	포도당시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402000	포도당시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601000	과당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601000	과당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602000	과당시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602000	과당시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901000	인조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901000	인조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902000	캐러멜당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902000	캐러멜당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903000	맥아당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903000	맥아당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2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2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703101000	주정 제조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3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31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703901000	주정 제조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3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4902010	드롭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902010	드롭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902010	드롭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4902020	캐러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902020	캐러멜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902020	캐러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7049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902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9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704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9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704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1001000	생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1001000	생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1001000	생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801002000	볶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1002000	볶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1002000	볶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802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2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20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18020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803100000	탈지하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3100000	탈지하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320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320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400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400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2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20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2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3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31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3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3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32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3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806902111	조제 분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806902111	조제 분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11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119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11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806902191	오트밀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191	오트밀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191	오트밀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8069021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199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1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806902210	보릿가루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210	보릿가루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210	보릿가루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8069022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2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290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쌀가루(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에 한함)	양곡관리법
	18069022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9029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9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9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9029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991	오트밀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991	오트밀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991	오트밀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902992	보릿가루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992	보릿가루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992	보릿가루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9029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999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2999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쌀가루(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에 한함)	양곡관리법
	18069029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903091	낱알 모양의 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3091	낱알 모양의 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3091	낱알 모양의 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903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3099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3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이상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이상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이상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806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06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101010	조제 분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101010	조제 분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101010	조제 분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9011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101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1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101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101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901109010	오트밀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109010	오트밀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109010	오트밀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1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10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1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201000	쌀가루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201000	쌀가루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201000	쌀가루의 것	다음의 것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쌀가루(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에 한함)	양곡관리법
	1901201000	쌀가루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202000	보리가루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202000	보리가루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202000	보리가루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2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209000	기타	다음의 것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쌀가루(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에 한함)	양곡관리법
	1901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90201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201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90201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202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202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90202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9010	오트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9010	오트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9010	오트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909091	쌀가루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9091	쌀가루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9091	쌀가루의 것	다음의 것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쌀가루(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에 한함)	양곡관리법
	1901909091	쌀가루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909092	보릿가루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9092	보릿가루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9092	보릿가루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1909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9099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1909099	기타	다음의 것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쌀가루(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에 한함)	양곡관리법
	1901909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2111000	스파게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11000	스파게티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11000	스파게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2112000	마카로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12000	마카로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12000	마카로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21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1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2191000	국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91000	국수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91000	국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2192000	당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92000	당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92000	당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2193000	냉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93000	냉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93000	냉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2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9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2301010	라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301010	라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301010	라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23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301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3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23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3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2400000	쿠스쿠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400000	쿠스쿠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2400000	쿠스쿠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3001000	타피오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3001000	타피오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3001000	타피오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3001000	타피오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903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30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3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30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1904101000	콘 플레이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101000	콘 플레이크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101000	콘 플레이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4102000	콘 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102000	콘 칩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102000	콘 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4103000	튀긴 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103000	튀긴 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103000	튀긴 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4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1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4201000	무슬리 형태의 조제 식료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201000	무슬리 형태의 조제 식료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201000	무슬리 형태의 조제 식료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4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2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4300000	불거 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300000	불거 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300000	불거 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49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901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4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9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4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5100000	귀리빵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100000	귀리빵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100000	귀리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1905400000	러스크(rusk)·토스트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400000	러스크(rusk)·토스트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400000	러스크(rusk)·토스트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5901010	빵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10	빵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10	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5901020	건빵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20	건빵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20	건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590103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190590103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3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3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5901050	쌀과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50	쌀과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50	쌀과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59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05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905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1100000	오이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100000	오이류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100000	오이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1909010	쪽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10	쪽파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10	쪽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1909020	토마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20	토마토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20	토마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1909030	꽃양배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30	꽃양배추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30	꽃양배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1909040	스위트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40	스위트콘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40	스위트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1909050	염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50	염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50	염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1909060	마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60	마늘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60	마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1909070	양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70	양파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70	양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1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1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브릭스(brix)값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브릭스(brix)값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브릭스(brix)값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2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29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2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2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003104000	양송이 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3104000	양송이 버섯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3104000	양송이 버섯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3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31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3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3901000	표고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3901000	표고버섯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3901000	표고버섯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3902000	송이버섯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3902000	송이버섯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3902000	송이버섯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3903000	송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3903000	송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3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39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3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4100000	감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4100000	감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4100000	감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4901000	스위트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4901000	스위트콘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4901000	스위트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4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49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4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1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 크로켓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 크로켓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 크로켓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2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511000	녹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11000	녹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11000	녹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512000	팥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12000	팥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12000	팥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5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1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591000	녹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91000	녹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91000	녹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592000	팥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92000	팥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92000	팥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5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9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5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700000	올리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700000	올리브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700000	올리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910000	죽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910000	죽순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910000	죽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991000	김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991000	김치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991000	김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994000	고려엉겅퀴(곤드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994000	고려엉겅퀴(곤드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994000	고려엉겅퀴(곤드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5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99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5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6001000	마롱 글라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1000	마롱 글라세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1000	마롱 글라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6002000	파인애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2000	파인애플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2000	파인애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6003000	생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3000	생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3000	생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6004000	연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4000	연근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4000	연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6006010	꼬투리를 벗긴 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6010	꼬투리를 벗긴 콩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6010	꼬투리를 벗긴 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6006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6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6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6008000	올리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8000	올리브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8000	올리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6009020	죽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9020	죽순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9020	죽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6009030	그 밖의 채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9030	그 밖의 채소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9030	그 밖의 채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60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60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791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791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791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79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791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79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799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799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799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79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매실추출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7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799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7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111000	피넛 버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111000	피넛 버터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111000	피넛 버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1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11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191000	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191000	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191000	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192000	코코넛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192000	코코넛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192000	코코넛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193000	볶은 참깨가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19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8200000	파인애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200000	파인애플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200000	파인애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8301000	유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301000	유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301000	유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83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3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8400000	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400000	배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400000	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8500000	살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500000	살구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500000	살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600000	체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600000	체리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600000	체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7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7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7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800000	초본류 딸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800000	초본류 딸기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800000	초본류 딸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910000	팜 하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10000	팜 하트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10000	팜 하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93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7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7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897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7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8972000	과실 샐러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72000	과실 샐러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897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7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8991000	포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91000	포도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91000	포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8992000	사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92000	사과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92000	사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8993000	팝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93000	팝콘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93000	팝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9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알로에제품 ② 엽록소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9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8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89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009110000	냉동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110000	냉동한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110000	냉동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190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2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290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311000	레몬주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11000	레몬주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11000	레몬주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312000	라임주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12000	라임주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12000	라임주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3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1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391000	레몬주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91000	레몬주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91000	레몬주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9392000	라임주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92000	라임주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92000	라임주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93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9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94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490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4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9500000	토마토주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500000	토마토주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500000	토마토주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 이하인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6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690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6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7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790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7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81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891010	복숭아주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891010	복숭아주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891020	딸기주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891020	딸기주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9891030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89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8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9892000	채소 주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892000	채소 주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99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1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009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09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11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11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12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12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12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1129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1000	설탕・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1000	설탕・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1201000	설탕・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1000	설탕・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9019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901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901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1209019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2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1209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301000	보리의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301000	보리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1301000	보리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301000	보리의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3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13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13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101000	양조효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2101000	양조효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102000	증류효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103000	제빵효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103000	제빵효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2104000	배양효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2104000	배양효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1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2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활성효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109000	기타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입입협회장의 검체수거증(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입입협회장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1021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102201000	불활성 효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2201000	불활성 효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1000	불활성 효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102202000	누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3010	태블릿(tablet) 모양의 것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클로렐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3010	태블릿(tablet) 모양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3010	태블릿(tablet) 모양의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220309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클로렐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3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3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2204010	태블릿(tablet) 모양의 것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스피루리나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4010	태블릿(tablet) 모양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4010	태블릿(tablet) 모양의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220409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스피루리나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4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4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2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스피루리나제품 ② 영양보충용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22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1022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100000	간장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100000	간장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100000	간장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3201000	토마토 케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201000	토마토 케첩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201000	토마토 케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3202000	그 밖의 토마토 소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202000	그 밖의 토마토 소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202000	그 밖의 토마토 소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3302000	조제한 겨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302000	조제한 겨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302000	조제한 겨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3901010	된장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1010	된장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1010	된장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3901020	춘장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1020	춘장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1020	춘장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3901030	고추장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1030	고추장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1030	고추장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39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1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3909010	마요네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9010	마요네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9010	마요네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3909030	혼합조미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9030	혼합조미료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9030	혼합조미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3909040	메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9040	메주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9040	메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3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3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04103000	채소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103000	채소로 만든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103000	채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4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1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41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500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50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3. 아이스크림 제품류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미만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5001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50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500109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9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105009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50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500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50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5009090	기타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9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106101000	두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101000	두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101000	두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6109030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6109030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109030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109030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6901010	콜라 베이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1010	콜라 베이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3011	인삼차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3011	인삼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3011	인삼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301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301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3021	홍삼차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3021	홍삼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3021	홍삼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302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302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9010	커피크리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6909010	커피크리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10	커피크리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와 및 그 밖의 효모 추출물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와 및 그 밖의 효모 추출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와 및 그 밖의 효모 추출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6909050	향미용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50	향미용 조제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50	향미용 조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9060	도토리 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60	도토리 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9060	도토리 가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단, 분말 또는 전분상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90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106909099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② 알로에제품 ③ 베타카로틴제품 ④ 키토산함유제품 ⑤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⑥ 글루코사민함유제품 ⑨ 스쿠알렌제품 ⑪ 유산균함유제품 ⑫ 클로렐라제품 ⑬ 스피루리나제품 ⑭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⑮ 배아유제품 ⑯ 배아제품 ⑰ 레시틴제품 ⑱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⑲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⑳ 엽록소함유제품 ㉒ 영양보충용제품 ㉓ 인삼제품 ㉔ 홍삼제품 ㉕ 뱀장어유제품 ㉖ EPA/DHA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99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9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106909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106909099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10690909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106909099	기타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9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201100000	광수와 탄산수	먹는 샘물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먹는물관리법
	2201100000	광수와 탄산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1100000	광수와 탄산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1901000	얼음과 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1901000	얼음과 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1909000	기타	먹는 샘물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먹는물관리법
	2201909000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1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21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29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291000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0291000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2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0299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2991000	인삼음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02991000	인삼음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2993000	식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02993000	식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2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0299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3000000	맥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3000000	맥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3000000	맥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100000	발포성 포도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100000	발포성 포도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4100000	발포성 포도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11000	붉은 포도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211000	붉은 포도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4211000	붉은 포도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12000	흰 포도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212000	흰 포도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4212000	흰 포도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2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421900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2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0422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221000	붉은 포도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21000	붉은 포도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04221000	붉은 포도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222000	흰 포도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22000	흰 포도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04222000	흰 포도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22900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0422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291000	붉은 포도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291000	붉은 포도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204291000	붉은 포도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92000	흰 포도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292000	흰 포도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204292000	흰 포도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429900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5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5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590000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6001010	사과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6001010	사과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6001010	사과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6001020	배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6001020	배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6001020	배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60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60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600109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6002010	청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6002010	청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6002010	청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6002020	약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6002020	약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6002020	약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6002030	탁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6002030	탁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6002030	탁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60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60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600209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6009010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6009010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206009010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60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60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20600909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7101000	조주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7101000	조주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7101000	조주정	주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정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주세법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주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정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주세법
	22071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710909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7109090	기타	주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정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주세법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주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정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주세법
	2208201000	꼬냑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201000	꼬냑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8201000	꼬냑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820900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301000	스카치 위스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301000	스카치 위스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8301000	스카치 위스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302000	버본 위스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302000	버본 위스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8302000	버본 위스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303000	라이 위스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303000	라이 위스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208303000	라이 위스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3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20830900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500000	진과 제네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500000	진과 제네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208500000	진과 제네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600000	보드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600000	보드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208600000	보드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701000	인삼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701000	인삼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208701000	인삼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702000	오가피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702000	오가피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8702000	오가피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7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7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2087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8709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20870900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904000	소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904000	소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8904000	소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906000	고량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906000	고량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8906000	고량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907000	데낄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907000	데낄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8907000	데낄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8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89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208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8909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208909000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
	2209001000	양조식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9001000	양조식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9001000	양조식초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Acetic acid; Glacial acetic acid; 64-1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209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90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09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090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Acetic acid; Glacial acetic acid; 64-1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1102000	수지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301102000	수지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1102000	수지박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12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12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2100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2100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2401000	쌀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2401000	쌀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2401000	쌀에서 나온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024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24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2409000	기타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3024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2500000	채두류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2500000	채두류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2500000	채두류에서 나온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3301000	사료용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3301000	사료용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303301000	사료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33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033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33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부산물비료	비료관리법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부산물비료	비료관리법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부산물비료	비료관리법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41000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에서 나온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641000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641000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41000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에서 나온 것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230641000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에서 나온 것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부산물비료	비료관리법
	230649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64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64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500000	아자나 코프라에서 나온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6500000	아자나 코프라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6500000	아자나 코프라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500000	아자나 코프라에서 나온 것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306600000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6600000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6600000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600000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부산물비료	비료관리법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부산물비료	비료관리법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6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6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6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6909000	기타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2306909000	기타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부산물비료	비료관리법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8001000	도토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08001000	도토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8001000	도토리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8003000	목화씨 껍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8003000	목화씨 껍질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8003000	목화씨 껍질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80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3080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08009000	기타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3080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80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9101000	개사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309101000	개사료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102000	고양이 사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2309102000	고양이 사료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1010	양돈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1010	양돈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9901020	양계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1020	양계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9901030	어류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1030	어류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9901040	축우용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1040	축우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9901091	대용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1099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한다.(본문 제62조 참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230990109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1099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한 것은 제외한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2020	향미제를 주로한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2030	비타민을 주로한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209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3010	향생물질을 주로한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한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309903030	미량 광물질을 주로한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309903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309909010	낚시용 떡밥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309909010	낚시용 떡밥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30990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309909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309909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101000	황색종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102000	버어리종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103000	오리엔트종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1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201000	황색종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202000	버어리종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203000	오리엔트종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2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301000	잎의 주맥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301000	잎의 주맥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동식물성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401302000	잎 부스러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302000	잎 부스러기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동식물성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4013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4013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동식물성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402101000	시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402101000	시가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2102000	셔루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402102000	셔루트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2102000	셔루트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2402103000	시가릴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402103000	시가릴로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2201000	필터담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402201000	필터담배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2201000	필터담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2402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402209000	기타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220900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2402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402900000	기타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290000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2403191000	파이프 담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403191000	파이프 담배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3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403199000	기타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3911000	판상엽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3919000	기타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3991000	씹는 담배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3992000	코 담배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3993000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3994000	입안에 머금는 담배(예:스누스)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3999000	기타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2404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1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1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110000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404110000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110000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404110000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12	기타(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12	기타(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121000	전자담배용 용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404121000	전자담배용 용액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121000	전자담배용 용액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404121000	전자담배용 용액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12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404129000	기타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1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404129000	기타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19	기타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19	기타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191000	담배대용물을 함유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404191000	담배대용물을 함유한 것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191000	담배대용물을 함유한 것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191000	담배대용물을 함유한 것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4041990	기타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1990	기타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199010	전자담배용 용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404199010	전자담배용 용액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199010	전자담배용 용액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199010	전자담배용 용액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40419909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404199090	기타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199090	기타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1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4049	기타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9	기타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910000	경구(經口)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404910000	경구(經口)용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910000	경구(經口)용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910000	경구(經口)용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404920000	피부 투여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404920000	피부 투여용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920000	피부 투여용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920000	피부 투여용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4049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404990000	기타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2404990000	기타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24049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501001010	암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01001020	천일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01009010	식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010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0100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505901010	점토사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05901010	점토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505901020	장석사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05901020	장석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505901090	기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0590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505901090	기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505909000	기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05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507001010	하소하지 아니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070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07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08100000	벤토나이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08100000	벤토나이트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508401000	산성백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08401000	산성백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잘게 부수지 않은 것)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5101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잘게 부순 것)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510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12000000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 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12000000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 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513101000	부석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13109000	부석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15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대리석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15112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트래버틴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15200000	에코신과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석고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16110000	화강암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16201000	사암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16901000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암석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16909000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암석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1690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사문석	석면안전관리법
	2517101000	자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517102000	쇄석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5171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51720000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A320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517300000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A320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5174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2 참조).	식물방역법
	251749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사문석	석면안전관리법
	2519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19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520101000	석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2520101000	석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520102000	무수석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252020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2522200000	소석회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소석회)	먹는물관리법
	2524100000	청(靑)석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1%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2524100000	청(靑)석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동 물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2524901000	갈(褐)석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1%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2524901000	갈(褐)석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갈석면[Amosite; 12172-7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524902000	백(白)석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1%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2524902000	백(白)석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동 물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2524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동 물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석재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52610000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2610000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Talc; 14807-96-6]	화학물질관리법
	252610000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활석	석면안전관리법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Talc; 14807-96-6]	화학물질관리법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활석	석면안전관리법
	2530101000	질석(蛭石)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질석	석면안전관리법
	2530904000	주사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530904000	주사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30909099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530909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30909099	기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53090909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530909099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해포석	석면안전관리법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제6조와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619001010	용광로 슬래그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19001010	용광로 슬래그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1900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1900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19002000	드로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19002000	드로스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19003000	스케일링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폐금속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19003000	스케일링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190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폐금속류 ③ 폐주물사 및 폐사 ④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190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110000	경아연 스펠터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110000	경아연 스펠터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오니류 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②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③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A1080) ④ 폐촉매(A2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1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연제련 제조 부산물[Flue dust, zinc-refining; 69012-6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620210000	유연 가솔린 슬러지와 유연 안티녹 화합물 슬러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오니류 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210000	유연 가솔린 슬러지와 유연 안티녹 화합물 슬러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납성분 녹킹방지제 화합물 슬러지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3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2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오니류 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2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②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③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④ 폐블라스트사(AB1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2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 매트[Matte, lead; 84195-5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620300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300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②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1090) ③ 동제련 가스정제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분진 및 잔재물(A1100) ④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전해용액(A1110) ⑤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의 전해액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양극 제외)(A1120) ⑥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⑦ 폐염화구리 및 시안화구리 촉매(A1140) ⑧ 폐촉매(A2030) ⑨ 폐블라스트사(AB130) ⑩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블라스트사(AB130) ②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비소 - 수은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제6조와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 베릴륨 - 카드뮴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 베릴륨화합물 - 카드뮴화합물 ③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9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6209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09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납 - 셀레늄 - 텔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납화합물 - 셀레늄화합물 - 텔레륨화합물 ③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④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⑤ 바나듐재와 잔재물(AA060) ⑥ 폐촉매(A2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정폐기물의 소각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 II)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1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분진 ② 소각재 ③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④ 오니류 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621901000	분진(제철, 시멘트 제조공정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2621901000	분진(제철, 시멘트 제조공정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21902000	석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2621902000	석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21909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2621909000	기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7030010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2707100000	벤조올(벤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벤젠[Benzene; 71-43-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400000	나프탈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나프탈렌[Naphthalene; 91-2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9100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레오소트[Creosote; 8001-58-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992000	안트라센(anthracene)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993000	페놀(석탄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페놀[Phenol;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9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레졸[Cresol; 1319-77-3, 95-48-7, 108-39-4, 106-44-5]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자이레놀[Xylenol; 1300-71-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900101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1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2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2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3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3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4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4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5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5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6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6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7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7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8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8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1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2000	역청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09002000	역청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2000	항공 휘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2000	항공 휘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가지형 및 선형 (C=10~14) 알켄[Alkenes, (C=10~14) branched and linear, (C=12)-rich; 93821-12-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124000	나프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4000	나프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5000	엔지엘(NGL)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5000	엔지엘(NGL)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900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2900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1010	제트 연료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1010	제트 연료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1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1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2010	등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2010	등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2020	제트 연료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2020	제트 연료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2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2090	기타	석유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3000	경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3000	경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4010	경질 중유(벙커에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4010	경질 중유(벙커에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4020	중유(벙커비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4020	중유(벙커비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4030	벙커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4030	벙커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4030	벙커시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잔사, 연료유[Fuel oil, residual; 68476-3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194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4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197230	기어오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197320	유동파라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197410	방청유(anti-corrosive oil)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1979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1979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1019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10201010	자동차 휘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1010	자동차 휘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1020	항공 휘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1020	항공 휘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1030	프로필렌테트라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1030	프로필렌테트라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1040	나프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1040	나프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1050	엔지엘(NGL)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1050	엔지엘(NGL)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1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1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110	제트 연료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110	제트 연료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1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1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210	등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210	등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220	제트 연료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220	제트 연료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230	노르말-파라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2092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2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300	경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300	경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4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4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	석유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420	중유(벙커비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420	중유(방카 비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430	중유(방카 비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430	벙커시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4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4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209712	자동차용 기관오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209713	선박용 기관오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209723	기어오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209732	유동파라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209733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710209741	방청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10209745	유압브레이크유	다음의 것은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20979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102099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1020	나프타 및 엔·지·엘(NGL)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1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1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1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71091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1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③ 압연유(AC060) ④ 브레이크액(AC070) ⑤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11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2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2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1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12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1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12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1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1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1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1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4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4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4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14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14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14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14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1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1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1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1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1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50㎎/㎏이상의 응축수준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CN),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물질 및 물품(A3180) ④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⑤ 압연유(AC060) ⑥ 브레이크액(AC070) ⑦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1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91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1090	기타	석유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9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9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92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2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9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92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9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9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9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9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2710994010	경질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94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409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4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94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94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2710994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9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099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099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099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710995000	조유・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09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열전도 유체(A3040) ③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④ 압연유(AC060) ⑤ 브레이크액(AC070) ⑥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711110000	천연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2711110000	천연가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1120000	프로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1130000	부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1130000	부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71119000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1210000	천연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2711210000	천연가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1290000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713200000	석유역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13900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의 잔재물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석유코크스 및 역청탄의 제조,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A3010) ② 유기물질의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에서 발생되는 폐타르잔재(아스팔트 시멘트 제외)(A319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801100000	염소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액화염소)	먹는물관리법
	2801100000	염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01100000	염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소[Chlorine; 7782-5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1301000	플루오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불소[Fluorine; 7782-41-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1302000	브롬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브롬[Bromine;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1302000	브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04400000	산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04400000	산소	[약사법] 1.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 (산소캔, 공기캔)	약사법

	28046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II,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804701000	황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백린[White phosphorus; 12185-1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4701000	황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04800000	비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 [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 [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4800000	비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04900000	셀렌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및 이를 25% 이상 함	화학물질관리법
	2804900000	셀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05110000	나트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나트륨[Sodium;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5110000	나트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051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칼륨[Potassium; 7440-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5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05400000	수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2805400000	수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05400000	수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제6조와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805400000	수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은[Mercury; 7439-97-6] 또는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은화합물(황화 제이수은[Mercuric sulfide; 1344-48-5], 요오드화 제일수은[Mercuric iodide; 7774-29-0], 오레인산 수은[Mercuric oleate; 1191-80-6], 아미노 염화 제이수은[Amino mercury(II) chloride; 10124-48-8], 뇌산 제이수은[Mercury(II) fulminate; 628-86-4]은 제외)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질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nitrate; 55-68-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페닐수은[Phenylmercury hydroxide; 100-57-2]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2-메톡시에틸수은[2-Methoxyethylmercury chloride; 123-88-6]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06200000	클로로황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7790-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6200000	클로로황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06200000	클로로황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산[Sulfuric acid;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70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07001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산[Sulfuric acid;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70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07002000	발연황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발연황산[Fuming sulfuric acid; 8014-95-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7002000	발연황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질산[Nitric acid;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8001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질산[Nitric acid;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80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08002000	황질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09100000	오산화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오산화 인[Phosphorus pentoxide; 1314-5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9100000	오산화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092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09201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09202000	폴리인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삼산화 이붕소[Diboron trioxide; 1303-86-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0002000	오르토붕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810002000	오르토붕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10002000	오르토붕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붕산[Boric acid; 10043-35-3, 11113-50-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00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810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라플루오로붕산[Tetrafluoroboric acid; 16872-11-0]과 그 염류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테트라플루오로붕산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 테트라플루오로붕산 칼륨(Potassium tetrafluoroborate; 14075-53-7)은 제외 ● 플루오르화 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111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라플루오로붕산[Tetrafluoroboric acid; 16872-11-0]과 그 염류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테트라플루오로붕산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 테트라플루오로붕산 칼륨(Potassium tetrafluoroborate; 14075-53-7)은 제외 ● 플루오르화 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1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11120000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11120000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브롬화 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11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811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헥사플루오로규산 염류(Hexafluorosilicic acid, salts)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헥사플루오로규산[Hexafluorosilicic acid; 16961-83-4]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플루오로붕산[Tetrafluoroboric acid; 16872-11-0]과 그 염류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테트라플루오로붕산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 테트라플루오로붕산 칼륨(Potassium tetrafluoroborate; 14075-53-7)은 제외 ● 요오드화 수소[Hydrogen iodide; 10034-8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을 제외)및	화학물질관리법

	2811210000	이산화탄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11229010	실리카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11229010	실리카겔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1122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1122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11291000	일산화탄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1292000	아산화질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11292000	아산화질소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8112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이산화염소)	먹는물관리법
	2811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112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동 물질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및 그 중 하나를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10049-04-4] 및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산화 황[Sulfur dioxide; 7446-09-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211000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1211000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포스겐[Phosgene;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212000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1212000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옥시염화 인[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213000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1213000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삼염화 인[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214000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1214000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오염화 인[Phosphorus pentachloride; 10026-1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215000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1215000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황[Sulfur chloride; 10025-67-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2160000	설퍼 디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12170000	티오닐 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12170000	티오닐 클로라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티오닐[Thionyl chloride;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2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121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 [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 [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클로로 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플루오로보란[Trifluoroborane;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1290200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12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 [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 [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망간 칼륨 규소[Manganese potassium silicon fluoride;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술퍼릴[Sulfuryl fluoride; 2699-7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2,2-테트라플루오로디보란(4)[1,1,2,2-Tetrafluorodiborane(4); 13965-73-6, 206760-59-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2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13100000	이황화탄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이황화 탄소[Carbon disulfide; 75-1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3100000	이황화탄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1390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오황화 인[Phosphorus pentasulfide; 1314-8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 [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 [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4100000	무수암모니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14100000	무수암모니아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4200000	암모니아수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4200000	암모니아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15110000	고체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수산화나트륨 액체)	먹는물관리법
	2815110000	고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15110000	고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5110000	고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수산화나트륨 액체)	먹는물관리법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1530000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과산화 나트륨[Sodium peroxide; 1313-60-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17001000	산화아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17001000	산화아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17001000	산화아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중크롬산[Dichromic acid; 13530-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 염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롬산[Chromic acid; 7738-94-5]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수 크롬산[Chromic anhydride; 1333-8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2001099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화코발트[Cobalt monoxide; 1307-96-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산화 코발트[Cobalt dihydroxide; 21041-93-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3001000	아나타스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3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4100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4100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4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4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히드라진 수화물[Hydrazine hydrat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51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7803-49-8]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히드라진 염산염 (1:2)[Hydrazine, hydrochloride (1:2); 5341-61-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	화학물질관리법
	2825401000	산화니켈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화니켈 및 황화니켈류[Nickel oxide; 1313-99-1, 11099-02-8, 12035-36-8, 1314-06-3 / Nickel sulfide; 16812-54-7, 11113-75-0, 12035-72-2]와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니켈[Nickel dicyanide; 557-19-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플루오르 붕산니켈[Nickel bis(tetrafluoroborate); 14708-1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5401000	산화니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25402000	수산화니켈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산화 니켈[Nickel hydroxide; 12054-48-7, 11113-7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5501000	산화구리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화구리[Copper oxide; 1317-38-0, 1344-70-3, 1317-3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5502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25800000	산화안티몬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을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을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5800000	산화안티모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25901010	산화칼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5901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5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25902010	수산화칼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5902050	니켈 코발트 망간 수산화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Cobalt manganese nickel hydroxide; 189139-63-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5902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59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25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6193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오르화 칼륨[Potassium fluoride; 7789-2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6193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6193090	기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 또는 플루오르화나트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오르화 나트륨[Sodium fluoride; 7681-4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플루오르화 암모늄[Ammonium bifluoride; 1341-4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암모늄[Ammonium fluoride; 12125-0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 또는 플루오르화나트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오르화 텅스텐[Tungsten hexafluoride; 7783-8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6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6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오르화 리튬[Lithium fluoride; 7789-2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	화학물질관리법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리올라이트[Cryolite; 15096-52-3,13775-53-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헥사플루오로규산 염류(Hexafluorosilicic acid, salts)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헥사플루오로규산[Hexafluorosilicic acid; 16961-83-4]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라플루오로붕산[Tetrafluoroboric acid; 16872-11-0]과 그 염류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테트라플루오로붕산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 테트라플루오로붕산 칼륨(Potassium tetrafluoroborate; 14075-53-7)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 테트라플루오로(옥살라토)포스페이트[Lithium tetrafluoro(oxalato) phosphate; 521065-3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리튬 디플루오로포스페이트[Lithium difluorophosphate; 24389-25-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1-메틸에틸)페닐](4-메틸페닐)이오도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1-) (1:1)[[4-(1-Methylethyl)phenyl](4-methylphenyl)iodonium, hexafluorophosphate(1-) (1:1); 184477-2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오로황산 리튬[Lithium fluoro sulfate; 13453-75-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헥사플루오로규산 염류(Hexafluorosilicic acid, salts)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헥사플루오로규산[Hexafluorosilicic acid; 16961-83-4]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6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	화학물질관리법

	2826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6909000	기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27100000	염화암모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7100000	염화암모늄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27200000	염화칼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알루미늄[Aluminium trichloride; 7446-70-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7350000	니켈 염화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니켈[Nickel chloride; 7718-54-9, 37211-05-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7391000	구리염화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구리[Copper chloride; 7758-8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73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273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73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	화학물질관리법

	2827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73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염화제이철(액체)]	먹는물관리법
	2827412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827491000	산화염화물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	화학물질관리법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275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	화학물질관리법

	2827609010	요드화칼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27609010	요드화칼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76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760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	화학물질관리법
	28276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760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2810000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고도표백분)	먹는물관리법
	282810000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89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28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아염소산 나트륨[Sodium chlorite; 7758-1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소산 염류[Chloric acid,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291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소산 염류[Chloric acid,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9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9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화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sulphide; 16721-8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0901000	황화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화니켈 및 황화니켈류[Nickel oxide; 1313-99-1, 11099-02-8, 12035-36-8, 1314-06-3 / Nickel sulfide; 16812-54-7, 11113-75-0, 12035-72-2]와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니켈[Nickel dicyanide; 557-19-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플루오르 붕산니켈[Nickel bis(tetrafluoroborate); 14708-1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30901000	황화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30902000	폴리황화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190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32200000	그 밖의 아황산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2200000	그 밖의 아황산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23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31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3240000	황산니켈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산니켈[Nickel sulfate; 7786-8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325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황산동)	먹는물관리법
	283325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325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325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83325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3259000	기타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황산동)	먹는물관리법
	283325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325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325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83325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325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산구리[Copper sulfate; 7758-9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3291000	황산철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황산제이철)	먹는물관리법
	2833291000	황산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3291000	황산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3291000	황산철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833291000	황산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3292010	이차전지 제조용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산코발트[Cobalt sulfate; 10124-43-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3292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산코발트[Cobalt sulfate; 10124-43-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3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32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32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8332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3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3300000	명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34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4100000	아질산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4100000	아질산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질산 염류[Nitrous acid, salts]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4210000	질산칼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42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	화학물질관리법
	2834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351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5240000	인산칼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5240000	인산칼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5260000	그 밖의 인산칼슘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5260000	그 밖의 인산칼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5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52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	화학물질관리법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53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53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6400000	탄산칼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6400000	탄산칼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6500000	탄산칼슘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6500000	탄산칼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6991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3699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6991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탄산 코발트[Cobalt carbonate; 513-79-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7111000	시안화나트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37111000	시안화나트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7112000	산화시안화나트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37112000	산화시안화나트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7191010	시안화칼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37191010	시안화칼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7191020	시안화구리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37191020	시안화구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7191030	시안화아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37191030	시안화아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7191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371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7192000	산화시안화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37192000	산화시안화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7192000	산화시안화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8372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화학물질관리법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39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399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839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39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화학물질관리법
	2840110000	무수물(無水物)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붕산 이나트륨[Disodium tetraborate; 1330-43-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01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붕산 이나트륨[Disodium tetraborate; 1330-43-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0200000	그 밖의 붕산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중크롬산[Dichromic acid; 13530-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 염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롬산[Chromic acid; 7738-94-5]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수 크롬산[Chromic anhydride; 1333-8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4150000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 카드뮴[Cadmium;7440-43-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중크롬산[Dichromic acid; 13530-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 염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150000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과망간산 칼륨[Potassium permanganate; 7722-6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1693000	과망간산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1800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1903000	안티몬산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41903000	안티몬산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41905000	바나듐산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1909010	코발트산 리튬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Cobalt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182442-9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칼슘 몰리브데넘 네오디뮴[Calcium molybdenum neodymium oxide; 1814903-2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1909020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Cobalt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182442-9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칼슘 몰리브데넘 네오디뮴[Calcium molybdenum neodymium oxide; 1814903-2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1909020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841909030	니켈코발트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Cobalt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182442-9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칼슘 몰리브데넘 네오디뮴[Calcium molybdenum neodymium oxide; 1814903-2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1909040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Cobalt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182442-9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칼슘 몰리브데넘 네오디뮴[Calcium molybdenum neodymium oxide; 1814903-2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190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 [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 [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Cobalt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182442-9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칼슘 몰리브데넘 네오디뮴[Calcium molybdenum neodymium oxide; 1814903-2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Cobalt manganese nickel oxide; 37348-84-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177997-1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산화 알루미늄 나트륨[Aluminium sodium dioxide; 1302-4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2101000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42909000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하이드로탈사이드	약사법
	2842909000	기타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42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42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 (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 (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 (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 [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	화학물질관리법
	2842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843210000	질산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무기은 염류는 제외 ● 질산은[Silver nitrate; 7761-8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은[Silver sulfate; 10294-26-5, 19287-8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32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무기은 염류는 제외 ● 질산은[Silver nitrate; 7761-8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은[Silver sulfate; 10294-26-5, 19287-8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인산과 은(1+), 나트륨, 지르코늄(4+)의 염[Phosphoric acid, silver(1+) sodium zirconium(4+) salt; 265647-1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금청산칼륨(Potassium gold cyanid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33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43901000	아말감(amalgam)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2843901000	아말감(amalgam)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43909010	백금 화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백금산과 2-아미노에탄올의 화합물(1:2)[Dihydrogen hexahydroxyplatinate compound with 2-aminoethanol (1:2); (OC-6-11)-Platinate(Pt(OH)62-), hydrogen compd. with 2-aminoethanol (1:2:2); 68133-90-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390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산화 오스뮴[Osmium tetroxide; 20816-12-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43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44101000	천연우라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4102000	분산물(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4109000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4201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4202000	분산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4209000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4301000	분산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4309000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4309000	기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844410000	삼중수소와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삼중수소와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44410000	삼중수소와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삼중수소와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자력안전법]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1. 방사성동위원소의 화합물 및 이들의 함유물 2. 방사성 의약품	원자력안전법
	2844420000	악티늄-225·악티늄-227·캘리포늄-253·퀴륨-240·퀴륨-241·퀴륨-242·퀴륨-243·퀴륨-244·아인슈타이늄-253·아인슈타이늄-254·가돌리늄-148·폴로늄-208·폴로늄-209·폴로늄-210·라듐-223·우라늄-230·우라늄-232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원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자력안전법]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1. 방사성동위원소의 화합물 및 이들의 함유물 2. 방사성 의약품	원자력안전법
	2844430000	그 밖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44430000	그 밖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자력안전법]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2844440000	방사성 잔재물	[원자력안전법]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1. 방사성동위원소의 화합물 및 이들의 함유물 2. 방사성 의약품	원자력안전법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28459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과산화 우레아[Urea peroxide; 124-43-6] 및 이를 17%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7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470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과산화 우레아[Urea peroxide; 124-43-6] 및 이를 17%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47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49200000	탄화규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실리콘 카바이드 섬유상[Silicon carbide fibrous; 409-21-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0001000	수소화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0002000	질화물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질화연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50002000	질화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질화리튬[Lithium nitride; 26134-6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0003000	아지드화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지드화 나트륨[Sodium azide; 26628 -22-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0003000	아지드화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50003000	아지드화물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아지화연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50005000	붕화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210000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5210000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제6조와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85210000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수은[Mercury; 7439-97-6] 또는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은화합물(황화 제이수은[Mercuric sulfide; 1344-48-5], 요오드화 제일수은[Mercuric iodide; 7774-29-0], 오레인산 수은[Mercuric oleate; 1191-80-6], 아미노 염화 제이수은[Amino mercury(II) chloride; 10124-48-8], 뇌산제이수은[Mercury(II) fulminate; 628-86-4]은 제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질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nitrate; 55-68-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페닐수은[Phenylmercury hydroxide; 100-5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2-메톡시에틸수은[2-Methoxyethylmercury chloride; 123-8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	화학물질관리법
	285210000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화약류(뇌홍) ● 질화연 ● 아지화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52903000	소호 제3501.90호의 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의 것(커피크리머 제조용은 제외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529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뮤코다당단백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85290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제6조와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85310000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85310000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염화 시안[Cyanogen chloride;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310000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310000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은[Mercury; 7439-97-6] 또는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은화합물(황화 제이수은[Mercuric sulfide; 1344-48-5], 요오드화 제일수은[Mercuric iodide; 7774-29-0], 오레인산 수은[Mercuric oleate; 1191-80-6], 아미노 염화 제이수은[Amino mercury(II) chloride; 10124-48-8], 뇌산제이수은[Mercury(II) fulminate; 628-86-4]은 제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질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nitrate; 55-68-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페닐수은[Phenylmercury hydroxide; 100-5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2-메톡시에틸수은[2-Methoxyethylmercury chloride; 123-8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3901000	증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853902000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핀[Phosphine;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아연[Zinc phosphide;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3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53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테트라이소시아나토실란[Tetraisocyanatosilane; 3410-7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아미드[Cyanamide; 420-04-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3909000	기타	[약사법] 1.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 (산소캔, 공기캔)	약사법
	2901102000	헥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1210000	에틸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1241000	1,3-부타디엔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1242000	이소프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이소프렌[Isoprene; 78-79-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1291000	헥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1292000	옥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1292000	옥텐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옥텐[1-Octene; 111-6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1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12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01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12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헥사카르보닐 (3,3-디메틸-1-부틴)다이코발트[Hexacarbonyl (3,3-dimethyl-1-butyne)dicobalt; 56792-6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데센-4-인[1-Decen-4-yne; 24948-6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메틸펜텐[2,4,4-Trimethylpentene; 25167-70-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데신[5-Decyne; 1942-46-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2110000	시클로헥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2110000	시클로헥산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이클로헥산[Cyclohexane; Hexahydrobenzene; 110-8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2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2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리모넨[Limonene; 5989-27-5, 138-86-3, 5989-5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7,7-트리메틸바이사이클로[4.1.0]헵-3-텐[3,7,7-Trimethylbicyclo[4.1.0]hept-3-ene; 13466-7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메틸-4-(1-메틸에틸)시클로헥산, 테트라히드로 유도체[1-Methyl-4-(1-methylethyl) cyclohexane, tetradehydro deriv.; 1329-9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사이클로펜타디엔[Dicyclopentadiene; 77-73-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틸사이클로헥산[Ethylcyclohexane; 1678-9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틸사이클로헥산[Methylcyclohexane; 108-8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2200000	벤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벤젠[Benzene; 71-43-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2200000	벤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2300000	톨루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2420000	메타-크실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2430000	파라-크실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2500000	스티렌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2901000	나프탈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나프탈렌[Naphthalene; 91-2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2903000	메틸스티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2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2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메틸에틸)-1,1'-비페닐[(1-Methylethyl)-1,1'-biphenyl; 25640-7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비페닐[1,1'-Biphenyl; Diphenyl; Phenylbenzene; 92-5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부틸벤젠[Isobutylbenzene; 538-9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1,1-디메틸-3-메틸렌-1,3-프로판디일)비스벤젠[1,1'-(1,1-Dimethyl-3-methylene-1,3-propanediyl)bisbenzene; 6362-8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에틸[Ethyl chloride; 75-00-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로포름[Chloroform; 67-66-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3140000	사염화탄소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140000	사염화탄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2903140000	사염화탄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2-이염화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3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1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클로로에탄[Hexachloroethane; 67-7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32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E)-1,4-디클로로-2-부텐[(2E)-1,4-Dichloro-2-butene; 110-57-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디클로로프로펜[1,3-Dichloropropene; 542-7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릴 클로라이드[3-Chloro-1-propene; Allyl chloride;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410000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20000	디플루오로메탄(HFC-32)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30000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과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40000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50000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과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60000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과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70000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과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80000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91000	헥사플루오로에탄(CFC-116)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4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Hexafluoro-1,3-butadiene;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5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5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Tetrafluoroethene; 116-14-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610000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74-83-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903610000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농산물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620000	에틸렌 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6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2,2-테트라브로모에탄[1,1,2,2-Tetrabromoethane; 79-27-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브로모-2-메틸-1-프로펜[3-Bromo-2-methyl-1-propene; 1458-9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브로모-1-프로펜[3-Bromo-1-propene; 106-9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710000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200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30000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141b)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40000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142b)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500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225ca, 225cb)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6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70000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90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②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③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④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⑤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⑥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⑦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⑧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⑨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⑩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⑪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⑫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⑬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 ⑭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⑮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⑯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⑰ 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31) ⑱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⑲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21) ⑳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22) ㉑ 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31) ㉒ 디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32) ㉓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33) ㉔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51) ㉕ 헥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21) ㉖ 펜타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22) ㉗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23) ㉘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24) ㉙ 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HCFC-226) ㉚ 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31) ㉛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32) ㉜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33) ㉝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34) ㉞ 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3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9037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브로모-2-클로로에탄[1-Bromo-2-chloroethane; 107-0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8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헥사클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8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38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린데인(Lindane;58-89-9) ●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Alpha hexachlorocyclohexane;319-84-6) ●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Beta hexachlorocyclohexane;319-85-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벤젠 핵사클로라이드(B.H.C) ② 린데인(r-B.H.C) ③ 헵타클로로 알드린 메틸 브로마이드(Hepta Chloro aldrin methyl bromide)	약사법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알드린(Aldrin;309-00-2) ● 클로르데인(Chlordane;57-74-9) ● 헵타클로르(Heptachlor;76-44-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830000	미렉스(ISO)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미렉스(Mirex;2385-85-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89	기타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벤젠 핵사클로라이드(B.H.C) ② 린데인(r-B.H.C) ③ 헵타클로로 알드린 메틸 브로마이드(Hepta Chloro aldrin methyl bromide)	약사법
	290389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038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3891000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Hexabromocyclododecane; 3194-55-6, 25637-9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891000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Hexabromocyclododecane)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HBCD;25637-99-4), 1,2,5,6,9,10-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1,2,5,6,9,10-HBCD;3194-55-6), 알파-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α-HBCD;134237-50-6), 베타-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β-HBCD;134237-51-7), 감마-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γ-HBCD;134237-5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8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Hexachlorocyclopentadiene; 77-4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퍼플루오로시클로펜텐[Perfluorocyclopentene; 559-4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3,4,4,5,5-헵타플루오로시클로펜텐 [1,3,3,4,4,5,5-Heptafluorocyclopentene ; 1892-0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89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톡사펜(Toxaphene;8001-35-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910000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클로로벤젠[1,2-Dichlorobenzene; 95-5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920000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920000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118-74-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930000	펜타클로로벤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obenzene, PeCB;608-93-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940000	헥사브로모비페닐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헥사브로모바이페닐(Hexabromobiphenyl;36355-01-8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3940000	헥사브로모비페닐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992000	트리클로로벤젠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클로로메틸)벤젠[(Trichloromethyl)benzene; 98-07-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9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플루오로-1,1'-비페닐[2-Fluoro-1,1'-biphenyl; 321-60-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메틸)에테닐벤젠 [(Chloromethyl)ethenylbenzene; 30030-2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벤질[Benzyl chloride; (Chloromethyl)benzene; 100-4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클로로메틸)벤젠[(Trichloromethyl)benzene; 98-07-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클로로메틸)-4-에테닐벤젠 [1-(Chloromethyl)-4-ethenylbenzene; 1592-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브로모-2,5-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벤젠 [1,4-Dibromo-2,5-bis(trifluoromethyl)benzene; 2375-9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브로모-2-메틸벤젠[1-Bromo-2-methylbenzene; 95-4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이오도톨루엔[4-Iodotoluene; 624-3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3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410000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탄술폰산[Methanesulfonic acid; 75-7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니트로톨루엔[4-Nitrotoluene;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트리니트로톨루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2904209010	니트로벤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4209010	니트로벤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4209010	니트로벤젠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트리니트로벤젠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4209010	니트로벤젠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29042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트리니트로벤젠 ② 트리니트로톨루엔 ③ 피크린산 ④ 기타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한 화합물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420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25321-14-6, 121-14-2, 606-20-2, 610-39-9, 602-01-7, 619-15-8, 618-85-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니트로나프탈렌[1-Nitronaphthalene; 86-57-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디메틸-2,3-디니트로부탄[2,3-Dimethyl-2,3-dinitrobutane; 3964-1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4209090	기타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2904209090	기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1% 이하인 것은 제외) ●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	산업안전보건법
	290431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과불화옥테인설폰산(PFOS;1763-23-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432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9081-56-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433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리튬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Lith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9457-72-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434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포타슘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Potass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795-39-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434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 칼륨[Potassium perfluorooctanesulfonate; 2795-39-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4360000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과불화옥테인설포닐플로라이드(PFOS-F;307-35-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4910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4910000	기타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4910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4910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49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049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o-톨루엔술폰산[o-Toluenesulfonyl chloride; 133-59-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플릭산[Triflic acid; 1493-13-6]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디클로로-1-니트로에탄[1,1-Dichloro-1-nitroethane; 594-72-9]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클로로-2-니트로프로판[1-Chloro-2-nitropropane; 2425-66-3]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클로로-2-니트로벤젠[1-Chloro-2-nitrobenzene; 88-73-3]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메탄술포닐[Methanesulfonyl chloride; 124-63-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수 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Trifluoromethanesulfonic anhydride; 358-23-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4990000	기타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2904990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4990000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67-5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512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16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도데칸올[1-Dodecanol; 112-5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알코올)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5199020	2-프로필-헵틸 알코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1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1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탄올레이트 나트륨[Sodium methanolate; 124-4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테트라데칸올[1-Tetradecanol; 112-7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5221000	게라니올·시트로네롤·리날롤·로디놀 및 네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2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지방족 고급알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2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알릴 알콜[Allyl alcohol; 107-1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핀-1-올[2-Propyn-1-ol; 107-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메틸-1-트리데신-3-올[3-Methyl-1-tridecyn-3-ol; 100912-15-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	화학물질관리법
	2905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391000	1,4-부탄디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53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부틴-1,4-디올[2-Butyne-1,4-diol; 110-6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5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5430000	만니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05450000	글리세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450000	글리세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05450000	글리세롤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05450000	글리세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05450000	글리세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5490000	기타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0549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054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5490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05490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054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55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2,2-트리플루오로에탄올[2,2,2-Trifluoroethanol; 75-8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브로노폴[Bronopol; 2-Bromo-2-nitro-1,3-propanediol; 52-5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히드린[Chlorohydrin; 96-2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디클로로-2-프로판올[1,3-Dichloro-2-propanol; 96-2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브로모에탄올[2-Bromoethanol; 540-5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107-0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디브로모-1-프로판올[2,3-Dibromo-1-propanol; 96-1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핀-1-올, 1-메탄술포네이트[2-Propyn-1-ol, 1-methane sulfonate; 16156-5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디브로모-2-니트로에탄올[2,2-Dibromo-2-nitroethanol; 69094-1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55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6110000	멘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06110000	멘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6110000	멘톨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06110000	멘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6132000	이노시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06132000	이노시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6132000	이노시톨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06132000	이노시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06132000	이노시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6191000	보르네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6192000	테르피네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6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6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메틸-2-[(1,2,2-트리메틸비시클로[3.1.0]헥스-3-일)메틸]시클로프로판메탄올[1-Methyl-2-[(1,2,2-trimethylbicyclo[3.1.0]hex-3-yl)methyl]cyclopropanemethanol; 198404-98-7]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3-(5,5,6-트리메틸바이사이클로[2.2.1]헵-2-틸)사이클로헥산올[3-(5,5,6-Trimethylbicyclo[2.2.1]hept-2-yl)cyclohexanol; 3407-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2,6,6-트리메틸-1-사이클로헥센-1-일)-3-부텐-2-올[4-(2,6,6-Trimethyl-1-cyclohexen-1-yl)-3-buten-2-ol; 22029-7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6-디메틸-4-(2,2,3-트리메틸-3-사이클로펜텐-1-yl)-2-사이클로헥센-1-올[2,6-Dimethyl-4-(2,2,3-trimethyl-3-cyclopenten-1-yl)-2-cyclohexen-1-ol; 1401065-8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6210000	벤질알코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62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62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코폴[dicofol; 115-3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비페닐메탄올[4-Biphenylmethanol; 3597-9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6290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디코폴(Dicofol;115-32-2,10606-46-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7111000	페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7111000	페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페놀[Phenol;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7111000	페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7112000	페놀의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7112000	페놀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7121000	크레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레졸[Cresol; 1319-77-3, 95-48-7, 108-39-4, 106-44-5]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7121000	크레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7131000	옥틸페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노닐페놀류[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와 4-tert-옥틸페놀[4-tert-Octylphenol; 140-66-9]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7131000	옥틸페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7132000	노닐페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68412-53-3,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페인트, 잉크, 가정용 세척제의 용도 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가죽 가공 용도(단, 하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tert-옥틸페놀[4-tert-Octylphenol; 140-66-9]	화학물질관리법
	2907132000	노닐페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713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0713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0713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713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노닐페놀 칼륨 염(1:1)[Nonyl phenol, potassium salt (1:1); 27936-4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7151000	나프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나프톨[2-Naphthol; 135-1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719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자이레놀[Xylenol; 1300-71-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719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7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71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07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피렌올[1-Pyrenol; 1-Hydroxypyrene; 5315-7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o-페닐페놀[o-Phenylphenol; [1,1'-Biphenyl]-2-ol; 90-4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비스(1,1-디메틸에틸)페놀[2,4-Bis(1,1-dimethylethyl)phenol; 96-7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6-비스(1,1-디메틸에틸)페놀[2,6-Bis(1,1-dimethylethyl)phenol; 128-39-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7211000	레조르시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벤젠디올[1,3-Benzenediol; Resorcinol; 108-4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7221000	히드로퀴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123-3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4,4'-(1-Methylethylidene)bisphenol; Bisphenol A; 80-0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72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삼염화 포스포릴, o-페닐페놀과 페놀의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s of phosphoryl trichloride, o-phenylphenol and phenol;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2,2,2-트리플루오로-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벤젠, 염소, 염화 황의 반응생성물[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bisphenol reaction products with benzene, chlorine and sulfur chloride (S2Cl2); 921213-4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9-비스(4-히드록시페닐)플루오렌[9,9-Bis(4-hydroxyphenyl)fluorene; 3236-7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틸렌비스페놀[Methylenebisphenol; Bisphenol F; 1333-16-0, 2467-02-9, 2467-03-0, 620-92-8]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1-메틸에틸리덴)비스[2,6-디메틸페놀][4,4'-(1-Methylethylidene)bis[2,6-dimethylphenol]; 5613-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7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터(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 펜타클로로페놀(PCP; 87-86-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4'-(1-메틸에틸리덴)비스[2,6-디브로모페놀][4,4'-(1-Methylethylidene)bis[2,6-dibromophenol]; Tetrabromobisphenol A; 79-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4,6-트리브로모페놀[2,4,6-Tribromophenol; 118-7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8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3,5-디플루오로페놀[3,5-Difluorophenol; 2713-34-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8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819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터(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 소듐 펜타클로로페놀(Sodium pentachlorophenate, NaPCP;131-52-2), 소듐 펜타클로로페네이트 1수화물(Sodium pentachlorophenate as monohydrate;27735-64-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노셉[Dinoseb; 2-sec-Butyl-4,6-dinitrophenol; 88-8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피크린산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89200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엔오시[DNOC; 534-52-1]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89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4-디클로로-6-니트로페놀[2,4-Dichloro-6-nitrophenol; 609-89-2]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51-28-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넥스[Dinex; 131-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노텁[Dinoterb; 1420-07-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크릭 산[Picric acid; 88-89-1]과 그 염류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폭발약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908990000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피크린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9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1,2,2-테트라플루오로-3-(1,1,2,2-테트라플루오로에톡시)프로판[1,1,2,2-Tetrafluoro-3-(1,1,2,2-tetrafluoroethoxy)propane; 16627-68-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메톡시에탄[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1,2-Dimethoxyethane; 110-71-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옥시비스(2-메톡시에탄)[1,1'-Oxybis(2-methoxyethane); 111-96-6]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9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3-메톡시-7,7-디메틸-10-메틸렌바이사이클로[4.3.1]데칸[3-Methoxy-7,7-dimethyl-10-methylenebicyclo[4.3.1]decane; 216970-2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302000	아네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930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930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930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930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사이클로헥실옥시)에틸]벤젠[[2-(Cyclohexyloxy)ethyl]benzene; 80858-47-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3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930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할펜프록스[Halfenprox; 111872-58-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사이클로헥실옥시)에틸]벤젠[[2-(Cyclohexyloxy)ethyl]benzene; 80858-47-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클로로-2-(1,1,2,3,3,3-헥사플루오로프로폭시)-5-니트로벤젠[1,4-Dichloro-2-(1,1,2,3,3,3-hexafluoropropoxy)-5-nitrobenzene; 130841-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3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9309090	기타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트리니트로아니졸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930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터 (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 펜타클로로아니솔(Pentachloroanisole, PCA;1825-21-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에테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4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094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094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68412-53-3,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페인트, 잉크, 가정용 세척제의 용도 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가죽 가공 용도(단, 하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α-트리데실-ω-히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의 이소옥틸 인산, 칼륨염[α-Tridec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isooctyl phosphate, potassium salt; 68186-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50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950000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히드록시-4,4'-디클로로디페닐에테르[2-Hydroxy-4,4'-dichlorodiphenyl ether; 3380-3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클로산[Triclosan; 3380-3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500000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트리니트로아니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삼차-부틸 하이드로과산화물[t-Butyl hydroperoxide; 75-9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α,α'-디메틸 벤질하이드로과산화물[α,α'-Dimethyl benzylhydroperoxide; 80-1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비스(1-메틸-1-페닐에틸)과산화물[Bis(1-methyl-1-phenylethyl) peroxide; 80-43-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과산화 2-부타논[2-Butanone peroxide; Ethyl methyl ketone peroxide; 1338-23-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6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096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096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원료의약품 이외의 트리니트로아니졸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화 프로필렌[Propyleneoxide;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Chloro-2,3-epoxypropane; 2-(Chloromethyl)oxirane; 106-89-8, 51594-55-9, 67843-7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디엘드린(Dieldrin;60-57-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10500000	엔드린(ISO)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0500000	엔드린(ISO)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엔드린(Endrin;72-20-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10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090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에폭시에틸)벤젠[(Epoxyethyl)benzene; 96-09-3]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메틸렌비스[(2,6-디메틸-4,1-페닐렌)옥시메틸렌]]비스옥시란[2,2'-[Methylenebis[(2,6-dimethyl-4,1-phenylene)oxymethylene]]bisoxirane; 93705-66-9]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1,3-페닐렌비스(옥시메틸렌)]비스[옥시란][2,2'-[1,3-Phenylenebis(oxymethylene)]bis[oxirane]; 101-9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글리시돌[Glycidol; 556-52-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페녹시메틸)옥시란[2-(Phenoxymethyl)oxirane; 122-60-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부톡시메틸)옥시란[(Butoxymethyl)oxirane; 2426-0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0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포르말린[Formalin; 50-00-0](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를 포함한다) 및 포름알데히드로서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Ethanal; 75-07-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2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21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2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도데세날[2-Dodecenal; 4826-6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롤레인[Acrolein; 107-02-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로톤알데히드[Crotonaldehyde; 4170-3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E)-2-도데세날[(E)-2-Dodecenal; 20407-8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S,6E)-3,7,11-트리메틸-6,10-도데카디엔알[(3S,6E)-3,7,11-Trimethyl-6,10-dodecadienal; 194934-6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E)-2-데세날[(2E)-2-Decenal; 3913-8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데세날[2-Decenal; 3913-7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2-프로펜알[2-Methyl-2-propenal; 78-85-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트리데세날[2-Tridecenal; 7774-8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9-디메틸-4-데세날[5,9-Dimethyl-4-decenal; 689-6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2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22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22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메틸-4-(4-메틸펜틸)-3-사이클로헥센-1-카복스알데하이드[1-Methyl-4-(4-methylpentyl)-3-cyclohexene-1-carboxaldehyde; 66327-54-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α,2,2,6-테트라메틸사이클로헥센부탄알[α,2,2,6- Tetramethylcyclohexenebutanal; 65405-8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옥타하이드로-4,7-메타노-5H-인덴-5-일리덴)부탄알[4-(Octahydro-4,7-methano-5H-inden-5-ylidene)butanal; 30168-2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α,α,6,6-테트라메틸비사이클로[3.1.1]헵-2-텐-2-프로판알[α,α,6,6-Tetramethylbicyclo[3.1.1]hept-2-ene-2-propanal; 33885-5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6,6-디메틸바이사이클로[3.1.1]헵-2-텐-2-프로판알[6,6-Dimethylbicyclo[3.1.1]hept-2-ene-2-propanal; 33885-5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R)-4-(1-메틸에틸)-1-사이클로헥센-1-프로판알[(4R)-4-(1-Methylethyl)-1-cyclohexene-1-propanal; 1378867-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6E)-6-(2,4,4-트리메틸사이클로펜틸리덴)헥사날[(6E)-6-(2,4,4-Trimethylcyclopentylidene)hexanal; 1429808-4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O-프탈알데하이드[O-Phthalaldehyde; 643-7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E)-5-사이클로헥실-2,4-디메틸-4-펜테날[(4E)-5-Cyclohexyl-2,4-dimethyl-4-pentenal; 1449104-3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피렐카복스알데하이드[1-	화학물질관리법
	291229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24200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24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250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250000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타알데히드[Metaldehyde; 108-6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4110000	아세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4110000	아세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 케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41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41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틸 비닐 케톤[Methyl vinyl ketone; 78-94-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옥소비스(펜탄-2,4-디오나토-O,O')바나듐[Oxobis(pentane-2,4-dionato-O,O')vanadium; 3153-2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수 아세트산과 1,5,10-트리메틸-1,5,9-사이클로도데카트리엔의 반응생성물[Acetic acid, anhydride, reaction products with 1,5,10-trimethyl-1,5,9-cyclododecatriene; 144020-2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이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4231000	이오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4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42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8-시클로헥사데센-1-온[8-Cyclohexadecen-1-one; 3100-3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2-메틸프로필)사이클로헥산프로판알[4-(2-Methylpropyl)cyclohexanepropanal; 1254940-8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메틸-5-사이클로테트라데센-1-온[3-Methyl-5-cyclotetradecen-1-one; 259854-70-1, 259854-7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4-메틸-3-시클로헥센-1-일)프로필]시클로펜탄온[2-[2-(4-Methyl-3-cyclohexen-1-yl)propyl] cyclopentanone; 95962-1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Z)-4-사이클로펜타데센-1-온[(4Z)-4-Cyclopentadecen-1-one; 14595-5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S,4R,5R)-4-메틸-1-(1-메틸에틸)바이사이클로[3.1.0]헥산-3-온[(1S,4R,5R)-4-Methyl-1-(1-methylethyl)bicyclo[3.1.0]hexan-3-one; 546-8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5-에틸-5-메틸-1-사이클로헥센-1-일)-4-펜텐-1-온[1-(5-Ethyl-5-methyl-1-cyclohexen-1-yl)-4-penten-1-one; 1393645-3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하이드로-5,5-디메틸-2-프로필-2H-2,4a-메타노나프탈렌-1(5H)-온[Hexahydro-5,5-dimethyl-2-propyl-2H-2,4a-methanonaphthalen-1(5H)-one; 1392277-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1-	화학물질관리법
	2914310000	페닐 아세톤(페닐프로판-2-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143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43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핀돈[Pindone; 83-2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파시논[Diphacinone; 82-6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아세토페논[2-Methylacetophenone; 577-1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43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44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46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4-벤조퀴논[1,4-benzoquinone; 106-5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1,4-나프탈렌디온[2-Methyl-1,4-naphthalenedione; 58-27-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4710000	클로르데콘(ISO)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클로르데콘(Chlordecone;143-50-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147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47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147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47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147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브로모-2-프로판온[Bromo-2-propanone; 598-31-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파시논[Chlorophacinone; 3691-35-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닐 이오도늄과 7,7-디메틸-2-옥소비사이클로[2.2.1]헵탄-1-메탄술폰산의 염류(1:1))[Diphenyl iodonium salt with 7,7-dimethyl-2-oxobicyclo[2.2.1]heptane-1-methanesulfonic acid(1:1); 214534-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클로로-3-부텐-2-온[1,4-Dichloro-3-buten-2-one; 69711-44-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47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110000	포름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110000	포름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110000	포름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포름산[Formic acid; 64-1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12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니켈 디포메이트[Nickel diformate; 3349-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폼산 탈륨 염(1:1)[Formic acid, thallium(1+) salt (1:1); 992-98-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1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512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130000	포름산의 에스테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210000	초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210000	초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210000	초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Acetic acid; Glacial acetic acid; 64-1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240000	무수초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240000	무수초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15240000	무수초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수아세트산[Acetic anhydride; 108-2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291000	초산칼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291000	초산칼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5291000	초산칼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5292000	초산나트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292000	초산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293000	초산코발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코발트[Cobalt acetate; 71-48-7, 5931-89-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2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5310000	초산에틸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310000	초산에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310000	초산에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533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디노셉[Dinoseb acetate; 2813-9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395000	초산2-에톡시에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Ethylene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2-Ethoxyethyl acetate; 111-15-9]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3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3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3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디노텁 아세트산[Medinoterb acetate; 2487-01-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3,3-디아세톡시-1-프로펜[3,3-Diacetoxy-1-propene; 869-29-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로아세트산[Chloroacetic acid; 79-11-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4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클로로아세트산[Dichloroacetic acid; 79-43-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틸 클로로아세트산[Methyl chloroacetate; 96-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아세트산과 사이클로헥실아민의 화합물(1:1)[Chloroacetic acid compound with cyclohexylamine (1:1); 93982-9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노클로로아세트산 나트륨[Sodium monochloroacetate; 3926-6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4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화학물질관리법] 5.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5702010	스테아르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702010	스테아르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5702010	스테아르산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5702010	스테아르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57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702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570209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57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피발로일[2,2-Dimethylpropanoyl chloride; Pivaloyl chloride; 3282-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네오데카노일[Neodecanoyl chloride; 40292-82-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909020	2-에틸헥실클로로포르메이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로포름산 2-에틸헥실[2-Ethylhexyl chloroformate; 24468-1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5909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590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오로아세트산[Fluoroacetic acid; 144-49-0]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포름산 n-프로필[n-Propyl chloroformate; 109-61-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트리플루오로아세틸[Trifluoroacetyl chloride; 354-32-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퍼옥시네오데칸산 3-히드록시-1,1-디메틸부틸[3-Hydroxy-1,1-dimethylbutyl peroxyneodecanoate; 95718-7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5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590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터(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 펜타클로로페닐 라우레이트(Pentachlorophenyl laurate, PCPL;3772-94-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16111000	아크릴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크릴산[2-Propenoic acid; Acrylic acid; 79-10-7]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1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크릴산 에틸[Ethyl acrylate; 140-88-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크릴산 메틸[Methyl acrylate;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12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글리시딜 아크릴산[Glycidyl acrylate; 106-90-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릴산 이소옥틸[Isooctyl acrylate; 2-Propenoic acid isooctyl ester; 29590-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펜산 2-[2-[(2-에틸헥실)옥시]에톡시]에틸[2-[2-[(2-Ethylhexyl)oxy]ethoxy]ethyl 2-propenoate; 117646-8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펜산 (3-페녹시페닐)메틸[(3-Phenoxyphenyl)methyl 2-propenoate; 409325-0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펜산 4-벤조일페닐[4-Benzoylphenyl 2-propenoate; 22535-4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하이드록시프로필 아크릴산[Hydroxypropyl acrylate; Acrylic acid, monoester with propane-1,2-diol; 25584-83-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릴산 1,6-헥산디일[2-Propenoic acid 1,6-hexanediyl ester; 1,6-Hexanediol diacrylate; 13048-3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판산 2-에틸-2-[[(1-옥소-2-프로페닐)옥시]메틸]-1,3-프로판디일[2-Propenoic acid 2-ethyl-2-[[(1-oxo-2-propenyl)oxy]methyl]-1,3-propanediyl ester; Trimethylolpropane triacrylate; 15625-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타크릴산[Methacrylic acid; 79-4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13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히드록시(2-메틸-2-프로펜산-κO)아연[Hydroxy(2-methyl-2-propenoato-κO)zinc; 63451-47-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14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14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타아크릴산 3-클로로-2-히드록시프로필[3-Chloro-2-hydroxypropyl methacrylate; 13159-5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2-프로펜산 2,2,2-트리플루오로에틸[2,2,2-Trifluoroethyl 2-methyl-2-propenoate; 352-8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핀-1-일 2-메틸-2-프로펜산[2-Propyn-1-yl 2-methyl-2-propenoate; 13861-2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크릴산 알릴[2-Methyl-2-propenoic acid 2-propenyl ester; Allyl methacrylate; 96-0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크릴산[Methacrylic acid; 79-4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160000	비나파크릴(ISO)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6160000	비나파크릴(ISO)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비나파크릴[Binapacryl; 485-31-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190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61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노캅[Dinocap; 39300-45-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2-메틸-2-프로페노일[2-Methyl-2-propenoylchloride;920-46-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부텐산 (2E)-3,7-디메틸-2,6-옥타디엔-1-일[(2E)-3,7-Dimethyl-2,6-octadien-1-yl 2-butenoate; 56172-4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Z)-9-옥타데센산과 디에틸렌트리아민(고리화), 디-에틸 황산의 반응생성물(4차)[(Z)-9-Octadeceno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diethylenetriamine, cyclized, di-Et sulfate-quaternized; 68511-92-2]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2-부텐산 (E,E)-3,7-디메틸-2,6-옥타디엔-1-일[(E,E)-3,7-Dimethyl-2,6-octadien-1-yl 2-methyl-2-butenoate; 7785-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2-부텐산 (2E)-3,7-디메틸-6-옥텐-1-일[(2E)-3,7-Dimethyl-6-octen-1-yl 2-methyl-2-butenoate; 24717-8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619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6203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162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2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테플루트린[Tefluthrin; 79538-3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퍼메트린[Permethrin; 52645-5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5,6-테트라플루오로벤질 트랜스-2-(2,2-디클로로비닐)-3,3-디메틸사이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2,3,5,6-Tetrafluorobenzyl trans-2-(2,2-	화학물질관리법
	2916311000	벤조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6311000	벤조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311000	벤조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6311000	벤조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6311000	벤조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벤조산[Benzoic acid; 65-85-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313000	벤조산벤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313000	벤조산벤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6313000	벤조산벤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631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31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631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631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319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63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과산화 벤조일[Benzoyl peroxide; 94-3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322000	염화벤조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벤조일[Benzoyl chloride; 98-8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391000	계피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3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63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3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63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639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63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6399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63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α,α-디클로로벤젠아세트산 에틸[Ethyl α,α-dichlorobenzeneacetate; 5317-6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a,4,5,6,7,7a-헥사히드로-4,7-메타노-1H-인덴-5-일 아이소부티레이트와 3a,4,5,6,7,7a-헥사히드로-4,7-메타노-1H-인덴-6-일 아이소부티레이트의 혼합물[Mixture of 3a,4,5,6,7,7a-hexahydro-4,7-methano-1H-inden-5-yl isobutyrate(67634-20-2) and 3a,4,5,6,7,7a-hexahydro-4,7-methano-1H-inden-6-yl isobutyrate(68039-39-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포름산 벤질[Benzyl chloroformate; 501-5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63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7111000	옥살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7111000	옥살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7111000	옥살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7112000	옥살산의 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리튬 디플루오로(옥살라토)보레이트(1-) [Lithium difluoro(oxalato)borate(1-); 409071-16-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리튬 테트라플루오로(옥살라토)포스페이트 [Lithium tetrafluoro(oxalato) phosphate; 521065-3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리튬 비스[에탄디오에이토 (2-)-κO1 κO2]디플루	화학물질관리법
	2917121000	아디프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7140000	무수말레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수 말레산[2,5-Furandione; Maleic anhydride; 108-31-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7192000	숙신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71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7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7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3-디메틸시클로헥실)에틸 에틸 말론산[1-(3,3-Dimethylcyclohexyl)ethyl ethyl malonate; 478695-7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2-에틸헥실) 말레이트[Bis(2-ethylhexyl) maleate; 142-1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7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117-8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isobutyl phthalate; 84-69-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734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부틸벤질 프탈레이트[Butylbenzyl phthalate; 85-68-7] 및 이를 0.3%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아릴 프탈레이트[Diallyl phthalate; 131-1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734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73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염화 이소프탈로일[1,3-Benzenedicarbonyl dichloride; Isophthaloyl chloride; 99-6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염화 테레프탈로일[1,4-Benzenedicarbonyl dichloride; Terephthaloyl dichlorid; 100-2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7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111000	락트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8111000	락트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12000	락트산의 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8112000	락트산의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12000	락트산의 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20000	타르타르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40000	시트르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8140000	시트르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40000	시트르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8140000	시트르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151000	시트르산의염	생활방사선법 제2조에 따른 원료물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918151000	시트르산의 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51000	시트르산의 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트르산 코발트(2가)(2:3)[Citric acid cobalt(2+)(2:3); 866-81-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트르산 수소 니켈(2가)[Nickel(2+) hydrogen citrate; 18721-51-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8151000	시트르산의 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8161000	글루콘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61000	글루콘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8161000	글루콘산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8161000	글루콘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70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18170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8191010	말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91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크릴산 하이드록시에틸[Hydroxyethyl acrylate; 818-61-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8192000	그 밖의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92000	그 밖의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21119-52-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8193000	그 밖의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에스테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1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8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8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210000	살리실산과 그 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8220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8231000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232000	그 밖의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8232000	그 밖의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299010	갈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299010	갈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8299010	갈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29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182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299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82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2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펜틸 2-히드록시벤조산[2-Methylpentyl 2-hydroxybenzoate; 98969-1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830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30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3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3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89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99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8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189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디[2,4-D; 94-7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3,3-테트라플루오로-2-[1,1,2,3,3,3-헥사플루오로-2-(헵타플루오로프로폭시)프로폭시]프로판산암모늄염[2,3,3,3-Tetrafluoro-2-[1,1,2,3,3,3-hexafluoro-2-(heptafluoropropoxy)propoxy]propanoicacid,amm	화학물질관리법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9901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9901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19901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9901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헥사에틸 테트라포스페이트[Hexaethyl tetraphos-phate; 757-5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인산[Triphenylphosphate; 115-86-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보밀[Bomyl; 122-1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로톡시포스[Crotoxyphos; 7700-17-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로인산 테트라에틸[Tetraethyl pyrophosphate; 107-4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노닐 인산[Isononyl phosphate; 84988-6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9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리튬 디플루오로포스페이트[Lithium difluorophosphate; 24389-25-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구로포스[Cargurophos; 106870-7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산 이부틸, 아연 (2:1)[Dibutyl phosphorate, zinc salt (2:1); 25081-7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날레드[Naled; 300-76-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9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199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19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62-73-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빈포스[Dimethylvinphos; 2274-67-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미빈포스[Themivinphos; 35996-6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19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01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01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011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011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0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01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01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0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브로모포스-에틸[Bromophos-ethyl; 4824-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122-1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클로펜티온[Dichlofenthion; 97-1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0210000	디메틸 포스파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0220000	디에틸 포스파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023000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024000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02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술포텝[Sulfotep; 3689-2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파르지트[Propargite; 2312-35-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 [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 [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포로디플루오르산 에틸렌[Ethylene phosphorodifluoridite; 3965-00-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인산 트리페닐[Triphenyl phosphite; 101-0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플루오로-4-메틸-1,3,2-디옥사포스포란[2-Fluoro-4-methyl-1,3,2-dioxaphospholane; 16415-0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030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2030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0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203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030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엔도설판(Endosulfan;115-29-7), 엔도설판 설페이트(Endosulfan sulfate;1031-07-8), 알파-엔도설판(α-Endosulfan;959-98-8), 베타-엔도설판(β-Endosulfan;33213-65-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0904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20909110	황산디메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09091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산 디에틸[Diethyl sulfate; 64-67-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09091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엔도설판(Endosulfan;115-29-7), 엔도설판 설페이트(Endosulfan sulfate;1031-07-8), 알파-엔도설판(α-Endosulfan;959-98-8), 베타-엔도설판(β-Endosulfan;33213-65-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0909200	탄산에스테르의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노브톤[Dinobuton; 973-2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틸 2-프로핀일 카보네이트[Methyl 2-propynyl carbonate; 61764-7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09099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술포텝[Sulfotep; 3689-2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에틸에스테르 클로로인산[Phosphorochloridic acid diethyl ester; 814-4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파르지트[Propargite; 2312-35-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플루오르페이트[Isofluorphate; 55-91-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포로디플루오르산 에틸렌[Ethylene phosphorodifluoridite; 3965-00-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9-디옥사이드[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9-dioxide; 3670-9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09099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엔도설판(Endosulfan;115-29-7), 엔도설판 설페이트(Endosulfan sulfate;1031-07-8), 알파-엔도설판(α-Endosulfan;959-98-8), 베타-엔도설판(β-Endosulfan;33213-65-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0909900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니트로 글리세린● 니트로 글리콜 ● 기타 질산에스테르로서 폭약의 성질을 가진 것과 질산 에스테르를 주로한 폭약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111010	메틸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틸아민[Methylamine; 74-89-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112010	디메틸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메틸 아민[Dimethylamine; 124-40-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테트릴 ② 헥사니트로디 페닐아민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120000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113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113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113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2-클로로에틸디에틸암모늄[2-Chloroethyldiethylammonium chloride; 869-2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14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114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N-디메틸-1-도데칸아민[N,N-Dimethyl-1-dodecanamine; N,N-Dimethyllaurylamine; 112-18-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19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11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1199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1199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2119909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211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n-부틸아민[Di-n-butylamine; 111-9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클로르에타민[Mechlorethamine; 51-75-2]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2-에틸헥실)아민[Bis(2-ethylhexyl)amine; 106-20-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부틸아민[Isobutylamine; 78-8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메틸프로필아민[1-Methylpropylamine; 13952-84-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불화 트리에틸암모늄[Triethylammonium fluoride; 73602-61-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파논과 5-아미노-1,3,3-트리메틸시클로헥산메탄아민의 반응생성물[2-Propanone reaction products with 5-amino-1,3,3-trimethylcyclohexanemethanamine, reduced; 156105-38-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디메틸술파모일[Dimethylsulfamoyl chloride; 133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프로펜일-2-프로펜-1-아민[N-2-Propenyl-2-propen-1-amine; 124-0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옥틸)아민[Dimethyl(octyl)amine; 7378-9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킬(C=12~18)디메틸아민[Amines, alkyl(C=12~18)dimethyl; 68391-0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텅스텐산 비스(알킬(C=11~14) 가지형 및 선형)아민[Amines, bis(alkyl(C=11~14)-branched and linear), tungstates; 1159919-4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1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19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119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1,2-Ethanediamine; 107-15-3]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12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3-프로판디아민[N1-(3-Aminopropyl)-N1-dodecyl-1,3-propanediamine; 2372-8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3-아미노프로필)-1,2-에탄디아민[N,N'-Bis(3-aminopropyl)-1,2-ethanediamine; 10563-26-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아미노에틸)-1,3-프로판디아민[N-(2-Aminoethyl)-1,3-propanediamine; 13531-52-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디메틸아미노)프로필]-N,N-디메틸프로판-1,3-디아민[N'-[3-(Dimethylamino)propyl]-N,N-dimethylpropane-1,3-diamine; 6711-4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알킬(C=8~22) 폴리트리메틸렌폴리아민, 카르복시메틸 유도체., 나트륨염[N-Alkyl(C=8~22) polytrimethylenepolyamines, carboxymethyl derivs., sodium salt; 97659-5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 3,3'-이미노디(프로필아민)[3,3'-Imino di(propylamine); 56-1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올레산과 (Z)-N-9-옥타데센일-1,3-프로판디아민의 화합물[Oleic acid compound with (Z)-N-octadec-9-enylpropane-1,3-diamine; 34140-91-5, 40027-38-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폴리에틸렌폴리아민, N-[3-(알킬(C=12~14)옥시)-2-히드록시프로필] 유도체[Polyethylenepolyamines, N-[3-(alkyl(C=12~14)oxy)-2-hydroxypropyl] derivs.; 1588442-20-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3-아미노프로필)아미노]프로필]-N,N-디알킬(C=16~18)트리메틸렌디아민[N'-[3-[(3-Aminopropyl)amino]propyl]-N,N-dialkyl(C=16~	화학물질관리법
	2921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아세트산과 사이클로헥실아민의 화합물(1:1)[Chloroacetic acid compound with cyclohexylamine (1:1); 93982-9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13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4'-메틸렌비스[N-(1-메틸프로필)시클로헥산아민[4,4'-Methylenebis[N-(1-methylpropyl)cyclohexanamine];154279-60-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 195384-27-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메틸-2,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N-Methyl-2,4-cyclopentadiene-1-ethanamine; 857023-53-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사이클로헥실아민[Dicyclohexylamine; 101-83-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 195384-27-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사이클로헥산디메탄아민[1,3-Cyclohexanedimethanamine; 2579-20-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T-4)-트리플루오로(N-메틸시클로헥산아민)보론[(T-4)-Trifluoro(N-methylcyclohexanamine)boron; 658-1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1411000	아닐린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닐린[Aniline; 62-53-3]과 그 염류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411000	아닐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1412000	아닐린의 염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암페타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1412000	아닐린의 염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암페타민	약사법
	2921412000	아닐린의 염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1412000	아닐린의 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닐린[Aniline; 62-53-3]과 그 염류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412000	아닐린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1423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2142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암페타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142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암페타민	약사법
	2921429090	기타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142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알킬 아닐린[Alkyl aniline]과 그 염류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디니트로아닐린[2,4-Dinitroaniline; 97-02-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m-아미노클로로벤젠[m-Aminochlorobenzene; 108-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벤젠아민[2-Chlorobenzenamine; 95-5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닐린과 1,4-비스(클로로메틸)벤젠의 공중합체와 2,5-퓨란디온의 반응생성물[2,5-Furandione reaction products with aniline-1,4-bis(chloromethyl)benzene copolymer;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42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1429090	기타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테트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434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21439010	톨루이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1439010	톨루이딘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알킬 톨루이딘[N-Alkyl toluidine]과 그 염류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N,N-디메틸-p-톨루이딘[N,N-Dimethyl-p-toluidine; 99-97-8]의 경우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톨루이딘[Toluidine; 26915-12-8]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m-톨루이딘[m-Toluidine; 108-44-1]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p-톨루이딘[p-Toluidine; 106-49-0]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43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벤플루랄린[Benfluralin;1861-4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알킬 톨루이딘[N-Alkyl toluidine]과 그 염류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N,N-디메틸-p-톨루이딘[N,N-Dimethyl-p-toluidine; 99-97-8]의 경우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톨루이딘[Toluidine; 26915-12-8]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m-톨루이딘[m-Toluidine; 108-44-1]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p-톨루이딘[p-Toluidine; 106-49-0]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브로모-α,α,α-트리플루오로-m-톨루이딘[4-Bromo-α,α,α-trifluoro-m-toluidine; 393-3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441000	디페닐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페닐벤젠아민[N-Phenylbenzenamine; Diphenylamine; 122-3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449000	기타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헥사니트로디페닐아민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1%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45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460000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펜터민(INN) 및 이들의 염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암페타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1460000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펜터민(INN) 및 이들의 염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암페타민	약사법
ㅎ	2921460000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펜터민(INN) 및 이들의 염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1460000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펜터민(INN) 및 이들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460000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펜터민(INN) 및 이들의 염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테트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4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암페타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14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암페타민	약사법
	29214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14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4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테트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4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N-페닐-1-나프탈렌아민[N-Phenyl-1-naphthalenamine; 90-3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암페타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1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암페타민	약사법
	2921499000	기타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14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브롬에탈린[Bromethalin; 63333-35-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비페닐 염산염[4-Aminobiphenyl hydrochloride; 2113-61-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R,4aS,10aR)-1,2,3,4,4a,9,10,10a-옥타히드로-1,4a-디메틸-7-(1-메틸에틸)-1-페난트렌메탄아민, 브롬산염 (1:1)[(1R,4aS,10aR)-1,2,3,4,4a,9,10,10a-Octahydro-1,4a-dimethyl-7-(1-methylethyl)-1-phenanthrenemethanamine, hydrobromide (1:1); 40043-7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페닐-1-나프탈렌아민[N-Phenyl-1-naphthalenamine; 90-3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산 메틸과 가지형 도데실벤젠아민의 화합물[Methyl phosphate compds. with branched dodecylbenzenamine; 1412893-77-6] 및 이를	화학물질관리법
	29214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499000	기타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1-메틸에틸)-N'-페닐-1,4-벤젠디아민[N-(1-Methylethyl)-N'-phenyl-1,4-benzenediamine; 101-7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793-2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페닐렌디아민[Phenylenediamine; 25265-76-3]과 그 염류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p-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106-50-3] 및 그 염산염의 경우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페닐렌디아민[Phenylenediamine; 25265-76-3]과 그 염류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p-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106-50-3] 및 그 염산염의 경우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페닐렌디아민[Phenylenediamine; 25265-76-3]과 그 염류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p-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106-50-3] 및 그 염산염의 경우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톨루엔디아민[Toluenediamine]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2,5-톨루엔디아민(95-70-5), 2,6-톨루엔디아민(823-40-5), 3,5-톨루엔디아민(108-71-4) 및 그 염류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92151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톨루엔디아민[Toluenediamine]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2,5-톨루엔디아민(95-70-5), 2,6-톨루엔디아민(823-40-5), 3,5-톨루엔디아민(108-71-4) 및 그 염류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 p-아미노디페닐아민[p-Aminodi-phenylamine; 101-5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5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1519090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테트릴 ② 헥사니트로디 페닐아민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15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벤젠디메탄아민, N-(2-페닐에틸) 유도체[1,3-Benzenedimethanamine, N-(2-phenylethyl) derivs.; 404362-22-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3'-디클로로벤지딘[3,3'-Dichlorobenzidine; 91-94-1]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디메틸벤지딘[2,2'-Dimethylbenzidine; 84-6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벤지딘[2,2'-Bis(trifluoromethyl)benzidine; 341-5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메틸렌디아닐린[4,4'-Methylenedianiline; 101-77-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4-아미노페닐)-N,N'-디메틸에틸렌디아민[N,N'-Bis(4-aminophenyl)-N,N'-dimethylethylenediamine; 29103-75-1] 및 이를	화학물질관리법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2150000	트리에탄올아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2171000	메틸디에탄올아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2172000	에틸디에탄올아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3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218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2193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아미노에탄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21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2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3-에톡시프로필아민[3-Ethoxypropylamine; 6291-85-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9-옥타데세닐이미노)비스에탄올[2,2'-(9-Octadecenylimino)bisethanol; 25307-17-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α-[2-[비스(2-히드록시에틸)아미노]프로필]-ω-히드록시폴리[옥시(메틸-1,2-에탄디일)]과α-히드로-ω-히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의에테르(1:2),모노-C12-16-알킬에테르[α-[2-[Bis(2-hydroxyethyl)amino]propyl]-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etherwith α-hydro-ω-hydroxypoly(oxy-1,2-ethanediyl)(1:2),mono-C12-16-alkylethers;176022-82-5] 및이를10% 이상함유한 혼합물 ● 3-부톡시프로필아민[3-Butoxypropylamine; 16499-88-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이소데실옥시)프로필]-1,3-프로판디아민[N-[3-(Isodecyloxy)propyl]-1,3-propanediamine; 72162-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이미노비스에탄올 N-탈로우 알킬 유도체, N-산화[2,2'-Iminobisethanol, N-tallow alkyl derivs., N-oxides; 61791-46-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p-톨릴이미노)디프로판-2-올[1,1'-(p-Tolylimino)dipropan-2-ol; 38668-4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 아미노에틸 아크릴산[Dimethylaminoethyl acrylate; 2-Propenoic acid 2-(dimethylamino)ethyl ester; 2439-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2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221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아미노-5-히드록시-1,7-나프탈렌디술폰산[2-Amino-5-hydroxy-1,7-naphthalenedisulphonic acid; 6535-70-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22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3,3'-디메톡시-[1,1-비페닐]- 4,4'-디아민[3,3'-Dimethoxy -[1,1'-biphenyl]-4,4'-diamine; 119-90-4] 및 그 염산염과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2,2,2-트리플루오로-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리덴]비스(4,1-페닐렌옥시)]비스벤젠아민 [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bis(4,1-phenyleneoxy)]bisbenzenamine; 69563-8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옥시비스벤젠아민[4,4'-Oxybisbenzenamine; 4,4'-Oxydianiline; 101-80-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이소프로필리덴비스(4,1-페닐렌옥시)]디아닐린[4,4'-[Isopropylidenebis(4,1-phenyleneoxy)]dianiline; 13080-8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메톡시-N-페닐-o-톨루이딘[4-Methoxy-N-phenyl-o-toluidine; 41317-1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노르메사돈(INN) 및 이들의 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노르메사돈(INN) 및 이들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23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23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2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23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퀴노클라민[Quinoclamine; 2797-51-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tert-알킬(C=12-14)아민, 1-아미노-9,10-디히드로-9,10-디옥소-4-(2,4,6-트리메틸아닐리노)-안트라센-2-술폰산[Amine,tert-alkyl(C=12-14),1-amino-9,10-dihydro-9,10-dioxo-4-(2,4,6-trimethylanilino)-anthracene-2-sulfonic acid;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2411000	리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2411000	리신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2411000	리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2421000	글루탐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421000	글루탐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2423000	기타 글루탐산의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430000	안트라닐산과 그 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430000	안트라닐산과 그 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2491000	글리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2491000	글리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491000	글리신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2491000	글리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2492000	알라닌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2492000	알라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492000	알라닌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2492000	알라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2493000	류우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2493000	류우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493000	류우신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2493000	류우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2494000	바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2494000	바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494000	바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2494000	바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2499000	기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① 엔-아세틸안스라닉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2499000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4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24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24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2505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22506000	세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5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25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3101000	콜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3101000	콜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3101000	콜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3102000	콜린의 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3102000	콜린의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3102000	콜린의 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3102000	콜린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3201000	레시틴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레시틴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3201000	레시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3201000	레시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33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233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테트라에틸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 (Tetraethy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56773-42-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34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234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다이데실다이메틸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 (Didecyldimethy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51099-16-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3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390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2,3-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 3033-77-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퍼플루오로옥탄산 테트라메틸암모늄 [Tetramethylammonium perfluorooctanenoate;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벤질디메틸옥타데실암모늄 [Benzyldimethyloctadecylammonium chloride; 122-1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세트리모늄[Cetrimonium hydroxide; 505-86-2]과 세트리모늄 염류[Cetrimonium, salts; 112-02-7, 57-09-0, 124-23-2 등]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메틸-N-2-프로페닐-2-프로펜-1-염화아미늄과 테트라페닐보레이트(1-)나트륨의 반응생성물 [N,N-Dimethyl-N-2-propenyl-2-propen-1-aminium reaction products with sodium tetraphenylborate(1-); 153965-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chloride; 75-57-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코코 알킬(2,3-디히드록시프로필)디메틸 암모늄 3-포스페이트, 나트륨 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coco alkyl(2,3-dihydroxypropyl)dimethyl, 3-phosphates(esters), chlorides, sodium salts; 173010-79-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탈산 수소 테트라메틸암모늄 [Tetramethylammonium hydrogen phthalate; 79723-0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민늄 카보네이트	화학물질관리법
	2923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390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4120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4120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N-디메틸포름아미드[N,N-Dimethylformamide;68-12-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41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41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41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41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41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메틸포름아미드[N-Methylformamide; 123-39-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4199090	기타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41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4199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41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그라우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셀로시딘[Cellocidin; 543-2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틸 카바메이트[Ethyl carbamate; 51-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디브로모프로판디아미드[2,2-Dibromopropanediamide; 73003-8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크로토포스[Dicrotophos; 141-6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2-히드록시프로필) 탈로우 아미드[Amides, tallow, N,N-bis(2-hydroxypropyl); 1454803-0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폭실화 N-(히드록시에틸) 코코 아미드[Amides, coco, N-(hydroxyethyl), propoxylated; 201363-5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E,4E)-N-(2-메틸프로필)-2,4-(데카디엔아마이드)[(2E,4E)-N-(2-Methylpropyl)-2,4-decadienamide; 18836-5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메틸포름아미드[N-Methylformamide; 123-39-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Z)-N-[3-(디메틸아미노)프로필]-9-옥타데센아미드[(9Z)-N-[3-(Dimethylamino)propyl]-9-octadecenamide; 109-2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카르복시메틸-N,N-디메틸-3-[[(9Z)-1-옥소-9-옥타데세닐]아미노]-프로판 아미늄 [N-(Carboxymethyl)-N,N-dimethyl-3-[[(9Z)-1-oxo-9-octadecenyl]amino]-1-propanaminium, inner salt; 25054-76-6] 및 이를 25% 이	화학물질관리법
	29241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42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42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421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42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421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노발루론[Novaluron : N-[[[3-Chloro-4-[1,1,2-trifluoro-2-(trifluoromethoxy)ethoxy]phenyl]amino]carbonyl]-2,6-difluorobenzamide; 116714-4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4-디클로로페닐)-N,N-디메틸 우레아[N'-(3,4-Dichlorophenyl)-N,N-dimethyl urea; 330-5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425	알라클로르(ISO)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2425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2425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2425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4291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24291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242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4291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오로아세토-p-브로모아닐린[Fluoroaceto-p-bromoaniline; 351-05-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4299020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이오헥솔, 이오버솔, 이오딕산올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24299020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이오헥솔, 이오버솔, 이오딕산올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24299020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이오헥솔, 이오버솔, 이오딕산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24299020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이오헥솔, 이오버솔, 이오딕산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4299092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24299092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4299092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4299092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24299092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노발루론[Novaluron : N-[[[3-Chloro-4-[1,1,2-trifluoro-2-(trifluoromethoxy)ethoxy]phenyl]amino]carbonyl]-2,6-difluorobenzamide; 116714-4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4299099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24299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4299099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엠엔에프에이[MNFA; 5903-1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탄[Dimetan; 122-1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멕사카베이트[Mexacarbate; 315-1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브펜칼[Bufencarb; 8065-3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미노칼[Aminocarb; 2032-5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릭시칼[Allyxycarb; 6392-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바놀에이트[Carbanolate; 671-0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바릴[Carbaryl; 63-2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에토칼[Cloethocarb; 51487-6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메칼[Promecarb; 2631-37-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폭서[Propoxur; 114-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디메틸에틸 N-[(2,5-디아미노페닐)메틸]카바메이트[1,1-Dimethylethyl N-[(2,5-diaminophenyl)methyl]carbamate; 1225193-85-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아미노-5-클로로벤즈아미드[2-Amino-5-chlorobenzamide; 5202-8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노발루론[Novaluron : N-[[[3-Chloro-4-[1,1,2-trifluoro-2-(trifluoromethoxy)ethoxy]phenyl]amino]carbonyl]-	화학물질관리법
	2924299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4299099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24299099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4299099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25112000	사카린의 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5112000	사카린의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5120000	구루테치미드(INN)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51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51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51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사이클로헥실-1H-피롤-2,5-디온[1-Cyclohexyl-1H-pyrrole-2,5-dione; 1631-25-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말레이미드[Maleimide; 541-5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에틸카본이미도일)-N1,N1-디메틸-1,3-프로판디아민의 염산염 (1:1)[N3-(Ethylcarbonimidoyl)-N1,N1-dimethyl-1,3-propanediamine, hydrochloride (1:1); 25952-53-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1-(Phenylmethyl)-1H-pyrrole-2,5-dione; 1631-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디히드로-1,3-디옥소-2H-이소인돌-2-헥산퍼옥소산[1,3-Dihydro-1,3-dioxo-2H-isoindole-2-hexaneperoxoic acid; 128275-31-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51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디페닐구아니딘[1,3-Diphenylguanidine; 102-0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52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52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52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52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2.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구아자틴[Guazatine; 13516-27-3, 108173-90-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구아자틴 염류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도딘[Dodine; 2439-1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도데실벤젠술폰산) 1,1'-이미노디(옥타메틸렌)디구아니디늄[1,1'-Iminodi(octamethylene)diguanidinium tris(dodecylbenzenesulfonate); 99257-4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메탄에이트[Formetanate; 22259-30-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페닐구아니딘 브롬산염[N,N'-Diphenylguanidine hydrobromide; 93982- 9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N'',N'''-테트라(N-(N-[2-((2-[(2-아미노에틸)아미노]에틸)아미노)에틸]카밤이미도일)카밤이미도일)트리에틸렌테트라아민[N,N',N'',N'''-Tetra(N-(N-[2-((2-[(2-aminoethyl)amino]ethyl)amino)ethyl]carbamimidoyl)carbamimidoyl)triethylenetetraami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N-(클로로메틸렌)-N-메틸메탄아미늄(1:1)[N-(Chloromethylene)-N-methylmethanaminium, chloride (1:1); 3724-43-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및	화학물질관리법
	29252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529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및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26400000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26903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26904000	아세토니트릴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Methyl cyanide: 75-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6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말로노니트릴[Malononitrile; 109-7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크릴로니트릴[Methacrylonitrile; 126-9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젠아세토니트릴[Benzeneacetonitrile; 140-29-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옥시닐[Ioxynil; 1689-8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디브로모프로판니트릴[2,3-Dibromopropane nitrile; 4554-16-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프로판니트릴[2-Methylpropanenitrile; 78-8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스펜발러레이트[Esfenvalerate; 66230-0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피오노니트릴[Propiononitrile; 107-12-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Trichloroacetonitrile; 545-0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싸이트린에이트[Flucythrinate; 70124-77-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클로로-3-히드록시부티로니트릴[4-Chloro-3-hydroxybutyronitrile; 105-33-9, 127913-44-4, 84367-3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톤 시아노히드린[Acetone cyanohydrin; 75-86-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부탄니트릴[Butanenitrile; 109-7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데카메트린[Decamethrin; 52918-63-5] 및 이를	화학물질관리법
	29270019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p-디메틸아미노벤젠디아조 술폰산[p-Dimethylaminobenzenediazo sulfonate; 150-70-9]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70019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7001900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디아조디니트로 페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270029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p-아미노아조벤젠[p-Aminoazobenzene; 60-0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히드록시-4-[(2-히드록시-1-나프틸)아조]-1-나프탈렌술포나토(3-)[1-[[2-히드록시-5-[(r-메톡시페닐)아조]페닐)아조]-2-나프토라토(2-)]크롬산(2-) 이나트륨[Disodium[3-hydroxy-4-[(2-hydroxy-1-naphthyl)azo]-1-naphthalenesulfonato(3-)[1-[[2-hydroxy-5-[(r-methoxyphenyl)azo]phenyl]azo]-2-naphtholato(2-)]chromate(2-); 30785-7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4-(히드록시-kO)-3-[[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2-나프탈렌술포나토(3-)]크롬산(3-), 이수소 나트륨[[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4-(hydroxy-kO)-3-[[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2-naphthalenesulfonato(3-)]chromate(3-), sodium dihydrogen; 874299-5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4-(히드록시-kO)-3-[[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8-[(2-히드록시-5-니트로페닐)아조]-7-(페닐아미노)-2-나프탈렌술포나토(3-)]크롬산(3-), 이수소 나트륨[[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4-(hydroxy-kO)-3-[[2-(hydroxy-kO)-5-nitrophenyl]azo-kN1]-8-[(2-hydroxy-5-nitrophenyl)azo]-7-(phenylamino)-2-naphthalenesulfonato(3-	화학물질관리법
	29270029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8002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28003000	메틸에틸 케토옥심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틸 에틸 케톡심[Methyl ethyl ketoxim; 96-29-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80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리누론[Linuron;330-55-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히드라지노에탄올[2-Hydrazinoethanol; 109-84-2]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60-3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Benzophenone hydrazone[벤조페논 히드라존; 5350-5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족시메이트[Benzoximate; 29104-3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탄술폰산 O-메틸하이드록실아민 (1:1) [O-Methylhydroxylamine, methanesulfonate (1:1); 951627-4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히드라진카르복시산 메틸[Methyl hydrazinecarboxylate; 6294-89-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80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페닐히드라진[Phenylhydrazine; 100-63-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26471-62-5, 584-84-9, 91-0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안산[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101-68-8; 26447-40-5; 5873-54-1; 2536-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91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Isophoronediisocyanate; 4098-71-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메틸렌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5124-3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프롭-1-엔-2-일)페닐]프롭-2-일 이소시안산 [3-[(Prop-1-en-2-yl)phenyl]prop-2-yl isocyanate; 2094-9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디이소시아나토-3,3'-디메틸-1,1'-비페닐[4,4'-Diisocyanato-3,3'-dimethyl-1,1'-biphenyl; 91-9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6-디이소프로필페닐 이소시아네이트[2,6-Diisopropylphenyl isocyanate; 28178-42-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시안산 tert-부틸[tert-Butyl isocyanate; 1609-86-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펜산 2-이소시아나토에틸[2-Isocyanatoethyl 2-propenoate; 13641-96-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이소시안산 펜타메틸렌[Pentamethylene diisocyanate; 1,5-Diisocyanatopentane; 4538-42-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비스(이소시아나토메틸)벤젠[1,3-Bis(isocyanatomethyl)benzene; 3634-8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이소시아나토벤젠[1,4-Diisocyanatobenzene; 104-49-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9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2990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2990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4'-에틸리덴디페닐 디시아네이트[4,4'-Ethylidenediphenyl dicyanate; 47073-9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아미다포스[Diamidafos; 1754-58-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폭스[Dimefox; 115-2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쉬라단[Schradan; 152-16-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페탐포스[Propetamphos; 31218-83-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아세팀[Phosacetim; 4104-1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엠에이비[DMAB; Dimethylamine borane; 74-9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펜포스[Isofenphos; 25311-7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닐포스포릴 아자이드[Diphenylphosphoryl azide; 26386-8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디에틸아미노)실란[Bis(diethylamino)silane; 27804-6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에틸-N,N'-디메틸실란디아민[N,N'-Diethyl-N,N'-dimethylsilanediamine; 1011514-4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메틸-1-도데칸아민, N-옥사이드[N,N-Dimethyl-1-dodecanamine, N-oxide; 1643-20-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100000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탄티올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0201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30201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타술포캅[Methasulfocarb; 66952-4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칼탑[Cartap; 15263-53-3]과 그 염류 및 그 중 칼탑으로서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2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30202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30202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에틸디티오카밤산 아연[Bis(diethylcarbamodithioato-S,S')zinc; Zinc diethyldithiocarbamate; 14324-5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부틸디티오카밤산 아연[Zinc dibutyldithiocarbamate; 136-2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202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지람[Ziram; 137-30-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칠디치오카밤산 나트륨[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 128-0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에틸디티오카밤산 아연[Bis(diethylcarbamodithioato-S,S')zinc; Zinc diethyldithiocarbamate; 14324-5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부틸디티오카밤산 아연[Zinc dibutyldithiocarbamate; 136-2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2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30302000	티우람디술파이드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0302000	티우람디술파이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티람[Thiram; 137-2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설피람[Bis(diethylthiocarbamoyl) disulfide; Disulfiram; 97-77-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400000	메티오닌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0400000	메티오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0400000	메티오닌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0400000	메티오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3060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0700000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I)]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0700000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I)]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0700000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I)]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080000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080000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080000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080000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다음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① S-carboxy Methyl Cystein	약사법
	293080000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캡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2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0902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5030	티오우레아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톤 티오쎄미카르바존[Acetone thiosemicarbazone; 1752-3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에틸-N'-[(1-디에틸아미노)프로필리덴]티오우레아[N-Ethyl-N'-[(1-diethylamino)propylidene]thiourea;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프로뮤리트[Chloropromurite; 5836-73-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508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비스티오세미[Bisthiosemi; 39603-48-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티오세미카르바지드[Thiosemicarbazide; 79-1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아펜티유론[Diafenthiuron; 80060-0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머스타드 가스[Mustard gas; 505-6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6010	티오알코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0906010	티오알코올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0906010	티오알코올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2'-티오디에탄티올[2,2'-Thiodiethanethiol; 3570-5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메르캅토메틸-3,6-디티아-1,8-옥탄디티올[4-Mercaptomethyl-3,6-dithia-1,8-octanedithiol; 131538-00-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벤젠디메탄티올[1,3-Benzenedimethanethiol; 41563-6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 3-메르캅토프로필 에테르[2,2-Bis(hydroxmethyl)-1,3-propanediol 3-mercaptopropyl ethers; 1966153-3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르캅토아세트산 메틸[Methyl 2-mercaptoacetate; 2365-4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5-펜탄디티올[1,5-Pentanedithiol; 928-9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르캅토아세트산[Mercaptoacetic acid; 68-1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히드록시에틸)암모늄 메르캅토아세트산[(2-Hydroxyethyl)ammonium mercaptoacetate; 126-9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르캅토에탄올[2-Mercaptoethanol; Mercaptoethanol; 60-2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tert-도데칸티올[tert-Dodecanethiol; 25103-5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옥탄티올[1-Octanethiol; n-Octyl mercaptan; 111-8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6010	티오알코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0906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아미노티오페놀[2-Aminothiophenol ; 137-07-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메르캅토페놀[4-Mercaptophenol; 637-89-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7020	티오아닐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090709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0909010	티오산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에틸렌 메르캅토아세테이트[Ethylene mercaptoacetate; 123-8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르캅토아세트산[Mercaptoacetic acid; 68-1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히드록시에틸)암모늄 메르캅토아세트산[(2-Hydroxyethyl)ammonium mercaptoacetate; 126-9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10	티오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0909030	시스테인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0909030	시스테인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0909030	시스테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0909050	글루타티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0909050	글루타티온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0909050	글루타티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090909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0909090	기타	4.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09090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캡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2-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토밀[Methomyl; 16752-7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티오시안산 메틸렌[Methylene bisthiocyanate; 6317-1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미도티오산[Amidothioate; 54381-26-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멧[Phosmet; 732-1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두사포스[Cadusafos; 95465-9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티오디칼[Thiodicarb; 59669-26-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티오시아노아세트산 에틸[Ethyl thiocyanoacetate; 5349-2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폴펫[Folpet; 133-0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메르캅토페닐 메탄 술폰산[4-Mercaptophenyl methane sulfonate; 62262-8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톤 티오쎄미카르바존[Acetone thiosemicarbazone; 1752-3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이소프로필 잔토젠폴리술파이드[Diisopropyl xanthogenpolysulphide; 137398-5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피클로로히드린, 2-메르캡토에탄올, 황화 나트륨과 티오우레아의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s of epichlorohydrin, 2-mercaptoethanol, sodium sulfide and thiourea; 553664-6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2-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p-톨릴 디요오도메틸 술폰[p-tolyl diiodomethyl sulfone; 20018-09-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나미포스[Fenamiphos; 22224-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말라티온[Malathion; 121-75-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카밤[Mecarbam; 2595-5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틸 트리티온[Methyl trithion; 953-1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술프로포스[Sulprofos; 35400-43-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피단[Aphidan; 5827-05-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디펜포스[Edifenphos; 17109-49-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13194-4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티온[Ethion; 563-1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티오에이트[Isothioate; 36614-38-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티오시안산 메틸[Methyl isothiocyanate; 556-6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보페노티온[Carbophenothion; 786-1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메포스[Chlormephos; 24934-9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터브포스[Terbufos; 13071-7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티오메톤[Thiometon; 640-15-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캅톤[Phencapton; 2275-14-1] 및 이를 1.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2-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펜토에이트[Phenthoate; 2597-03-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르모티온[Formothion; 2540-8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토에이트[Prothoate; 2275-18-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S,S,S-트리부틸 삼티오인산[S,S,S-Tributyl phosphorotrithioate; 78-4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브토카르복심[Butocarboxim; 34681-1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독시캄[Aldoxycarb; 1646-8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옥사밀[Oxamyl; 23135-22-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티오파녹스[Thiofanox; 39196-1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프로뮤리트[Chloropromurite; 5836-73-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라니캄[Alanycarb; 83130-0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 설파이드 보란[Dimethyl sulfide borane; 13292-8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톨릴플루아니드[Tolylfluanid; 731-2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 [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 [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히드록시페닐)메틸(1-나프탈레닐메틸)술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1-)[(4-Hydroxyphenyl)methyl(1-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2-4.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4,6-트리스(1-메틸에틸)벤젠술폰산 트리페닐술포늄[Triphenylsulfonium 2,4,6-tris(1-methylethyl)benzenesulfonate; 197447-1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메틸벤젠술폰산[4-(1,1-디메틸에톡시)페닐]디페닐술포늄[[4-(1,1-Dimethylethoxy)phenyl]diphenylsulfonium 4-methylbenzenesulfonate; 161453-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옥소-1-아다만틸옥시카르보닐디플루오로메탄술폰산 트리페닐술포늄[Triphenylsulfonium 4-oxo-1-adamantyloxycarbonyldifluoromethane sulfonate; 913269-9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7,7-디메틸-2-옥소비시클로[2.2.1]헵탄-1-메탄술폰산 트리페닐술포늄(1:1)[Triphenylsulfonium 7,7-dimethyl-2-oxobicyclo[2.2.1]heptane-1-methanesulfonate(1:1); 227199-9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톤[Demeton; 8065-48-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톤-S-메틸술폰[Demeton-S-methylsulfone; 17040-1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톤-메틸[Demeton-methyl; 8022-0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닐[(페닐티오)페닐]술포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1-)[Diphenyl[(phenylthio)phenyl]sulfonium hexafluorophosphate(1-); 68156-1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티오캄[Methiocarb; 2032-65-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바미도티온[Vamidothion; 2275-2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세레진[Cerezin; 2346-99-8] 및 이를 25% 이상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2-5.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미톤[Amiton; 78-53-5]과 그 옥살산염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티오펜캅[Ethiofencarb; 29973-1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오메토에이트[Omethoate; 1113-0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옥시디메톤-메틸[Oxydemeton-methyl; 301-1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옥시디프로포스[Oxydeprofos; 2674-9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프로벤포스[Iprobenfos; 26087-47-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티오포스[Chlorthiophos; 21923-2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4-메틸페닐)술포늄과 1-[(3-히드록시트리시클로[3.3.1.13,7]데실)메틸] 2,2-디플루오로-2-설포아세테이트(1:1)의 염[Tris(4-methylphenyl)sulfonium salt with 1-[(3-hydroxytricyclo[3.3.1.13,7]dec-1-yl)methyl] 2,2-difluoro-2-sulfoacetate(1:1); 1233844-8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술포늄, 2-(트리플루오로메틸)벤젠술포네이트(1:1)[Triphenylsulfonium, 2-(trifluoromethyl)benzenesulfonate(1:1); 425670-9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4-메톡시페닐)디페닐술포늄[(4-Methoxyphenyl)diphenylsulfonium trifluoromethanesulfonate; 116808-6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노티오캅[Fenothiocarb; 62850-3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술포티온[Fensulfothion; 115-9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2-6.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펜티온[Fenthion; 55-3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노포스[Fonofos; 944-22-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레이트[Phorate; 298-0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푸지티온[Fujithion; 3309-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파포스[Propaphos; 7292-1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페노포스[Profenofos;41198-0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술포늄과 1-[(3-히드록시트리시클로[3.3.1.13,7]데실)메틸] 2,2-디플루오로-2-설포아세테이트(1:1)의 염[Triphenylsulfonium salt with 1-[(3-hydroxytricyclo[3.3.1.13,7]dec-1-yl)methyl] 2,2-difluoro-2-sulfoacetate (1:1); 912290-0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아미노티옥소메틸)하이드라진카보디티오산 칼륨 (1:1)[2-(Aminothioxomethyl)hydrazinecarbodithioic acid, potassium salt (1:1); 73771-6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α,α-디플루오로트리사이클로[3.3.1.13,7]데칸-1-에탄술폰산 트리페닐술포늄 (1:1)[Triphenylsulfonium, α,α-difluorotricyclo[3.3.1.13,7]decane-1-ethanesulfonate (1:1); 1146597-81-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사이클로헥실페닐)디페닐술포늄과 1,1,2,2,3,3,4,4,4-노나플루오로-1-부탄술폰산 (1:1)의 염[(4-Cyclohexylphenyl)diphenylsulfonium salt with 1,1,2,2,3,3,4,4,4-nonafluoro-1-butanesulfonic acid (1:1); 425670-6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2-7.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페닐술포늄과 2,2,2-트리플루오로-1-(술포메틸)에틸트리사이클로[3.3.1.13,7]데칸-1-카르복실레이트 (1:1)의 염[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2,2-trifluoro-1-(sulfomethyl)ethyl tricyclo[3.3.1.13,7]decane-1-carboxylate (1:1); 1638216-0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술포늄과 2,3-비스(2,2,2-플루오로에틸) 5-술포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르복실레이트 (1:1)의 염[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3-bis(2,2,2-trifluoroethyl) 5-sulfobicyclo[2.2.1]heptane-2,3-dicarboxylate (1:1); 2064323-0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 트리페닐술포늄 (1:1)[Triphenylsulfonium, trifluoromethanesulfonate (1:1); 66003-7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2,2,3,3,4,4,4-노나플루오로-1-부탄술폰산 (4-메틸페닐)디페닐술포늄 (1:1)[(4-Methylphenyl)diphenylsulfonium, 1,1,2,2,3,3,4,4,4-nonafluoro-1-butanesulfonate (1:1); 284474-2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히드록시벤조산 트리페닐술포늄 (1:1)[Triphenylsulfonium, 2-hydroxybenzoate (1:1); 345580-9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메틸페닐)디페닐술포늄과 운데칸산 2-[(2,2-디플루오로-2-술포아세틸)옥시]에틸의 염 (1:1)[(4-Methylphenyl)diphenylsulfonium salt with 2-[(2,2-difluoro-2-sulfoacetyl)oxy]ethyl undecanoate (1:1); 1186651-99-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술포늄과 4,7,7-트리메틸-3-옥소-2-옥사바이사이클로[2.2.1]헵탄-1-카복실산 2-술포에틸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2-8.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페틸술포늄과 트리스[(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의 염 (1:1)[Triphenylsulfonium salt with tris[(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 (1:1); 393110-0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술포늄과 α,α,β,β-테트라플루오로헥사하이드로스피로[4,7-메타노-1,3-벤조디옥솔-2,2'-트리사이클로[3.3.1.13,7]데센]-5-에탄술폰산 (1:1)의 염[Triphenylsulfonium, α,α,β,β-tetrafluorohexahydrospiro[4,7-methano-1,3-benzodioxole-2,2'-tricyclo[3.3.1.13,7]decane]-5-ethanesulfonic acid (1:1); 1639212-96-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술포늄과 2,2-디플루오로-2-술포아세트산 1-(트리사이클로[3.3.1.13,7]데실메틸)의 염 (1:1)[Triphenylsulfonium salt with 1-(tricyclo[3.3.1.13,7]dec-1-ylmethyl) 2,2-difluoro-2-sulfoacetate (1:1); 1022939-8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닐(2,4,6-트리메틸페닐)술포늄과 2,4-디플루오로벤젠술폰산의 염 (1:1) [Diphenyl(2,4,6-trimethylphenyl)sulfonium salt with 2,4-difluorobenzenesulfonic acid (1:1); 431059-7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술포늄과 1,2,2,3,3,4,4,4-노나플루오로-1-부탄술폰산의 염(1:1) [Triphenyl sulfonium salt with 1,1,2,2,3,3,4,4,4-nonafluoro-1-butanesulfonic acid (1:1); 144317-4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1,1-디메틸에틸)페닐]디페닐술포늄과 1,1,2,2,3,3,4,4,4-노나플루오로-1-부탄술폰산의 염 (1:1)[[4-(1,1-Dimethylethyl)phenyl]diphenylsulfonium salt with 1,1,2,2,3,3,4,4,4-nonafluoro-1-butanesulfonic acid (1:1); 258872-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2-9.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페닐술포늄과 1-[3-에틸-3-옥세타닐)메틸]2,2-디플루오로-2-술포아세테이트의 염(1:1)[Triphenylsulfonium salt with 1-[(3-ethyl-3-oxetanyl)methyl] 2,2-difluoro-2-sulfoacetate (1:1); 1328506-2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플루오로트리스(1,1,2,2,2-펜타플루오로에틸)인산(1-), [4-[(4-아세틸페닐)티오]페닐]디페닐설포늄 (1:1)[[4-[(4-Acetylphenyl)thio]phenyl]diphenylsulfonium, trifluorotris(1,1,2,2,2-pentafluoroethyl)phosphate(1-) (1:1); 1424752-1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트리사이클로[3.3.1.13,7]데실술팜산, [4-(1,1-디메틸에틸)페닐]디페닐술포늄 (1:1)[[4-(1,1-Dimethylethyl)phenyl]diphenylsulfonium, N-tricyclo[3.3.1.13,7]dec-1-ylsulfamate (1:1); 2043356-1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톡시-4-(2-설페이토에틸설포닐)아닐린[2-Methoxy-4-(2-sulfatoethylsulfonyl)aniline; 26672-22-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4-메틸페닐)술포늄과 1-헥산술폰산의 염(1:1)[Tris(4-methylphenyl)sulfonium salt with 1-hexanesulfonate (1:1);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메틸 헥실 시아노카본이미도디티오에이트[Chloromethyl hexyl cyanocarbonimidodithioate; 852023-5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4-(2-히드록시에톡시)페닐]티오]페닐]-1,2-프로판디온 2-(O-아세틸옥심)[1-4-[[4-(2-Hydroxyethoxy)phenyl]thio]phenyl]-1,2-propanedione 2-(O-acetyloxime); 1239647-7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플루오로안티몬산 디페닐(4-페닐티오페닐)술포늄[Diphenyl(4-phenylthiophenyl)sulfonium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2-10.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메르캅토아세트산 메틸[Methyl 2-mercaptoacetate; 2365-4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에틸디티오카밤산 아연[Bis(diethylcarbamodithioato-S,S')zinc; Zinc diethyldithiocarbamate; 14324-5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부틸디티오카밤산 아연[Zinc dibutyldithiocarbamate; 136-2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클로로-2-(메틸술피닐)-1,1'-비페닐[4'-Chloro-2-(methylsulfinyl)-1,1'-biphenyl;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O-(2-메르캅토에틸)-O′-페녹시폴리에틸렌 글리콜[O-(2-Mercaptoethyl)-O′-phenoxypolyethylene glycol;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황화 이메틸[Dimethyldisulfide; 624-92-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술포늄과 2,2,2-트리플루오로-1-(술포메틸)-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 트리사이클로[3.3.1.13,7]데칸-1-카르복실레이트 (1:1)의 염[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2,2-trifluoro-1-(sulfomethyl)-1-(trifluoromethyl)ethyl tricyclo[3.3.1.13,7]decane-1-carboxylate (1:1); 1240248-58-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탄티오산과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 알릴 에테르의 반응생성물[Ethanethio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2,2-bis(hydroxymethyl)-1,3-propanediol allyl ether, hydrolyzed; 2982233-4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0909090	기타	3.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090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31100000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라알킬 납[Tetraalkyl lead]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1200000	트리부틸틴 화합물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 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단, 군함. 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의 방오도료용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용 다. 산림법에 따른 목재방부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	화학물질관리법
	2931410000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420000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430000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440000	메틸포스폰산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450000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460000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난-2,4,6-트리옥사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47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480000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운데칸 3,9-디옥사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4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510000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520000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530000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로3(트리플루오르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티오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540000	트리클로르폰(ISO)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52-6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15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5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이피엔[EPN; 2104-64-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브롬화에틸트리페닐포스포늄[Ethyltriphenylphosphoniumbromide;1530-3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클로로(페닐)포스핀[Dichloro(phenyl)phosphine; 644-97-3]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포스핀[Triphenylphosphine; 603-35-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트리부틸테트라데실포스포늄[Tributyltetradecylphosphonium chloride; 81741-2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요오드화 트리부틸메틸포스포늄[Tributylmethylphosphonium iodide; 1702-4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2,4,4-트리메틸펜틸)포스피노디티오산[Bis(2,4,4-trimethylpentyl)phosphinodithioic acid; 107667-02-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4-(1,1-디메틸에틸)페닐]트리페닐포스포늄[[4-(1,1-Dimethylethyl)phenyl]triphenylphosphonium chloride; 236408-4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부틸트리페닐포스포늄[Butyltriphenylphosphonium chloride; 13371-1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클로르포늄[Chlorphonium chloride; 115-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190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1902000	유기-비소 화합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902000	유기-비소 화합물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1903000	유기-인 화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이피엔[EPN; 2104-6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클로로(페닐)포스핀 [Dichloro(phenyl)phosphine; 644-9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포스핀[Triphenylphosphine; 603-35-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트리부틸테트라데실포스포늄 [Tributyltetradecylphosphonium chloride; 81741-2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요오드화 트리부틸메틸포스포늄 [Tributylmethylphosphonium iodide; 1702-4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2,4,4-트리메틸펜틸)포스피노디티오산 [Bis(2,4,4-trimethylpentyl)phosphinodithioic acid; 107667-02-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4-(1,1-디메틸에틸)페닐]트리페닐포스포늄 [[4-(1,1-Dimethylethyl) phenyl]triphenylphosphonium chloride; 236408-4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부틸트리페닐포스포늄 [Butyltriphenylphosphonium chloride; 13371-1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클로르포늄[Chlorphonium chloride; 115-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오염화인과 염화암모늄의 중합체, 산화 [Pentachlorophosphorane polymer with ammonium chloride ((NH4)Cl), oxidized; 1391992-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tert-부틸포스핀[tert-Butylphosphine; 2501-9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인산 칼륨(1:1)[Potassium trifluorotris(perfluoroethyl)phosphate(1-), (1:1);	화학물질관리법
	2931905000	염소화합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190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 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단, 군함.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의 방오도료용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용 다. 산림법에 따른 목재방부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 ● 카드뮴[Cadmium;7440-43-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질산 디페닐요오도늄[Diphenyliodonium nitrate; 722-56-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니켈 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펜브타틴[Fenbutatin oxide; 13356-0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싸이헥사틴[Cyhexatin; 13121-70-5] 및 이를 1%	화학물질관리법

	2931909090	기타	2-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페닐메틸륨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1-)[Triphenyl methylium tetrakis(pentafluorophenyl)borate(1-); 136040-19-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트리아릴주석[Triaryl tin hydroxide] 및 그 염류(산화트리아릴 주석을 포함한다)와 그 중 하나를 2%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수산화 트리페닐주석[Triphenyl tin hydroxide; 76-87-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트리페닐주석[Triphenyltin acetate; 900-95-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클로로(클로로메틸)메틸실란[Dichloro(chloromethyl) methylsilane; 1558-3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디메틸실란[Chlorodimethylsilane; 1066-3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플루오로트리스(1,1,2,2,2-펜타플루오로에틸)인산 [4-(1-메틸에틸)페닐](4-메틸페닐)이오도늄(1:1)[[4-(1-Methylethyl)phenyl](4-methylphenyl)iodonium trifluorotris(1,1,2,2,2-pentafluoroethyl)phosphate(1-) (1:1); 1245634-39-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나프탈렌붕산[2-Naphthaleneboronic acid; 32316-9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B-9-페난트레닐붕산[B-9-Phenanthrenylboronic acid; 68572-8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니트로페닐붕산[2-Nitrophenylboronic acid; 5570-1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6-트리메틸-2,4,6-트리스(3,3,3-트리플루오로프로필)사이클로트리실록산[2,4,6-Trimethyl-2,4,6-tris(3,3,3-trifluoropropyl)cyclotrisiloxane; 2374-14-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키스(트리메틸실일) 트리포스페이트	화학물질관리법
	2931909090	기타	2-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1-메틸에틸)페닐](4-메틸페닐)이오도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1-) (1:1)[[4-(1-Methylethyl)phenyl](4-methylphenyl)iodonium, hexafluorophosphate(1-) (1:1); 184477-2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브로모트리메틸실란[Bromotrimethylsilane; 2857-97-8]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2-프로펜산 1,1'-[(1,1,5,5-테트라메틸-3,3-디페닐-1,5-트리실록산디일)디-3,1-프로판디일][1,1'-[(1,1,5,5-Tetramethyl-3,3-diphenyl-1,5-trisiloxanediyl)di-3,1-propanediyl] 2-methyl-2-propenoate; 1581235-1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3-디메틸-1H-벤조[b]사이클로펜타[d]티엔-1-일)-N-(1,1-디메틸에틸)-1,1-디메틸실란아민[1-(2,3-Dimethyl-1H-benzo[b]cyclopenta[d]thien-1-yl)-N-(1,1-dimethylethyl)-1,1-dimethylsilanamine; 2053251-2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클로로메틸실란[Dichloromethylsilane; 75-5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트리메톡시실일)-N,N-비스[3-(트리메톡시실일)프로필]-1-프로판아민[3-(Trimethoxysilyl)-N,N-bis[3-(trimethoxysilyl)propyl]-1-propanamine; 82984-64-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1-메틸프로필)실란아민[N,N-Bis(1-methylpropyl)silanamine; 914981-36-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필실란트리올산 칼륨[Tripotassium propylsilanetriolate; 93857-00-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N-메틸메탄아미나토)[(1,2,3,4,5-η)-1-프로필-2,4-사이클로펜타디엔-1-일]지르코늄[Tris(N-methylmethanaminato)[(1,2,3,4,5-η)-1-	화학물질관리법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푸르푸랄[Furfural; 98-0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푸란메탄올[2-Furanmethanol; 98-0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2140000	수크랄로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2140000	수크랄로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21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21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21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2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21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2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엔도탈[Endothal; 145-7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레스메트린[Resmethrin; 10453-86-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메틸페닐)디페닐술포늄과 2,2-디플루오로-2-솔포아세트산 1-(헥사히드로-5-옥소-2,6-메타노푸로[3,2-b]푸란-3-일)의 염 (1:1)[(4-Methylphenyl)diphenylsulfonium salt with 1-(hexahydro-5-oxo-2,6-methanofuro[3,2-b]furan-3-yl) 2,2-difluoro-2-sulfoacetate(1:1); 1112983-1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2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219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32209030	부티로락톤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 lacton)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2209060	글루쿠로노락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2209091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2209099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2209099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브로디파쿰[Brodifacoum; 56073-10-0] 및 이를 0.3%이상 함유한 혼합물 ● 브로마디올론[Bromadiolone; 28772-56-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싸이프로푸람[Cyprofuram; 69581-3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왈파린[Warfarin; 81-81-2]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쿠마테트라릴[Coumatetralyl; 5836-29-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쿠마퍼릴[Coumafuryl; 117-5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쿠미토에이트[Coumithoate; 572-48-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나쿰[Difenacoum; 56073-07-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아세트산 헥사히드로-2-옥소-3,5-메타노-2H-시클로펜타[b]퓨란-6-일[Hexahydro-2-oxo-3,5-methano-2H-cyclopenta[b]furan-6-yl chloroacetate; 869795-9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마멕틴[Emamectin; 119791-4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쿠마클로르[Coumachlor; 81-8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로쿠마펜[Flocoumafen; 90035-08-8]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펜산 테트라히드로-2-옥소-3-퓨란일[Tetrahydro-2-oxo-3-furanyl 2-propenoate; 328249-3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2910000	이소사프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2930000	피페로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2930000	피페로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2940000	사프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다음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염산 라니티딘	약사법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2960000	카보퓨란(ISO)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보푸란[Carbofuran; 1563-6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2991000	디옥산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4-디옥산[1,4-Dioxane; 123-91-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29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29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29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메틸-2-벤조퍼릴)에탄-1-온[1-(3-Methyl-2-benzofuryl)ethan-1-one; 23911-5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4,6,7,8-헥사하이드로-4,6,6,7,8,8-헥사메틸사이클로펜타[g]-2-벤조피란[1,3,4,6,7,8-Hexahydro-4,6,6,7,8,8-hexamethylcyclopenta[g]-2-benzopyran; 1222-0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29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29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2999090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29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2,4-디메틸-3-시클로헥센-1-일)-5-메틸-5-(1-메틸프로필)-1,3-디옥산[2-(2,4-Dimethyl-3-cyclohexen-1-yl)-5-methyl-5-(1-methylpropyl)-1,3-dioxane; 117933-8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옥사티온[Dioxathion; 78-3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푸라티오캅[Furathiocarb; 65907-30-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디메틸-2-(5,6,7,8-테트라히드로-5,5,8,8-테트라메틸-2-나프탈레닐)-1,3-디옥소란[2,4-Dimethyl-2-(5,6,7,8-tetrahydro-5,5,8,8-tetramethyl-2-naphthalenyl)-1,3-dioxolane; 131812-67-4, 131812-52-7, 131812-5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프라캅[Benfuracarb; 82560-54-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보술판[Carbosulfan; 55285-1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옥사캅[Dioxacarb; 6988-2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로테논[Rotenone; 83-79-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디오캅[Bendiocarb; 22781-23-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티온[Endothion; 2778-04-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B-4-디벤조푸라닐붕산[B-4-Dibenzofuranylboronic acid; 100124-06-9] 및 이	화학물질관리법
	293299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3112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3192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192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31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피프로닐[Fipronil; 120068-37-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O,O-디에틸 O-1-페닐-3-트리플루오로메틸피라졸-5-일티오인산[O,O-Diethyl O-1-phenyl-3-trifluoromethylpyrazol-5-ylphosphorothioate; 122431-2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란[Dimetilan; 644-6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솔란[Isolan; 119-38-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브펜피라드[Tebufenpyrad;119168-7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테트라메틸암모늄 4,5-디히드로-5-옥소-1-(4-술포페닐)-4-[(4-술포페닐)아조]-1H-피라졸-3-카르복실산[Tritetramethylammonium 4,5-dihydro-5-oxo-1-(4-sulfophenyl)-4-[(4-sulfophenyl)azo]-1H-pyrazole-3-carboxylate; 131013-8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조티온[Pyrazothion; 108-3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족손[Pyrazoxon; 108-3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할로겐화 히단토인[Halogenated hydantoin ; 16079-8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291000	리시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3291000	리시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2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32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2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5-클로로-4-(4-메틸페닐)-1H-이미다졸-2-카보니트릴[5-Chloro-4-(4-methylphenyl)-1H-imidazole-2-carbonitrile; 120118-1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옥시라닐메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oxiranylmethyl)imidazo[4,5-d]imidazole-2,5(1H,3H)-dione; 1454838-8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299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32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2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5-[1-(2,3-디메틸페닐)에틸]-1H-이미다졸[5-[1-(2,3-Dimethylphenyl)ethyl]-1H-imidazole; 86347-14-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105827-7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이미다졸리딘티온[2-Imidazolidinethione; 96-4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클로로-4-(4-메틸페닐)-1H-이미다졸-2-카보니트릴[5-Chloro-4-(4-methylphenyl)-1H-imidazole-2-carbonitrile; 120118-1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옥시라닐메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oxiranylmethyl)imidazo[4,5-d]imidazole-2,5(1H,3H)-dione; 1454838-8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이미다졸리딘에탄올[1-Imidazolidineethanol; 77215-4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핀-1-일 1H-이미다졸-1-카르복실레이트[2-Propyn-1-yl 1H-imidazole-1-carboxylate; 83395-38-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29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3311000	피리딘	마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311000	피리딘	다음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① 말레인산 클로로페니라민	약사법
	2933311000	피리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312000	피리딘의 염	마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312000	피리딘의 염	다음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① 말레인산 클로로페니라민	약사법

	2933312000	피리딘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33330000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카펜타닐(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닐(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레미펜타닐(INN)·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33350000	3-퀴뉴클리디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3392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플루오로인산 1-옥틸피리디늄(1:1)[1-Octylpyridinium, hexafluorophosphate(1-) (1:1); 384347-0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tert-부틸피리딘[4-tert-Butylpyridine; 3978-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2-피리딜메틸)아민[Tris(2-pyridylmethyl)amine; 16858-0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392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33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33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에이시티피[ACTP; 79456-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오마딘[Omadine; 1121-3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염화 1-[2-[에틸[4-[4-[4-[에틸(2-피리디노에틸)아미노]-2-메틸페닐아조]벤조일아미노]페닐아조]-3-메틸페닐]아미노]에틸]피리디늄[1-[2-[Ethyl[4-[4-[4-[ethyl(2-pyridinoethyl)amino]-2-methylphenylazo]benzoylamino]phenylazo]-3-methylphenyl]amino]ethyl]pyridinium dichloride; 163831-6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클로로[디메틸 9,9-디히드록시-3-메틸-2,4-디(2-피리디닐-κN)-7-[(2-피리디닐-κN)메틸]-3,7-디아자비시클로[3.3.1]노난-1,5-디카르복실레이트-κN3, κN7](1+)[Iron(1+), chloro[rel-1,5-dimethyl (1R,2S,4R,5S)-9,9-dihydroxy-3-methyl-2,4-di(2-pyridinyl-κN)-7-[(2-pyridinyl-κN)methyl]-3,7-diazabicyclo[3.3.1]nonane-1,5-dicarboxylate-κN3, N7]-, chloride (1:1), (OC-6-63)-; 478945-4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프록타닐 염류[Piproctanyl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2,4-디클로로-3-메틸벤조일)-1,3-디-디메틸	화학물질관리법

	2933399000	기타	2-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비닐피리딘[4-vinylpyridine; 100-4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피리딘[4-Aminopyridine; 504-2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피리딘[2-Chloropyridine; 109-0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딘-트리페닐보란(1/1)[Pyridine-triphenylborane(1/1); 971-6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도데실 또는 테트라데실 N-(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디닐)-β-알라닌[Dodecyl or tetradecyl N-(2,2,6,6-tetramethyl-4-piperidinyl)-β-alanine; 119530-69-7, 119530-7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E)-N-[(6-클로로-3-피리딜)메틸]-N-시아노-N-메틸아세트아미딘[(E)-N-[(6-Chloro-3-pyridyl)methyl]-N-cyano-N-methylacetamidine; 135410-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화학물질관리법
	29334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34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499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34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4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8-퀴놀리노라토-κN1,κO8)리튬[(8-Quinolinolato-κN1,κO8)lithium; 850918-6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퀴놀린[Quinoline; 91-22-5] 및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3,4-테트라히드로이소퀴놀린[1,2,3,4-Tetrahydroisoquinoline; 91-2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 부토바르비탈(INN),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 펜토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 비닐비탈(INN) 및 이들의 염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540000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및 이들의 염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 메크로콰론(INN), 메타콰론(INN), 지페프롤(INN) 및 이들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5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3592000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싸이프로디닐[Cyprodinil; 121552-6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6-디클로로피리미딘[4,6-Dichloropyrimidine; 1193-21-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클로로-2,4,6-트리플루오로피리미딘[5-Chloro-2,4,6-trifluoropyrimidine; 697-83-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아지논[Diazinon; 333-4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리미딘[Crimidine; 535-89-7]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부피림포스[Tebupirimfos; 96182-5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미캄[Pirimicarb; 23103-9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미테이트[Pyrimitate; 5221-4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미포스-에틸[Pirimiphos-ethyl; 23505-4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6,6a,7,8,9,9a-헥사히드로-7,7,8,9,9-펜타메틸-5H-사이클로펜타[h]퀴나졸린[6,6a,7,8,9,9a-Hexahydro-7,7,8,9,9-pentamethyl-5H-cyclopenta[h]quinazoline; 1392325-8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6,7,8,9-테트라히드로-7,7,8,9,9-펜타메틸-5H-사이클로펜타[h]퀴나졸린[6,7,8,9-Tetrahydro-7,7,8,9,9-pentamethyl-5H-cyclopenta[h]quinazoline; 1315251-1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클로로-2-(메틸술포닐)피리미딘[4-Chloro-2-(methylsulfonyl)pyrimidine; 97229-1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610000	멜라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3691000	염화시아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3691000	염화시아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시아누르산[Cyanuric chloride; 108-77-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692000	헥사메틸렌 테트라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33699091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3699091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699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3699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699099	기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33699099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시클로니트[Cyclonite; 121-82-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심클로센[Symclosene; 1,3,5-Trichloro- 1,3,5-triazine-2,4,6(1H,3H,5H)-trione; 87-9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글리시딜 이소시아누레이트[Triglycidyl isocyanurate; 1,3,5-Tris(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2451-62-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로클로센 나트륨[Troclosene sodium; 1,3-Dichloro-1,3,5-triazine-2,4,6(1H,3H,5H)-trione sodium salt; 2893-7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S1,S1',S1''-[(2,4,6-트리옥소-1,3,5-트리아진-1,3,5(2H,4H,6H)-트리일)트리-3,1-프로판디일] 에탄티오에이트[S1,S1',S1''-[(2,4,6-Trioxo-1,3,5-triazine-1,3,5(2H,4H,6H)-triyl)tri-3,1-propanediyl] ethanethioate, hydrolyzed; 2760622-7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699099	기타	,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3799000	기타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37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메틸-2-피롤리디논[1-Methyl-2-pyrrolidinone; 872-50-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 트리아졸람(INN) 및 이들의 염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 트리아졸람(INN) 및 이들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92	아진포스-메틸(ISO)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39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39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39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392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진포스-메틸[Azinphos-methyl; 86-5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5-브로모인돌[5-Bromoindole; 10075-5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틸 1-[3-시아노-1-(1-메틸에틸)-1H-인돌-5-일]-1H-피라졸-4-카르복실레이트[Ethyl 1-[3-cyano-1-(1-methylethyl)-1H-indol-5-yl]-1H-pyrazole-4-carboxylate; 1287766-9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9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9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39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39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399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피롤리딘[Pyrrolidine; 123-75-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6,7-테트라하이드로-9-메틸-1H,5H,11H-[1]벤조피라노[6,7,8-ij]퀴놀리진-11-온[2,3,6,7-Tetrahydro-9-methyl-1H,5H,11H-[1]benzopyrano[6,7,8-ij]quinolizin-11-one; 41267-7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벤다짐[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 Carbendazim; 10605-2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3,4-부탄테트라카르복실산 테트라키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딘일)[Tetrakis(1,2,2,6,6-pentamethyl-4-piperidyl) 1,2,3,4-butanetetracarboxylate; 91788-8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999090	기타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9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3999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39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아미포스[Triamiphos; 1031-47-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111479-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부틸피롤리딘[N-Butylpyrrolidine; 767-1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디히드로-1,3-디옥소-2H-이소인돌-2-헥산퍼옥소산[1,3-Dihydro-1,3-dioxo-2H-isoindole-2-hexaneperoxoic acid; 128275-31-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브로모-2-(4-클로로페닐)-5-(트리플루오로메틸)-1H-피롤-3-카르보니트릴[4-Bromo-2-(4-chlorophenyl)-5-(trifluoromethyl)-1H-pyrrole-3-carbonitrile; 122454-2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나자퀸[Fenazaquin; 120928-09-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틸 아폭시드[Methyl aphoxide; 57-3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폭사이드[Aphoxide; 545-5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2-에틸헥실)-[(1,2,4-트리아졸-1-일)메틸]아민[N,N-Bis(2-ethylhexyl)-[(1,2,4-triazol-1-yl)methyl]amine; 91273-04-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브로모-2-(4-클로로페닐)-1-(에톡시메틸)-5-(트리플루오로메틸)피롤-3-카보니트릴[4-Bromo-2-(4-chlorophenyl)-1-(ethoxymethyl)-5-(trifluoromethyl)pyrrole-3-carbonitrile; 122453-7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몰리네이트[Molinate; 2212-67-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미벤코나졸[Imibenconazole; 86598-9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999090	기타	1-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24017-47-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티오나진[Thionazin; 297-9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136426-5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다벤[Pyridaben; 96489-7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메르캅토에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mercaptoethyl)imidazo[4,5-d]imidazole-2,5(1H,3H)-dione; 1569262-1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7-니트로-1H-벤조트리아졸[7-Nitro-1H-benzotriazole; 6299-3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롤리딘[Pyrrolidine; 123-75-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6,7-테트라하이드로-9-메틸-1H,5H,11H-[1]벤조피라노[6,7,8-ij]퀴놀리진-11-온[2,3,6,7-Tetrahydro-9-methyl-1H,5H,11H-[1]benzopyrano[6,7,8-ij]quinolizin-11-one; 41267-7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벤다짐[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 Carbendazim; 10605-2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3,4-부탄테트라카르복실산 테트라키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딘일)[Tetrakis(1,2,2,6,6-pentamethyl-4-piperidyl) 1,2,3,4-butanetetracarboxylate; 91788-8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디히드로-3H-1,2,4-트리아졸-3-온[2,4-Dihydro-3H-1,2,4-triazol-3-one; 122333-30-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9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3399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399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410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410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41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410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98886-4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클로로-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26172-55-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2-Methyl-4-isothiazolin-3-one; 2682-20-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에틸-3-메틸-4-[2-(5-니트로-2-티아졸릴)디아제닐]벤젠아민[N,N-Diethyl-3-methyl-4-[2-(5-nitro-2-thiazolyl)diazenyl]benzenamine; 70693-6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4204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4205000	머캐프토 벤조티아졸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3H)-벤조티아졸티온[2(3H)-Benzothiazolethione; 149-3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42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메틸-1,2-벤즈이소티아졸린-3-온[2-Methyl-1,2-benzisothiazolin-3-one; 2527-66-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n-부틸-벤조[d]이소티아졸-3-온[2-n-Butyl-benzo[d]isothiazol-3-one; 4299-0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하이드라진일벤조티아졸[2-Hydrazinylbenzothiazole; 615-2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H)-벤조티아졸티온, 코발트 염 (2:1)[2(3H)-Benzothiazolethione, cobalt(2+) salt (2:1); 29904-9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사이클로헥실-2-벤조티아졸설펜아미드[N-Cyclohexyl-2-benzothiazolesulfenamide; 95-3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1,2-Benzisothiazol-3-(2H)-one; 2634-3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tert-부틸벤조티아졸-2-설펜아미드[N-(1,1-Dimethylethyl)-2-benzothiazolesulfenamide; N-t-Butylbenzothiazole-2-sulfenamide; 95-3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서펜타닐(INN) 및 이들의 염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서펜타닐(INN) 및 이들의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서펜타닐(INN) 및 이들의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서펜타닐(INN) 및 이들의 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서펜타닐(INN) 및 이들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4994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4996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4996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4996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4996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499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49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옥사벤조포스[Dioxabenzofos; 3811-49-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티에닐아세토니트릴[2-Thienylacetonitrile; 20893-3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독사캅[Indoxacarb; 173584-44-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팜옥사돈[Famoxadone; 131807-5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틸 5,5-디페닐-2-이소사졸린-3-카르복실레이트[Ethyl 5,5-diphenyl-2-isoxazoline-3-carboxylate; 163520-3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3,4,4-테트라클로로테트라히드로티오펜 1,1-디옥시드[3,3,4,4-Tetrachlorotetrahydrothiophene 1,1-dioxide; 3737-4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H-1,2-옥사티올, 2,2-디옥시드[5H-1,2-Oxathiole, 2,2-dioxide; 21806-6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119446-6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티에탄[Fosthiethan; 21548-32-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폴란[Phosfolan; 947-0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포스폴란[Mephosfolan; 950-10-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살론[Phosalone; 2310-17-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티다티온[Methidathion; 950-37-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닐클로르[Thenylchlor;96491-0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폴레이트[Apholate; 52-46-0] 및 이를 25% 이	화학물질관리법
	2934999000	기타	1-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티오시클람[Thiocyclam; 31895-21-3] 및 이를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녹사프롭-피[Fenoxaprop-p; 71283-8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티안-2,5-디(메탄티올)[1,4-Dithiane-2,5-di(methanethiol); 136122-15-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5,2,4-디옥사디티안, 2,2,4,4-테트라옥사이드[1,5,2,4-Dioxadithiane, 2,2,4,4-tetraoxide; 99591-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벤질-2-디메틸아미노-1-(4-모폴리노-페닐)-1-부타논[2-Benzyl-2-dimethylamino-1-(4-morpholino-phenyl)-1-butanone; 119313-12-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N-(시아노-2-티에닐메틸)-아세트아미드[2-Chloro-N-(cyano-2-thienylmethyl)-acetamide; 263137-4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1,3,2-Dioxathiane 2,2-dioxide; 1073-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에틸-2-메틸-2-(3-메틸부틸)-1.3-옥사졸리딘[3-Ethyl-2-methyl-2-(3-methylbutyl)-1,3-oxazolidine; 143860-0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부틸주석 3-메르캅토프로피오네이트[Dibutyltin 3-mercaptopropionate; 2,2-Dibutyldihydro-6H-1,3,2-oxathiastannin-6-one; 78-06-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3,9,9-테트라옥사이드[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3,9,9-tetraoxide; 201419-80-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글리시딜 이소시아누레이트[Triglycidyl isocyanurate; 1,3,5-Tris(oxiranylmethyl)-1,3,5-	화학물질관리법

	293499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35	술폰아미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5100000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5100000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5200000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5200000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5300000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5300000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5400000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5400000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550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550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5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5904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5905000	그 밖의 파라아미노벤젠 술폰아미드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59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5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1,1-트리플루오르-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 리튬염[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 methanesulfonamide lithium salt; 90076-65-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술파미드[Flusulfamide;106917-5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페닐메틸)포스포늄 1,1,2,2,3,3,4,4,4-노나플루오로-N-메틸-1-부탄술폰아미드(1:1)[Triphenyl(phenylmethyl)phosphonium 1,1,2,2,3,3,4,4,4-nonafluoro-N-methyl-1-butanesulfonamide(1:1); 332350-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싸이티오산[Cythioate; 115-9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팜퍼[Famphur; 52-85-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에스피[DSP; 3078-9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술라이드[Bensulide; 741-5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에틸-1-메틸피롤리디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1:1) [1-Ethyl-1-methylpyrrolidi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 sulfonyl]methanesulfonamide(1:1); 223436-9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술포늄과 트리사이클로[3.3.1.13,7]데칸-카복실산 2-[[(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아미노]에틸의 염 (1:1)[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trifluoromethyl)sulfonyl]amino]ethyl tricyclo[3.3.1.13,7]decane-1-carboxylate (1:1); 1373359-6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	화학물질관리법
	2935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부틸-3-도데실-1H-이미다졸리움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 (1:1)[1-Butyl-3-dodecyl-1H-imidazol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1612842-4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2,2,3,3,4,4,4-노나플루오로-N-[(1,1,2,2,3,3,4,4,4-노나플루오로부틸)술포닐]-1-부탄술폰아미드[1,1,2,2,3,3,4,4,4-Nonafluoro-N-[(1,1,2,2,3,3,4,4,4-nonafluorobutyl)sulfonyl]-1-butanesulfonamide; 39847-3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N-(디플루오로포스피닐)술파모일의 리튬염 (1:1)[N-(Difluorophosphinyl)sulfamoyl fluoride, lithium salt (1:1); 1217886-6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데실-4-메틸피리디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 (1:1)[1-Decyl-4-methylpyridi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802333-9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세슘염 (1:1)[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cesium salt (1:1); 91742-1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590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936210000	비타민A와 이들의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10000	비타민A와 이들의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10000	비타민A와 이들의 유도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10000	비타민A와 이들의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10000	비타민A와 이들의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10000	비타민A와 이들의 유도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cis-레티산[13-cis-Retinoic acid; 4759-48-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6210000	비타민A와 이들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20000	비타민B_1과 이들의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20000	비타민B_1과 이들의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20000	비타민B_1과 이들의 유도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20000	비타민B_1과 이들의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20000	비타민B_1과 이들의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20000	비타민B_1과 이들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30000	비타민B_2와 이들의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30000	비타민B_2와 이들의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30000	비타민B_2와 이들의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30000	비타민B_2와 이들의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30000	비타민B_2와 이들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50000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50000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50000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50000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50000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60000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60000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60000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60000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60000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영양보충용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7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7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7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7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7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8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8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8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8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8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91010	비타민 B9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91010	비타민 B9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91010	비타민 B9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91010	비타민 B9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91010	비타민 B9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91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9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91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91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9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9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9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9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9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에르고칼시페롤[Ergocalciferol; 50-14-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비비트[Ebivit; 67-97-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629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93000	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93000	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93000	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93000	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93000	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94000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94000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94000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94000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94000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29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6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베타카로틴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6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9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69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69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6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11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11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19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1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1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원료동물약품용 디에틸스틸 베스트롤	약사법
	2937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211000	코르티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211000	코르티손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211000	코르티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213000	프레드니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213000	프레드니손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213000	프레드니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214000	프레드니소론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214000	프레드니소론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214000	프레드니소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29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2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원료동물약품용 디에틸스틸 베스트롤	약사법
	29372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501000	소호 제2918.19호, 제2918.9호의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7501000	소호 제2918.19호, 제2918.9호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7501000	소호 제2918.19호, 제2918.9호의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501000	소호 제2918.19호, 제2918.9호의 것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2937501000	소호 제2918.19호, 제2918.9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502000	소호 제2934.9호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75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75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5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원료동물약품용 디에틸스틸 베스트롤	약사법

	29375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902100	에피네프린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7902910	소호 제2922.50호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7902910	소호 제2922.50호의 것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7902910	소호 제2922.50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9029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90299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원료동물약품용 디에틸스틸 베스트롤	약사법
	29379029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9029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원료동물약품용 디에틸스틸 베스트롤	약사법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79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37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원료동물약품용 디에틸스틸 베스트롤	약사법
	29379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8903000	사포닌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8903000	사포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8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89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8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8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9111000	모르핀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11000	모르핀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11000	모르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112000	에틸모르핀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12000	에틸모르핀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12000	에틸모르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113000	코데인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13000	코데인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13000	코데인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119000	기타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19000	기타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코카인 유도체 ② 염산 코데인 ③ 코카인 ④ 디아세틸몰핀 ⑤ 디히드로코테인 ⑥ 에놀초산 디히드로코데인 ⑦ 디히드로메시옥시몰핀 ⑧ 디히드로메틸피논 ⑨ 디히드로몰핀 ⑩ 디히드로몰핀논 ⑪ 메칠몰핀 ⑫ 몰핀모노메틸 ⑬ 에텔메틸몰핀 ⑭ 초산몰핀 ⑮ 아편알카로이드 ^16 디히드로옥시데인논 ^17 아편유도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염산코카인 ②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 ③ 염산몰핀 ④ 인산코데인 ⑤ 제1항 이외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1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190000	기타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90000	기타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염산코카인 ②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 ③ 염산몰핀 ④ 인산코데인 ⑤ 제1항 이외의 마약 ① 코카인 유도체 ② 염산 코데인 ③ 코카인 ④ 디아세틸몰핀 ⑤ 디히드로코테인 ⑥ 에놀초산 디히드로코데인 ⑦ 디히드로메시옥시몰핀 ⑧ 디히드로메틸피논 ⑨ 디히드로몰핀 ⑩ 디히드로몰핀논 ⑪ 메칠몰핀 ⑫ 몰핀모노메틸 ⑬ 에텔메틸몰핀 ⑭ 초산몰핀 ⑮ 아편알카로이드 ^16 디히드로옥시데인논 ^17 아편유도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염산코카인 ②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 ③ 염산몰핀 ④ 인산코데인 ⑤ 제1항 이외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190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20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920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20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411000	에페드린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411000	에페드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411000	에페드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430000	카틴(INN)과 그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430000	카틴(INN)과 그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4400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4400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4400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① 놀에페드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490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4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490000	기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① 놀에페드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590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5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611000	엘고메트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611000	엘고메트린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611000	엘고메트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621000	엘고타민(IN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621000	엘고타민(INN)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621000	엘고타민(INN)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629000	엘고타민(INN)과 그 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629000	엘고타민(INN)과 그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629000	엘고타민(INN)과 그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631000	리세르그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631000	리세르그산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631000	리세르그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690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96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397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9791000	니코틴과 그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9791000	니코틴과 그 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2939791000	니코틴과 그 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979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7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나바신[Anabasin; 494-52-0]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노르니코틴[(±)-Nornicotine; 5746-86-1, 494-9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98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Saxitoxin에 한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398010	비리디카틴, 루구로바신 에이, 스포리데스민 에이, 사이토칼라신 비, 테올로시딘 비4, 페니트렘 디, 로쿼포르틴, 사만다린, 에파비티딘, 카스토라민, 무스코피리딘, 코시넬린, 피라진, 다나이돈, 글로메린, 에필라크네네, 서브코시넬라 24-푼크타타, 바라신, 만자민, 콘볼루타민 디, 유디스토민, 프로시아닌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8010	비리디카틴, 루구로바신 에이, 스포리데스민 에이, 사이토칼라신 비, 테올로시딘 비4, 페니트렘 디, 로쿼포르틴, 사만다린, 에파비티딘, 카스토라민, 무스코피리딘, 코시넬린, 피라진, 다나이돈, 글로메린, 에필라크네네, 서브코시넬라 24-푼크타타, 바라신, 만자민, 콘볼루타민 디, 유디스토민, 프로시아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9801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9801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9801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801090	기타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398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9802000	히스트리노코톡신, 테트로도톡신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802000	히스트리노코톡신, 테트로도톡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98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39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398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나바신[Anabasin; 494-52-0]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9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40001030	키실로오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400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4000109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940001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29400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400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940002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00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41101000	페니실린 지 칼륨	다음의 것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의 조미료 구르타민산소다 제조에 소요되는 실소요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단,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① 페니실린 G의 염류	약사법
	2941101000	페니실린 지 칼륨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101000	페니실린 지 칼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41109010	페니실린 지 나트륨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109010	페니실린 지 나트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41109020	페니실린브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109020	페니실린브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41109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1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294120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20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412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413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41501000	에리즈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501000	에리즈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415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2941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94190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2941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라살로시드[Lasalocid; 25999-31-9]와 그 염류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넨신[Monensin; 17090-79-8]과 그 염류 및 그 중 모넨신으로서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살리노마이신[Salinomycin; 53003-10-4]과 그 염류 및 이를 살리노마이신으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클로헥시미드[Cycloheximide; 66-81-9]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4200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히드록시 수소화 수지산 스트론튬 솔포[프탈로시아니나토]구리 착화합물[Strontium. chloro hydroxy hydrogenated resin acids [29H,31H-phthalocyaninato(2-)-kN29,kN30, kN31,kN32]copper sulfo derivs. complexes; 1039756-6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T-4)-트리플로로(피페리딘)보론[(T-4)-Trifluoro(piperidine)boron; 592-3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4200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001202000	간장 추출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001202000	간장 추출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1202000	간장 추출물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체수거증(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1202000	간장 추출물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1202000	간장 추출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1202000	간장 추출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12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0012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1209000	기타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체수거증(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1209000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12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1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1901010	인체의 것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 및 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직수입승인을 받은 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3001901010	인체의 것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 및 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001901010	인체의 것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 및 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원료물질등 포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0190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0019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입한도량 범위내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인혈청 알부민 ② 프라스마네이트 ③ 혈청	약사법
	3001901090	기타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1901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1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1902010	웅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001902010	웅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1902010	웅담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체수거증(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1902010	웅담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1902010	웅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1902010	웅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190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001902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1902090	기타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체수거증(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1902090	기타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1902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19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입한도량 범위내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인혈청 알부민 ② 프라스마네이트 ③ 혈청	약사법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1909020	인체의 것 (피부 및 뼈 외에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인체조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직수입승인을 받은 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3001909020	인체의 것 (피부 및 뼈 외에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인체조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원료물질등 포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01909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0019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입한도량 범위내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인혈청 알부민 ② 프라스마네이트 ③ 혈청	약사법
	3001909090	기타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1909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1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002122000	면역혈청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2122000	면역혈청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002122000	면역혈청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의료기기법
	3002122000	면역혈청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002122000	면역혈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002123000	그 밖의 혈액 분획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002123000	그 밖의 혈액 분획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002123000	그 밖의 혈액 분획물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혈액제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2123000	그 밖의 혈액 분획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한도량의 범위내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① 인혈청 알부민 ② 프라스마네이트 ③ 혈청	약사법
	3002123000	그 밖의 혈액 분획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002130000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완제의약품(국가출하승인의약품 포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혈액제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약사법
	3002130000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한도량의 범위내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 인혈청 알부민 ● 프라스마네이트 ● 혈 청	약사법
	3002130000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002140000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완제의약품(국가출하승인의약품 포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혈액제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약사법
	3002140000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한도량의 범위내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 인혈청 알부민 ● 프라스마네이트 ● 혈 청	약사법
	3002140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혈액제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한도량의 범위내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① 인혈청 알부민 ② 프라스마네이트 ③ 혈청	약사법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중 완제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가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검정을 필 한 후 통관하여야 함.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02410000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다음의 것과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	약사법

	3002410000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2410000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2421000	구제역 백신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	약사법
	3002421000	구제역 백신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2421000	구제역 백신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2421000	구제역 백신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2421000	구제역 백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24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	약사법
	3002429000	기타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242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242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24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2429000	기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02491000	독소, 톡소이드(toxoid), 크립토독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 코노 독소(Conotoxin) • 시가 독소(Shiga toxin) • 포도상구균 장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 복어독(Tetrodotoxin) • 베로톡신(Verotoxin) •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 아플라톡신(Aflatoxins) • 아브린(Abrin) • Diacetoxyscirpenol toxin • T-2 toxin • 볼켄신 독소(Volkensin toxin)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3002492000	미생물 배양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바이오틱스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002492000	미생물 배양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002492000	미생물 배양체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 / Pyricularia oryzae)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3002492000	미생물 배양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및 제71조 참조)	사료관리법 식물방역법
	3002492000	미생물 배양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3002492000	미생물 배양체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3002492000	미생물 배양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002492000	미생물 배양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02493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i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베네주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 동물병원균 •아프리카돼지열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Highly pathogenic)] •청설병 바이러스(Bluetongue virus)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3002493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및 제71조 참조)	식물방역법
	3002493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3002493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002493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02494000	기타[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를 포함한다)]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 / Pyricularia oryzae)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3002494000	기타[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를 포함한다]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3002901000	사람의 피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	약사법
	3002901000	사람의 피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2901000	사람의 피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2901000	사람의 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002901000	사람의 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2901000	사람의 피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002901000	사람의 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	약사법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029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002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및 제71조 참조)	식물방역법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003	의약품(2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기타의 효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은 HS 제3002호, 제3004호, 제3005호, 제3306호 등 각 세번 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 또는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 대상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	약사법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기타의 효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은 HS 제3002호, 제3004호, 제3005호, 제3306호 등 각 세번 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 또는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한 허가제한 대상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	약사법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04493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0049099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의료기기법
	3004909900	기타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5101000	반창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5101000	반창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의료기기법
	3005101000	반창고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5101000	반창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5109000	기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510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의료기기법
	30051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5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5901000	탈지면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외품	약사법

	3005901000	탈지면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005901000	탈지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5902000	거즈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외품	약사법
	3005902000	거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005902000	거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5903000	붕대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외품	약사법
	3005903000	붕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005903000	붕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의료기기법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5909000	기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590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의료기기법
	30059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5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의료기기법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의료기기법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의료기기법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의료기기법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006105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105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006105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의료기기법
	3006105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6105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투여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투여용)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투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006403000	뼈 형성용 시멘트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006600000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6600000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비 경구용 피임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국가검정성적서를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6600000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6600000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700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006700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②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③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관리법
	3006700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006700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3006700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006700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006700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910000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910000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물놀이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006921010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921010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1010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00692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921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1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00692201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92201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006922031	색시톡신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006922031	색시톡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6922031	색시톡신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2032	리신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006922032	리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6922032	리신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6922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2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및 제71조 참조)	식물방역법
	3006922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006923000	제3003호와 제3004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6923000	제3003호와 제3004호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4000	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6924000	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4000	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06924000	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006925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006925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006925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006925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101001000	동물성 비료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비료 또는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16참조)	비료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3101002000	식물성 비료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1002000	식물성 비료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 보통비료 ②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 부산물비료 ③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원료	비료관리법
	3101002000	식물성 비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2 참조).	식물방역법
	3101002000	식물성 비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1003000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1003000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 보통비료 ②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 부산물비료 ③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원료	비료관리법
	3101003000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2 참조).	식물방역법
	3101003000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1003000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109000	기타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102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210000	황산암모늄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210000	황산암모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102210000	황산암모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210000	황산암모늄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501000	천연의 것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501000	천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509000	기타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5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102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60000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60000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800000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800000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2909000	기타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2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3110000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3190000	기타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3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3900000	기타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4200000	염화칼륨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4200000	염화칼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104200000	염화칼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4200000	염화칼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3104200000	염화칼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2이하인 것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2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2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4309000	기타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43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104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4901090	기타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4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4909000	기타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4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5100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5100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520000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520000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5590000	기타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55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05909000	기타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105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0190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190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203001000	식물성 착색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3002010	코치닐(cochineal)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3002030	세피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30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30030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30030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30030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11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12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412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20412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20412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122000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말라카이트 그린의 염산염[Malachite green chloride; [4-[α-[4-(Dimethylamino)phenyl]benz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569-64-2] 및 말라카이트 그린의 옥살산염[Malachite green oxalate; Bis[[4-[4-(dimethylamino)benzhydr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oxalate, dioxalate; 2437-29-8]과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다이렉트 블랙 38[C.I. direct black 038; 1937-37-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렉트 브라운 95[C.I. direct brown 095; 16071-86-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150000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디메틸아미노)-α,α-비스[4-(디메틸아미노)페닐]벤젠메탄올[4-(Dimethylamino)-α,α-bis[4-(dimethylamino)phenyl]benzenemethanol; 467-6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p-아미노아조벤젠[p-Aminoazobenzene; 60-0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204193000	황화염료·황화 건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41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204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2041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20419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200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4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490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5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식용색소 녹색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② 식용색소 적색 제2호 (아마란스) ③ 식용색소 적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④ 식용색소 적색 제3호 ⑤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⑥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엔겔쓰로신) ⑦ 식용색소 청색 제2호 (브릴리안트블루 FCF) ⑧ 식용색소 황색 제4호 (파이트라진) ⑨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⑩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선셋엘로우 FCF) ⑪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⑫ 식용색소 적색 제5호 ⑭ 식용색소 청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⑮ 실리코알루민산 나트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50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205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20500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110000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190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190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중크롬산[Dichromic acid; 13530-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 염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롬산[Chromic acid; 7738-94-5]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수 크롬산[Chromic anhydride; 1333-8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411000	군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4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641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421000	리토폰(lithopone)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42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491000	아연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491000	아연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206495000	코발트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안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495000	코발트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안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화코발트[Cobalt monoxide; 1307-96-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탄산 코발트[Cobalt carbonate; 513-79-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4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0649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64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구리[Copper oxide; 1317-38-0, 1344-70-2, 1317-3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20650000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무기의 자발광도료, 무기의 자발광착색제) ① Pm-147 : 수량 및 농도가 각각 1 *107Bq, 1 × 10^4 (Bq/g)이상의 것 ② H-3 : 수량 및 농도가 각각 1*109Bq, 1 × 106(Bq/g)이상의 것	원자력안전법
	3208101010	에나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8101090	기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8201011	에나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8201019	기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8202011	에나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8202019	기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8901011	에나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8901019	기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8909011	에나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8909019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8909019	기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9101011	에나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9101019	기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9901011	에나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9901019	기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9909011	에나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09909019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09909019	기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2% 이하인 것은 제외)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
	3210001019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0001099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0003010	디스템퍼(distemper)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000309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21290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213101000	유성 물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213102000	수성 물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3213102000	수성 물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21310900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3213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213901000	유성 물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213902000	수성 물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3213902000	수성 물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21390900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3213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2141010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실내용바닥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2141010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실내용바닥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410109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4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실내용바닥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21410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410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5110000	흑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5190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5903000	복사용 잉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5906010	유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5906020	수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5906030	유성·수성 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590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1120000	오렌지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120000	오렌지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1130000	레몬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130000	레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1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190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12500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2500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12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29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301290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1300000	레지노이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300000	레지노이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1901000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901000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1902000	정유의 농축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902000	정유의 농축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1903000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903000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1904200	감초에서 추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904300	홉(hop)에서 추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904400	제충국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904400	제충국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904510	백삼에서 추출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904530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904600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19048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2101000	식품공업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2101000	식품공업용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210201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21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2900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302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2900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302900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2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302900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3001000	향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3001000	향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303001000	향수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3001000	향수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3002000	화장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3002000	화장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303002000	화장수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3002000	화장수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4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쌍커플용 테이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304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420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304911000	페이스파우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4911000	페이스파우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30499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305	두발용 제품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5	두발용 제품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5	두발용 제품류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5	두발용 제품류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3306100000	치약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306100000	치약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6100000	치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6201011	70데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306201019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30620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3307109000	기타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3071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7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7109000	기타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109000	기타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삭제>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7490000	기타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307490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74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307490000	기타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490000	기타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33074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307490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07901000	제모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7901000	제모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307901000	제모제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901000	제모제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901000	제모제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3079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307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307909000	기타	화장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909000	기타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307909000	기타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330790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30790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1111000	약용비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401111000	약용비누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401111000	약용비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401111000	약용비누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401111000	약용비누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40111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401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401119000	기타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401191010	세탁비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4011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화장품(물휴지)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120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402310000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2390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2410000	양이온성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402410000	양이온성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402410000	양이온성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402410000	양이온성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알킬(C=12~14)[(에틸페닐)메틸]디메틸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alkyl(C=12~14)[(ethyl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85409-2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402410000	양이온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24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4024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4024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4024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4024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40242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40242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24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402490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2501000	조제 세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402501000	조제 세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402501000	조제 세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2502000	조제 청정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402502000	조제 청정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250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2902000	조제 세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402902000	조제 세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402902000	조제 세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2903000	조제 청정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402903000	조제 청정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3193000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319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399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4049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404901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404901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404902000	조제 왁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404902000	조제 왁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5200000	목제가구. 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590109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590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407002000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50110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110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110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110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110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1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11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110900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1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11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1901110	커피 크리머 제조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1901110	커피 크리머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1901110	커피 크리머 제조용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1901110	커피 크리머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19011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19011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190119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19011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1902000	카세인 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1902000	카세인 글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1902000	카세인 글루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1902000	카세인 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2110000	건조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2110000	건조한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502190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2190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2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2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290900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29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290900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2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2909000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3001010	젤라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503001010	젤라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3001010	젤라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3001010	젤라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3001010	젤라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503001010	젤라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3001010	젤라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4001010	펩톤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4001010	펩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1010	펩톤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1010	펩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4001010	펩톤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4001010	펩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4001020	펩톤 유도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4001020	펩톤 유도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1020	펩톤 유도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1020	펩톤 유도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4001020	펩톤 유도체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4001020	펩톤 유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4002010	케라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4002010	케라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2010	케라틴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2010	케라틴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4002010	케라틴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4002010	케라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4002020	핵산단백질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4002020	핵산단백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2020	핵산단백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2020	핵산단백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4002020	핵산단백질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4002020	핵산단백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4002030	분리단백질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4002030	분리단백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2030	분리단백질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2030	분리단백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4002030	분리단백질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4002030	분리단백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4002090	기타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뮤코다당단백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2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40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2090	기타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20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504002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40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4002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BSE관리대상 품목임)	사료관리법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또는 화장품법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5101000	덱스트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5101000	덱스트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5101000	덱스트린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505101000	덱스트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5101000	덱스트린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5103000	배소전분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5103000	배소전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5103000	배소전분	원료동물약품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의약품용은 자동승인품목임)	약사법
	3505103000	배소전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5103000	배소전분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5104010	식품용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5104010	식품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5104010	식품용	원료동물약품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의약품용은 자동승인품목임)	약사법
	3505104010	식품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5104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5104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5105010	식품용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5105010	식품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5105010	식품용	원료동물약품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의약품용은 자동승인품목임)	약사법
	3505105010	식품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5105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5105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5105090	기타	원료동물약품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의약품용은 자동승인품목임)	약사법
	3505105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5109010	식품용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5109010	식품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5109010	식품용	원료동물약품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의약품용은 자동승인품목임)	약사법
	3505109010	식품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51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5109090	기타	원료동물약품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의약품용은 자동승인품목임)	약사법
	35051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510909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51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5201000	전분 글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5201000	전분 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5201000	전분 글루	원료동물약품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의약품용은 자동승인품목임)	약사법

	3505201000	전분 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5201000	전분 글루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원료동물약품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의약품용은 자동승인품목임)	약사법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52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5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5209000	기타	원료동물약품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의약품용은 자동승인품목임)	약사법
	3505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5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610100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610100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06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610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0691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350691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06919000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3506991000	비엔나 글루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6991000	비엔나 글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06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69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0699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0710000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710000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710000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710000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710000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50710000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507901000	췌장계 효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7901000	췌장계 효소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7904000	파파인, 브로멜라인과 피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7904000	파파인, 브로멜라인과 피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7906010	아밀라제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7906010	아밀라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7906010	아밀라제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7906010	아밀라제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507906010	아밀라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7906010	아밀라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7906020	프로테아제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7906020	프로테아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7906020	프로테아제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7906020	프로테아제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507906020	프로테아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7906020	프로테아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7907000	펙틴효소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7907000	펙틴효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7907000	펙틴효소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507907000	펙틴효소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7907000	펙틴효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5079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507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50790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507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단,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① 세리치오펩티다제	약사법
	35079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507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601001000	흑색화약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1001000	흑색화약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흑색화약 ② 무연화약 ③ 폭약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1001000	흑색화약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1002000	무연화약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1002000	무연화약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흑색화약 ② 무연화약 ③ 폭약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1002000	무연화약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흑색화약 ② 무연화약 ③ 폭약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100000	도화선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3100000	도화선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흑색화약 ② 무연화약 ③ 폭약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100000	도화선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200000	도폭선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3200000	도폭선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흑색화약 ② 무연화약 ③ 폭약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200000	도폭선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300000	격발뇌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3300000	격발뇌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흑색화약 ② 무연화약 ③ 폭약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300000	격발뇌관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400000	뇌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3400000	뇌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흑색화약 ② 무연화약 ③ 폭약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400000	뇌관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500000	점화기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3500000	점화기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흑색화약 ② 무연화약 ③ 폭약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500000	점화기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600000	전기뇌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603600000	전기뇌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흑색화약 ② 무연화약 ③ 폭약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3600000	전기뇌관	기타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4100000	불꽃제품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신호염관 ② 신호화전 ③ 기타 신호용 화공품 ④ 연화 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⑤ 장남감용 꽃불류(완구용연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신호염관 ② 신호화전 ③ 기타 신호용 화공품 ④ 연화 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⑤ 장남감용 꽃불류(완구용연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4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신호염관 ② 신호화전 ③ 기타 신호용 화공품 ④ 연화 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⑤ 장남감용 꽃불류(완구용연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050000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린[12185-10-3]성냥	산업안전보건법
	3701100000	엑스선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1100000	엑스선용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701302000	인쇄제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1303000	인쇄회로기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1304000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1919100	인쇄제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1999100	인쇄제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2100000	엑스선용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702100000	엑스선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2422000	엑스선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2432000	인쇄제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2442000	인쇄제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02530000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2982000	인쇄제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2983000	인쇄회로기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500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50010	오프셋 복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5001010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50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50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500901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50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7100000	감광유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이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707909200	조색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07909300	세정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707909300	세정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2100000	활성탄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	먹는물관리법
	3802100000	활성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02100000	활성탄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802901000	활성 규조토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	먹는물관리법
	3802901000	활성 규조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02901000	활성 규조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802901000	활성 규조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802903000	활성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02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	먹는물관리법
	3802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04001000	액체 상태인 것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80400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5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06101000	로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06300000	에스테르 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0690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 법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디디티[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DT;50-29-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085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5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8085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캡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59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 법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8599000	기타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5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8085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 [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캡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6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6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6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6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80861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 법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8619000	기타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619000	기타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61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6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80861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데카메트린[Decamethrin; 52918-6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말라티온[Malathion; 121-75-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디오캅[Bendiocarb; 22781-23-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싸이플루트린[Cyfluthrin; 68359-3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122-1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폭서[Propoxur; 114-26-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브로모-2-(4-클로로페닐)-1-(에톡시메틸)-5-(트리플루오로메틸)피롤-3-카보니트릴[4-Bromo-2-(4-chlorophenyl)-1-(ethoxymethyl)-5-(trifluoromethyl)pyrrole-3-carbonitrile; 122453-7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6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6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6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6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80862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 법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8629000	기타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629000	기타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62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6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80862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데카메트린[Decamethrin; 52918-6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말라티온[Malathion; 121-75-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디오캅[Bendiocarb; 22781-23-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싸이플루트린[Cyfluthrin; 68359-3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122-1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폭서[Propoxur; 114-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브로모-2-(4-클로로페닐)-1-(에톡시메틸)-5-(트리플루오로메틸)피롤-3-카보니트릴[4-Bromo-2-(4-chlorophenyl)-1-(ethoxymethyl)-5-(trifluoromethyl)pyrrole-3-carbonitrile; 122453-7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6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6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6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69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80869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 법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8699000	기타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699000	기타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69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6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데카메트린[Decamethrin; 52918-6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말라티온[Malathion; 121-75-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디오캅[Bendiocarb; 22781-23-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싸이플루트린[Cyfluthrin; 68359-3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122-1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폭서[Propoxur; 114-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브로모-2-(4-클로로페닐)-1-(에톡시메틸)-5-(트리플루오로메틸)피롤-3-카보니트릴[4-Bromo-2-(4-chlorophenyl)-1-(ethoxymethyl)-5-(trifluoromethyl)pyrrole-3-carbonitrile; 122453-7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089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9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9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9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8089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노발루론[Novaluron : N-[[[3-Chloro-4-[1,1,2-trifluoro-2-(trifluoromethoxy)ethoxy]phenyl]amino]carbonyl]-2,6-difluorobenzamide; 116714-4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1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및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8919000	기타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08919000	기타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919000	기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91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9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80891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	화학물질관리법
	38089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089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9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9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9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80892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캡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2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 법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8929000	기타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08929000	기타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929000	기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92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9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80892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캡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1,2-Benzisothiazol-3-(2H)-one; 2634-3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치온 구리[Copper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copper salt; 14915-37-8], 피리치온 아연[Zinc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zinc salt; 13463-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구리[Copper dinitrate; 3251-2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31000	제초제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931000	제초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1,1-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과 2-(1,2-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2-(1,1-dimethylpropyl)anthraquinone and 2-(1,2-dimethylpropyl)anthraquin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940000	소독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 법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8940000	소독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08940000	소독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08940000	소독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08940000	소독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808940000	소독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1,2-Benzisothiazol-3-(2H)-one; 2634-3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구리[Copper dinitrate; 3251-2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91000	살서제(쥐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8991000	살서제(쥐약)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9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 법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899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질산 구리[Copper dinitrate; 3251-2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8099100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099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1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산화억제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11900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11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811900000	기타	자동차용 연료첨가제를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검사 받은 후 그 합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3811900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1190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나프탈렌[Naphthalene; 91-2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디페닐구아니딘[1,3-Diphenylguanidine; 102-0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지람[Ziram; 137-30-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칠디치오카밤산 나트륨[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 128-0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에틸디티오카밤산 아연[Bis(diethylcarbamodithioato-S,S')zinc; Zinc diethyldithiocarbamate; 14324-5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부틸디티오카밤산 아연[Zinc dibutyldithiocarbamate; 136-2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21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티람[Thiram; 137-2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H)-벤조티아졸티온[2(3H)-Benzothiazolethione; 149-3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이미다졸리딘티온[2-Imidazolidinethione; 96-4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2391000	산화방지 조제품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페닐-1-나프탈렌아민[N-Phenyl-1-naphthalenamine; 90-3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비스(1,1-디메틸에틸)페놀[2,4-Bis(1,1-dimethylethyl)phenol; 96-7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주석 비스(2-에틸헥실 메르캅토아세테이트)[Dimethyltin bis(2-ethylhexyl mercaptoacetate); 10-Ethyl-4,4-dimethyl-7-oxo-8-oxa-3,5-dithia-4-stannatetradecanoic acid 2-ethylhexyl ester; 57583-35-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메틸-1-도데칸아민[N,N-Dimethyl-1-dodecanamine; N,N-Dimethyllaurylamine; 112-18-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23920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123920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메틸주석 비스(2-에틸헥실 메르캅토아세테이트)[Dimethyltin bis(2-ethylhexyl mercaptoacetate); 10-Ethyl-4,4-dimethyl-7-oxo-8-oxa-3,5-dithia-4-stannatetradecanoic acid 2-ethylhexyl ester; 57583-35-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15122000	팔라듐이나 팔라듐화합물의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5192000	활성물질로서 티타늄이나 티타늄화합물의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염화 티타늄[Titanium tetrachloride;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5901000	반응시작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5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사염화 티타늄[Titanium tetrachloride;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알루미늄[Aluminium trichloride; 7446-70-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9001000	유압제동액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819002000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820001000	부동 조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0001000	부동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인산염 또는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급수용 방청제) ②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③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관리법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11000	진단 시험 도구모음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12000	면역물품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1900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21000	면역물품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2900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30000	혈액형 분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92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92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92019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9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92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92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92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92099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93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93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193099	기타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 코노 독소(Conotoxin) • 시가 독소(Shiga toxin) • 포도상구균 장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 복어독(Tetrodotoxin) • 베로톡신(Verotoxin) •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 아플라톡신(Aflatoxins) • 아브린(Abrin) • Diacetoxyscirpenol toxin • T-2 toxin • 볼켄신 독소(Volkensin toxin)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3822193099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290002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3110000	스테아린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3110000	스테아린산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3110000	스테아린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3110000	스테아린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823120000	올레인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3120000	올레인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3120000	올레인산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3120000	올레인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3191000	팔미트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3191000	팔미트산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3191000	팔미트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3191000	팔미트산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3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319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382319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3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3199000	기타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370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370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370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37090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37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3709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370909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37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370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알코올, (C=12～14)[Alcohols, (C=12～14); 80206-8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코올, (C=11～14)-이소-, (C=13)-리치 [Alcohols, (C=11～14)-iso-, (C=13)-rich; 68526-8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410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600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②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③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관리법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②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③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관리법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1%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s) ● 헥사브로모바이페닐(Hexabromobiphenyl;36355-01-8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②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③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관리법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디디티(CAS No. 50-29-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알드린(Aldrin;309-00-2) ● 엔드린(Endrin;72-20-8) ● 디엘드린(Dieldrin;60-57-1) ● 톡사펜(Toxaphene;8001-35-2) ● 클로르데인(Chlordane;57-74-9) ● 헵타클로르(Heptachlor;76-44-8) ● 미렉스(Mirex;2385-85-5) ● 클로르데콘(Chlordecone;143-50-0) ●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엔도설판(Endosulfan;115-29-7), 엔도설판 설페이트(Endosulfan sulfate;1031-07-8), 알파-엔도설판(α-Endosulfan;959-98-8), 베타-엔도설판(β-Endosulfan;33213-65-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린데인(Lindane;58-89-9) ●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Alpha hexachlorocyclohexane;319-84-6) ●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Beta hexachlorocyclohexane;319-85-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obenzene, PeCB;608-93-5) ●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118-74-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과불화옥테인설폰산(PFOS;1763-23-1) ●과불화옥테인설포닐플로라이드(PFOS-F;307-35-7) ●포타슘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Potass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795-39-3) ●리튬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Lith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9457-72-5) ●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9081-56-9) ●다이에탄올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Diethano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70225-14-8) ●테트라에틸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Tetraethy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56773-42-3) ●다이데실다이메틸암모늄 과불화옥테인 설포네이트(Didecyldimethylammonium perfluorooctane sulfonate;251099-16-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4890000	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85535-84-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91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92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9922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249922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2499221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24992290	기타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2499229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24992900	기타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249929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2499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993910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학품으로 주로 구성된 그 밖의 혼합물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9939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994300	스케일방지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995300	수정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24996400	수화실리카겔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코발트[Cobalt chloride; 7646-7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4996500	방청제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인산염 또는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급수용 방청제)	먹는물관리법
	3824996500	방청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2499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산코발트[Cobalt sulfate; 10124-43-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코발트[Cobalt chloride; 7646-7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4997300	소포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997400	발포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997500	조제 탄산칼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997600	액정용 조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999010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3824999020	추잉껌 베이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999030	나프텐산과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999053	전해액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화 리튬, 오황화 인, 브롬화 리튬과 요오드화 리튬의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s of lithium sulfide, phosphorus pentasulfide, lithium bromide and lithium iodid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4999059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화 리튬, 오황화 인, 브롬화 리튬과 요오드화 리튬의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s of lithium sulfide, phosphorus pentasulfide, lithium bromide and lithium iodid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499909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온열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38249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②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③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관리법
	38249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3824999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499909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499909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3824999090	기타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38249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방산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a,4,4a,5,8,8a,9,9a-옥타히드로-4,9:5,8-디메타노-1H-벤즈[f]인덴과 4,4a,4b,5,8,8a,9,9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1H-플루오렌의 혼합물[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트리헥실포스핀,산화트리-n-옥틸포스핀,산화디옥틸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혼합물[Mixtureoftrihexylphosphineoxide,tri-n-octylphoshineoxide,dioctylmonooctyldihexylphosphineoxid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μ-[4-(히드록시-kO)-3,8-비스[[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kN)-2-나프탈렌술포나토](5-)]비스[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중크롬산(5-), 삼수소 이나트륨[[μ-[4-(Hydroxy-kO)-3,8-bis[[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kN)-2-naphthalenesulfonato](5-)]bis[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dichromate(5-), disodium trihydrogen; 874299-5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3,3'-[[6-[(2-히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2,4-디일]비스[아미노(2-메틸-4,1-페닐렌)아조]]비스[1,5-나프	화학물질관리법
	382499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방산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a,4,4a,5,8,8a,9,9a-옥타히드로-4,9:5,8-디메타노-1H-벤즈[f]인덴과 4,4a,4b,5,8,8a,9,9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1H-플루오렌의 혼합물[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트리헥실포스핀,산화트리-n-옥틸포스핀,산화디옥틸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혼합물[Mixtureoftrihexylphosphineoxide,tri-n-octylphoshineoxide,dioctylmonooctyldihexylphosphineoxid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μ-[4-(히드록시-kO)-3,8-비스[[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kN)-2-나프탈렌술포나토](5-)]비스[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중크롬산(5-), 삼수소 이나트륨[[μ-[4-(Hydroxy-kO)-3,8-bis[[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kN)-2-naphthalenesulfonato](5-)]bis[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dichromate(5-), disodium trihydrogen; 874299-5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3,3'-[[6-[(2-히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2,4-디일]비스[아미노(2-메틸-4,1-페닐렌)아조]]비스[1,5-나프	화학물질관리법
	3824999090	기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3824999090	기타	9.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4999090	기타	10.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824999090	기타	1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온열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824999090	기타	12.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382499909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2499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Hexabromocyclododecane)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HBCD;25637-99-4), 1,2,5,6,9,10-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1,2,5,6,9,10-HBCD;3194-55-6), 알파-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α-HBCD;134237-50-6), 베타-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β-HBCD;134237-51-7), 감마-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γ-HBCD;134237-5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82499909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3824999090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검역본부장에게 승인을 받은 야구장용 토양 물질로서 채취지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수입 가능)	식물방역법
	38249990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하소활석(Calcined Talc)	석면안전관리법
	3825100000	생활폐기물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정으로부터 수거된 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II)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③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II,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100000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825200000	하수 찌꺼기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하수슬러지(AC2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301000	제3005호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②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③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관리법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303000	소호 제4015.12호의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825303000	소호 제4015.12호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304000	소호 제9018.3호의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3825304000	소호 제9018.3호의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25304000	소호 제9018.3호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할로겐화 폐유기용제(A3150) ②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③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④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70) ⑤ 달리 불류되지 않은 무기할로겐화합물(AB120) ⑥ 염화불화탄소(AC150) ⑦ 할론(AC1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4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4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에테르(A3080) ② 비할로겐화 폐유기용제(A3140) ③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④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⑤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금속 세척시 발생되는 폐용액(A1060) ②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③ 압연유(AC060) ④ 브레이크액(AC070) ⑤ 부동액(AC0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오니류 ② 폐페인트 및 폐락카 ③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석유코크스 및 역청탄의 제조,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A3010) ②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③ 폐질산섬유소 (A3060) ④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A3070) ⑤ 폐에테르(A3080) ⑥ 폐유기인화합물(A3130) ⑦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⑧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⑨ 유기물질의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에서 발생되는 페타르잔재(아스팔트 시멘트 제외)(A3190) ⑩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⑪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⑫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40) ⑬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050)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 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 - 유기시안화물" ⑭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70) ⑮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6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3825690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8256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② 폐석고 및 폐석회류 ③ 폐페인트 및 폐락카 ④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6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1100) ②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③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A2020) ④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A2040)" ⑤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⑥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⑦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40) ⑧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050)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 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 - 유기시안화물" ⑨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⑩ 폐산 또는 폐알카리 용액(A4090) ⑪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1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과 동종인 것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과 동종인 것" ⑫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20) ⑬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범주에 해당하고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825904000	그 밖의 폐토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생활폐기물 또는 하수 찌꺼기로 한정)은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38271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을 기본 재료로 한 세정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119000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120000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13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14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20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을 함유하는 것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310000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320000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390000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400000	메틸 브로마이드(브로모메탄)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한 것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510000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을 함유한 것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R-508A ② R-508B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590000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R-413A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610000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을 질량 기준으로 15% 이상 함유한 것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620000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55% 이상 함유하고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630000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4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640000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을 질량 기준으로 30% 이상 함유하고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650000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디플루오로메탄(HFC-32)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하고 펜타플루오르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680000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690000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2790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190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HDPE)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2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3110000	발포성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3110000	발포성의 것	다음의 것으로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귀마개 ② 귀덮개	산업안전보건법
	3903110000	발포성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903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3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에이·비·에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에이·비·에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903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다음의 것으로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귀마개 ② 귀덮개	산업안전보건법
	3904220000	가소화 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4220000	가소화 한 것	다음의 것으로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귀마개 ② 귀덮개	산업안전보건법
	390440000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4900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귀마개 ② 귀덮개	산업안전보건법
	3905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초산비닐수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5990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39059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귀마개 ② 귀덮개 ① 의치상수리용레진 ② 경질의치상이장재 ③ 연질의치상이장재 ④ 광중합형의치상용레진 ⑤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⑥ 자가중합형의치상용레진 ⑦ 화학중합형의치상용레진 ⑧ 트레이용레진 ⑨ 인상전처치제 ⑩ 비왁스계의치받침 ⑪ 왁스계의치받침 ⑫ 레진계인공치아 ⑬ 성형된치관 ⑭ 의치용이장·전장	의료기기법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메틸-2-프로펜산 2-(디메틸아미노)에틸 중합체와 1-브로모테트라데칸 화합물[2-(Dimethyl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homopolymer compd. with 1-bromotetradecane; 1306617-5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와 그 공중합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와 그 공중합체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광중합형의치상용레진 ②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③ 자가중합형의치상용레진 ④ 화학중합형의치상용레진 ⑤ 트레이용레진 ⑥ 인상전처치제 ⑦ 비왁스계의치받침 ⑧ 왁스계의치받침	의료기기법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와 그 공중합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프로펜산 부틸과 1,3-사이클로헥산디메탄아민의 중합체와 부틸 글리시딜 에테르의 반응생성물[Butyl 2-propenoate polymer with 1,3-cyclohexanedimethanamine, reaction products with Bu glycidyl ether; 1257085-8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06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6909000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치상광택·경화제	의료기기법
	3906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2,6,6-테트라메틸-4-아미노피페리딘과 도데실 아크릴산, 테트라데실 아크릴산 혼합물의 반응생성물[2,2,6,6,-Tetramethyl-4-aminopiperidine reaction product with mixture of dodecyl acrylate and tetradecyl acrylate; 부여안됨]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06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7210000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907291010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907291010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907291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C=14~18) 및 (C=16~18)-불포화 알코올과 산화에틸렌의 중합체[Alcohols, (C=14~18) and (C=16~18)-unsatd. polymer with ethylene oxid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07292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과 그 공중합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729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7292010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907292010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073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PC)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07500000	알키드수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76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HDPE)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07910000	불포화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799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HDPE)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08101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08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0890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프로펜아미드 중합체와 클로로메탄, 디메틸아민, 포름알데히드의 반응 생성물[2-Propenamide homopolymer reaction products with chloromethane, di-methylamine and formaldehyde; 70750-20-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소화 피마자유 지방산, 데칸산, 옥탄산, 에틸렌디아민과 테트라메틸렌디아민의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s of hydrogenated castor-oil fatty acids, decanoic acid, octanoic acid, ethylenediamine and tetramethylenediami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4-메틸-2-펜탄올)이타코네이트와 α-메틸벤질아민의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 of bis(4-methyl-2-pentanol)itaconate and α-methylbenzylami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불포화지방산(C=18) 삼합체와 트리에틸렌테트라아민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trimers reaction products with triethylenetetramine; 162627-18-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에텐일-8-옥타데센디오산, N1-(2-아미노에틸)-1,2-에탄디아민, 8,12-에이코사디엔디오산과 피페라진의 중합체[12-Ethenyl-8-Octadecenedioic acid polymer with N1-(2-aminoethyl)-1,2-ethanediamine, 8,12-eicosadienedioic acid and piperazine; 1331747-2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아미노에틸)-1,2-에탄다이아민과 글리시딜 톨릴 에테르의 반응생성물[N-(2-Aminoethyl)-1,2-ethanediamine reaction products with glycidyl tolyl ether; 84144-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	화학물질관리법
	3909100000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자동차용 촉매제를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검사 받은 후 그 합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3909200000	멜라민수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93	그 밖의 아미노수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09310000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안산[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101-68-8; 26447-40-5; 5873-54-1; 2536-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09310000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9093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N'-비스[3-(디메틸아미노)프로필]우레아와 1,1'-옥시비스[2-클로로에탄]의 중합체[N,N'-Bis[3-(dimethylamino)propyl]urea polymer with 1,1'-oxybis[2-chloroethane]; 68555-3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 중합체, 2-에틸-1-헥산올-블럭[1,5-Diisocyanatopentane homopolymer, 2-ethyl-1-hexanol-blocked; 1976005-0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아민의 반응생성물[Formaldehyde polymer with benzenamine; 25214-70-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09400000	페놀수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포름알데히드 1,3-벤젠디메탄아민과 페놀의 중합체[Formaldehyde polymer with 1,3-benzenedimethanamine and phenol; 57214-10-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09500000	폴리우레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09500000	폴리우레탄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메틸-1-프로판올과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의 반응생성물[2-Methyl-1-propanol reaction products with 1,5-diisocyanatopentane; 1357171-3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556-6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10009010	실리콘오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0009010	실리콘오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556-6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10009020	실리콘고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0009020	실리콘고무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556-6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100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0009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556-6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91000909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911101000	석유수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1102000	쿠마론, 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1200000	폴리(1,3-페닐렌 메틸포스포네이트)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911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1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더불유에스시피[WSCP; 31512-74-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의 염산염[Poly(hexamethylenebiguanide) hydrochloride; PHMB; 27083-27-8, 32289-58-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3,3,4,4-헥사플루오로-4-[(트리플루오로에테닐)옥시]부탄산 메틸 중합체[2,2,3,3,4,4-Hexafluoro-4-[(trifluoroethenyl)oxy]butanoic acid, methyl ester homopolymer, hydrolyzed; 661476-43-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인산염[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PHMG phosphate; 89697-78-9] 및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염산염[Polyhexamethyleneguanidine hydrochloride; PHMG chloride; 57028-96-3]과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1,2-에탄디일비스(옥시)]비스에탄아민과 구아니딘 염산염의 중합체 [2,2'-[1,2-Ethanediylbis(oxy)]bisethanamine polymer with guanidine monohydrochloride; 374572-91-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비페닐]-2-올과 옥시란의 중합체 [[1.1'-Biphenyl]-2-ol polymer with oxirane; 91792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테닐벤젠, 2,5-퓨란디온과 1,1'-(1,1-디메틸-3-메틸렌-1,3-프로판디일)비스벤젠의 공중합체, 메틸옥시란과 옥시란 중합체의 2-아미노프로필 메틸 에테르 및 N,N-디메틸-1,3-프로판디아민, 옥시란, 모노[알킬(C=10~16)옥시메틸]유도체와 벤조산 화합물(4차)의 반응생성물[Ethenylbenzene copolymer with 2,5-furandione and 1,1'-(1,1-dimethyl-3-methylene-1,3-propanediyl)bisbenzene reaction products with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화학물질관리법
	391190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과불화헥세인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그 염류와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소화하지 않은 질소섬유소(질소함량이 12.2% 이상의 것)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9123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231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9123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2399000	기타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91290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알긴산나트륨)	먹는물관리법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3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수처리제(알긴산나트륨)	먹는물관리법
	3913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39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913909000	기타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3913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3909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3913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13909000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이온교환수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4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이온교환수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5101000	제조 당시 필름·시트(sheet)·판·박(箔) 상태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101000	제조 당시 필름・시트(sheet)・판・박(箔) 상태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④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102000	제조 당시 파이프・호스 상태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102000	제조 당시 파이프・호스 상태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Ⅰ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④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⑤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1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1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Ⅰ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④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⑤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수지(단, 고체상의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Ⅰ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④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⑤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Ⅰ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④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⑤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Ⅰ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④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⑤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905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5905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③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Ⅰ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A4130) ④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⑤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690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6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710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710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1729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17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17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9173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73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1732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9173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733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7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73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7400000	연결구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8101000	플라스틱제 바닥깔개(염화비닐 중합체)－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실내용 바닥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8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890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19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19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430000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0430000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4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04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5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05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71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71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7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920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920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09300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9400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991000	항공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에 한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9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09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1110000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2000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3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9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9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93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921194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9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9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1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904010	경질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1904020	연질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1906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1906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190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190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190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190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1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1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2102000	세면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2103000	설거지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2200000	변기용 시트와 커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3922901000	비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922901000	비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2901000	비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922901000	비데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3922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2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물놀이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392330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330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340000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340000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3500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3500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3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3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4902000	탁상보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49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4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4909000	기타	[약사법] 1.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생리컵	약사법
	392490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392510000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52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530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530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창문블라인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925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5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①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926101000	필통과 지우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학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3926101000	필통과 지우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102000	바인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으로서 감전에 위험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피부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장갑(전기용) ② 안전장갑(화학물질용) ③ 화학물질용 보호복	산업안전보건법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6300000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40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640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902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903000	레이블과 태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905000	그림틀・사진틀・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906000	앨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90900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3926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926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물놀이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926909000	기타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3926909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귀마개 ② 귀덮개	산업안전보건법
	3926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92690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001300000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0023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 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고무분말,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05910000	판·시트(sheet)·스트립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4006904000	고무디스크· 링·와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008119000	기타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4011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1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1109000	기타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4011201010	림의 직경이 49.53센티미터 미만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1201010	림의 직경이 49.53센티미터 미만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1201010	림의 직경이 49.53센티미터 미만의 것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40112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12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1201090	기타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4011202010	림의 직경이 49.53센티미터 미만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1202010	림의 직경이 49.53센티미터 미만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1202010	림의 직경이 49.53센티미터 미만의 것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40112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1202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1202090	기타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4011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1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1209000	기타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4011400000	모터싸이클용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170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11701000	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117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1180	건설용·광산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118010	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118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118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11809010	림(rim)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118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11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 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고무분말,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120000	버스용·화물자동차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012120000	버스용·화물자동차용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2120000	버스용·화물자동차용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 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고무분말,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130000	항공기용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 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고무분말,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012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4012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 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고무분말,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201000	항공기용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 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고무분말,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2090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0122090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2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01220909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타이어 - 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고무분말,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012909020	쿠션 타이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012909030	타이어트래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4012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4100000	콘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4014100000	콘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4901000	젖꼭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014901000	젖꼭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4901000	젖꼭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01490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4014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4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015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로 사용되는 것 ② 감전에 위험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피부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갑(전기용) ③감전에 위험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피부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갑(화학물질용)	산업안전보건법
	4015190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4015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5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015901000	잠수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590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4015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015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감전에 위험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피부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갑(전기용) ② 감전에 위험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피부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갑(화학물질용)	산업안전보건법

	4016910000	바닥깔개와 매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016910000	바닥깔개와 매트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물놀이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6920000	지우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학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016930000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0169400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공기주입식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물놀이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695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695900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016992000	고무밴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016993000	병마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0169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1699900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501011	카우하이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1011	카우하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1013	옥스하이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1014	불하이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1019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1021	카우하이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1021	카우하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101501023	옥스하이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1024	불하이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1029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109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50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901010	버트(butt)와 벤드(bend)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901010	버트(butt)와 벤드(bend)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901099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901099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90109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210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210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229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229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201010	뱀의 원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201030	악어의 원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20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호랑이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390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109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3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103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4110000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110000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110000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104190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1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4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1044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4490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510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530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62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2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2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63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3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3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3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400000	파충류의 원피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6400000	파충류의 원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69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69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07110000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110000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190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1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10000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10000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90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079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113100000	염소의 가죽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3100000	염소의 가죽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3200000	돼지의 가죽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3200000	돼지의 가죽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3300000	파충류의 가죽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3300000	파충류의 가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13900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14100000	샤미가죽(콤비네이션 샤미가죽을 포함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100000	샤미가죽(콤비네이션 샤미가죽을 포함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100000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100000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200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200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115200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 ②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115200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폐가죽물품 분진, 재, 슬러지 및 분말(A3090) ② 가죽물품 제조에 부적합한 가죽이나 합성가죽 폐기물(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것)(A3100) ③ 6가크롬화합물 또는 생체독성물질 또는 전염성 물질 함유한 양피처리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죽 폐기물(A31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01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1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1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1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1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1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트렁크, 슈트, 케이스, 가방에 한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1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1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12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212109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212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12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12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2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2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22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2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22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2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221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2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2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핸드백에 한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22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22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3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3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231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3110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23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3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포켓, 핸드백에 넣어다는 물품에 한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32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32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911000	가죽으로 만든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29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9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기타에 한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92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92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203101010	코트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1010	코트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1060	바지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1060	바지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3010	코트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3010	코트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3050	조끼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3050	조끼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3060	바지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3060	바지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3070	스커트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3070	스커트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3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반사안전조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3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3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9010	코트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9010	코트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1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반사안전조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1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211000	야구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211000	야구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211000	야구장갑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03212000	골프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212000	골프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212000	골프장갑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203213000	스키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213000	스키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213000	스키장갑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203215000	배팅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215000	배팅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215000	배팅장갑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2032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2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2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203291000	작업용 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291000	작업용 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291000	작업용 장갑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203292000	방한용 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292000	방한용 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292000	방한용 장갑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2032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2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203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20330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30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3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3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3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3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3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벨트와 띠에 한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03400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3400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5002100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05002900	그 밖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205002900	그 밖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205002900	그 밖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050029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4301802000	오파섬의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2000	오파섬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2000	오파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1802000	오파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1802000	오파섬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4301803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3000	라쿤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3000	라쿤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1803000	라쿤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1803000	라쿤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4301804000	코요테의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4000	코요테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4000	코요테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1804000	코요테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1804000	코요테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4301805000	토끼의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5000	토끼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5000	토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1805000	토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1805000	토끼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4301806000	사향쥐의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6000	사향쥐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6000	사향쥐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1806000	사향쥐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1806000	사향쥐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430180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30180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9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9000	기타	호랑이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8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18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190000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430190000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90000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90000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호랑이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190000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190000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	모피(유연처리, 드레스 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	모피(유연처리, 드레스 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	모피(유연처리, 드레스 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호랑이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110000	밍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110000	밍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191000	비버(beaver)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191000	비버(beaver)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192000	사향쥐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192000	사향쥐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193000	여우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193000	여우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195000	친칠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195000	친칠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196000	오파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196000	오파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197000	라쿤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197000	라쿤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198000	코요테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198000	코요테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199010	면양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199010	면양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와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와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1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1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201000	밍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201000	밍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202000	토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202000	토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203000	비버(beaver)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203000	비버(beaver)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204000	사향쥐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204000	사향쥐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205000	여우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205000	여우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207000	친칠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207000	친칠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209020	라쿤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209020	라쿤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209030	코요테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209030	코요테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2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2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3101100	밍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3101100	밍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3101200	토끼의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1200	토끼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1200	토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3101200	토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03101600	여우의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1600	여우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1600	여우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3101600	여우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31019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03102100	밍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3102100	밍크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3102200	토끼의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2200	토끼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2200	토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3102200	토끼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3102600	여우의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2600	여우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2600	여우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3102600	여우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3102920	라쿤의 것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2920	라쿤의 것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2920	라쿤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3102920	라쿤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31029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299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2990	기타	호랑이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1029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31029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390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900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900000	기타	호랑이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303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3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4001000	인조모피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4001000	인조모피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401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401110000	침엽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 참조)	식물방역법
	4401110000	침엽수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1120000	활엽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4 참조)	식물방역법
	4401120000	활엽수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1210000	침엽수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1210000	침엽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1210000	침엽수류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1221000	펄프 제조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1221000	펄프 제조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122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122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122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목재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1320000	목재 브리켓(briquette)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1320000	목재 브리켓(briquette)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1320000	목재 브리켓(briquette)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13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13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4013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목재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013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01390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1390000	기타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4014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1410000	톱밥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1410000	톱밥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14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1490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21010	성형목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101010	착화제가 포함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101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10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20	쉘(shell)이나 너트(nut)로 만든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2010	성형 목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201010	착화제가 포함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201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20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9010	성형 목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90101	구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901011	착화제가 포함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90101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901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9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909010	백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2909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110000	침엽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 참조)	식물방역법
	4403110000	침엽수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121000	열대산 목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5 참조)	식물방역법
	4403121000	열대산 목재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12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6 참조)	식물방역법
	440312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11000	적송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6 참조)	식물방역법

	4403211000	적송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12000	라디에타소나무 (radiata pine)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7 참조)	식물방역법
	4403212000	라디에타소나무 (radiata pine)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1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8 참조)	식물방역법
	440321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1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3221000	적송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0 참조)	식물방역법
	4403221000	적송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22000	라디에타소나무 (radiata pine)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1 참조)	식물방역법
	4403222000	라디에타소나무 (radiata pine)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2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2 참조)	식물방역법
	440322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2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323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4 참조)	식물방역법
	440323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3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5 참조)	식물방역법
	440323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4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7 참조)	식물방역법
	440324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4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8 참조)	식물방역법
	440324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51000	삼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0 참조)	식물방역법
	4403251000	삼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520	미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5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5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252020	헴록(hemlock)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52020	헴록(hemlock)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252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52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25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3 참조)	식물방역법
	440325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55000	편백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55000	편백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25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4 참조)	식물방역법
	440325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5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3261000	삼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6 참조)	식물방역법
	4403261000	삼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620	미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6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6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262020	헴록(hemlock)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62020	헴록(hemlock)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262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62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26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9 참조)	식물방역법
	440326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65000	편백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65000	편백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26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40 참조)	식물방역법
	440326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26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420000	티크(Teak)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420000	티크(Teak)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491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491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492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492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4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사펠리(Sapelli)・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코레(Makoré)・이로코(Iroko)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4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사펠리(Sapelli)・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코레(Makoré)・이로코(Iroko)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494000	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494000	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495000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495000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4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49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3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3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4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 참조)	식물방역법
	440394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5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4 참조)	식물방역법
	440395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6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5 참조)	식물방역법
	440396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71000	포플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7 참조)	식물방역법
	4403971000	포플러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72000	사시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8 참조)	식물방역법
	4403972000	사시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80000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9 참조)	식물방역법
	4403980000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의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91010	자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91010	자단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91020	흑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91020	흑단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91040	물푸레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91040	물푸레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91050	호두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91050	호두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9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9109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92000	리그넘 바이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92000	리그넘 바이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93030	단풍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93030	단풍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93040	느릅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93040	느릅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93060	피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93060	피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94000	오동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94000	오동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39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399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4100000	침엽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4100000	침엽수류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404200000	활엽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4200000	활엽수류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5000000	목모와 목분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5000000	목모와 목분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405000000	목모와 목분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4406110000	침엽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6120000	활엽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6910000	침엽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 참조)	식물방역법
	4406920000	활엽수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4 참조)	식물방역법
	44071110	적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110	적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11010	방부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11010	방부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11010	방부처리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111020	난연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11020	난연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11020	난연처리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111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1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1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5 참조)	식물방역법
	44071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1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6 참조)	식물방역법
	440711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1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2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8 참조)	식물방역법
	440712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2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22010	방부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22010	방부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22010	방부처리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122020	난연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22020	난연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22020	난연처리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122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22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13	에스-피-에프(S-P-F)[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소나무(피누스(Pinus)속)와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31000	방부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31000	방부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31000	방부처리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132000	난연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32000	난연처리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32000	난연처리한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13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3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140000	헴퍼(Hem-fir)[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트수가 헤테로필라(Tsuga heterophylla))과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40000	헴퍼(Hem-fir)[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트수가 헤테로필라(Tsuga heterophylla))과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191000	삼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1 참조)	식물방역법
	4407191000	삼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1000	삼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3 참조)	식물방역법
	440719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2020	헴록(hemlock)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4 참조)	식물방역법

	4407192020	헴록(hemlock)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검사를 마친 후 규격·품질에 대하여 표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2020	헴록(hemlock)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2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5 참조)	식물방역법
	4407192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209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3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6 참조)	식물방역법
	4407193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3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4000	낙엽송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7 참조)	식물방역법
	4407194000	낙엽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4000	낙엽송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5000	편백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8 참조)	식물방역법
	4407195000	편백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5000	편백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9 참조)	식물방역법
	440719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19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속]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7220000	비롤라(Virola)·임부야(Imbua)·발사(Balsa)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220000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20000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30000	티크(Teak)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30000	티크(Teak)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70000	사팰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270000	사팰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70000	사팰리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80000	이로코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280000	이로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80000	이로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91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291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91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꼬레(Makoré)・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2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꼬레(Makoré)・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꼬레(Makoré)・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29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9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29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속]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6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6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6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71000	포플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4 참조)	식물방역법
	4407971000	포플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71000	포플러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72000	사시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5 참조)	식물방역법
	4407972000	사시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72000	사시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1010	자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91010	자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1010	자단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1010	자단(rosewood)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7991020	흑단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91020	흑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1020	흑단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1040	호두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91040	호두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1040	호두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1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91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109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7993040	느릅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93040	느릅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3040	느릅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3060	피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93060	피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3060	피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4000	오동나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94000	오동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4000	오동나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799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799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10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10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109100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109100	합판 제조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109200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109200	무늬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109910	삼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109920	미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109950	낙엽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109960	가문비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1099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1099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313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19011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19012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1901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19021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19022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1902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399011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12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1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21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22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2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31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32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3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41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42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4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51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51	합판 제조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399052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52	무늬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39905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59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399091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91	합판 제조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399092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92	무늬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39909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399099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901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1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909150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150	합판 제조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909160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160	무늬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909191	자단(Rosewood)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191	자단(Rosewood)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909192	흑단(Ebony wood)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193	물푸레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194	호두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195	참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19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210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210	합판 제조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909220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220	무늬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9092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2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909370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380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391	사시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392	포플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393	단풍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394	느릅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395	자작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396	피나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410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420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4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910	합판 제조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910	합판 제조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909920	무늬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920	무늬목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89099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890999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9101000	벽판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9101000	벽판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101000	벽판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101000	벽판재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9102000	바닥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9102000	바닥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102000	바닥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102000	바닥재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91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910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10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1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9221000	벽판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 참조)	식물방역법
	4409221000	벽판재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221000	벽판재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9222000	바닥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4 참조)	식물방역법
	4409222000	바닥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222000	바닥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222000	바닥재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922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5 참조)	식물방역법
	4409229000	기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2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0922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09291000	벽판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9291000	벽판재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409291000	벽판재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292000	바닥재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9292000	바닥재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409292000	바닥재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092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09299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409299000	기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0119000	기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0129000	기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0191000	웨이퍼보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019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0900000	기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1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129000	기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1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139000	기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1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149010	마루판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149090	기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9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929010	마루판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929090	기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9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939010	마루판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939090	기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9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1949000	기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할 수 있음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10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10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1010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1010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102000	마루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102000	마루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109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10909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2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2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2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209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401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40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40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401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4019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40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402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402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402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4029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5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5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5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509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6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6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6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609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7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7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70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1709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3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4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9100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9100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9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399000	기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4	단판적층재(LVL)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4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41100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41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4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42100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42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4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49100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49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5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5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51000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51000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520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520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590000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590000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1000	합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1000	합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91	마루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91	마루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91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91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91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91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9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99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199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21000	합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21000	합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2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291	마루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291	마루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291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291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29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299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299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91000	합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91000	합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9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991	마루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991	마루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991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991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999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999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299999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플레이트 모양, 스트립 모양, 프로파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4100000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4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5	목재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로 만든 케이블드럼, 목재로 만든 팰릿(pallet), 박스 팰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본문 제71조 참조)	식물방역법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4415200000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6000000	목재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6000000	목재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17000000	목재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신발의 나무로 만든 골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공구의 손잡이, 비의 손잡이, 브러시의 손잡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4418110000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1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210000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2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300000	기둥과 들보(소호 제4418.81호부터 제4418.89호까지의 물품을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500000	지붕을 이는 판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500000	지붕을 이는 판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73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 참조)	식물방역법
	441873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73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4 참조)	식물방역법
	441873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74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6 참조)	식물방역법
	441874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74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7 참조)	식물방역법
	441874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75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75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9 참조)	식물방역법
	441875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79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7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810000	집성재[글루램(glulam)]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810000	집성재[글루램(glulam)]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820000	직교집성판[씨엘티(CLT)나 엑스-램(X-lam)]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830000	아이빔(I beam)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8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9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1 참조)	식물방역법
	44189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920000	셀룰러우드패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920000	셀룰러우드패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18920000	셀룰라우드패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3 참조)	식물방역법
	4418920000	셀룰라우드패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8920000	셀룰라우드패널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3 참조)	식물방역법
	4418999000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419	목재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191	대나무로 만든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19110000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19120000	젓가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19120000	젓가락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419190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19190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419203000	젓가락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41920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4199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19901000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19902000	대접(공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19903000	젓가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19903000	젓가락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41990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1990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420110000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201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209090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21200000	관(棺)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421913000	이쑤시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4219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21919000	기타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다만,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제외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4421993000	이쑤시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421993000	이쑤시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2199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21999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생활용구, 욕실용구"를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4421999000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421999010	집성판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4421999090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4501100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501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50190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목재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50190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50200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503100000	마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504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601211000	매트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601211000	매트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601212000	발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601212000	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601290000	기타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46019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46019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6019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601940000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601990000	기타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종이, 셀룰로오스, 플라스틱 등 비식물성 재료만으로 구성된 것은 제외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4602111000	바구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602111000	바구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6021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6021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6021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602191000	골풀제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60219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4602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602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47010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100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3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3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3211000	반표백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3212000	표백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3291000	반표백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3292000	표백한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4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4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42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42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500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07100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폐지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폐지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707300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폐지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폐지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80254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802551020	복사용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벽지 및 종이장판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802551020	복사용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80255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벽지 및 종이장판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80255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803001000	화장지・안면용 티슈용 원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803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4803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043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043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06100000	황산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06200000	내지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06401000	그라신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064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09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10992000	여과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1151901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1151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115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11600000	왁스·파라핀 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14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벽지 및 종이장판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818100000	화장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818100000	화장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818200000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818200000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81830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81830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8185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818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818900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818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19200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19400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19501000	액체 포장에 적합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195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23200000	여과용 종이와 판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236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236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8236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23690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8237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82390909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4823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911990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5003001000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0030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101110000	깎은 양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5101190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5101210000	깎은 양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5101290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5102110000	캐시미어 염소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5102190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5102200000	동물의 거친 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51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51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103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5103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 ② 동식물성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103300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5103300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 ② 동식물성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104000000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 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5105100000	카드한 양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5105310000	캐시미어 염소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510539000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5105400000	동물의 거친 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5202100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202100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202910000	가닛스톡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202910000	가닛스톡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2029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2029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301100000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1210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12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1301000	아마의 토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302100000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2901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2902010	대마의 토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303101000	황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3102000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3901010	황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3901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3909010	황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3909010	황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303909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3909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305001000	코코넛[코이어(coir)]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5002000	아바카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5003000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5003000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305003000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050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53089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11009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402311020	나일론 66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40263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408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501300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5052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601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56031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60312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6039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56039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6039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560393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560393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60394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607210000	포장용 끈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072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등산용 로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607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607290000	기타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07410000	포장용 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6074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6074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등산용 로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607490000	기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이 착용하는 안전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등산용 로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이 착용하는 안전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5607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607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등산용 로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607909000	기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이 착용하는 안전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560811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608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6081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6081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608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609001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등산용 로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609001000	면으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609002000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면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등산용 로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6090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등산용 로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6090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609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6090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등산용 로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9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50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500000	기타(파일직물의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50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인조잔디(turf)를 포함한다)[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32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2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32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2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32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3210000	인조잔디(turf)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3210000	인조잔디(tur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2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32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3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3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33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3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33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3310000	인조잔디(turf)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3310000	인조잔디(tur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3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33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42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42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4900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4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4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490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양탄자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 전기침대,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카펫,전기장판, 전기침대,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전기방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5903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911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00535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005352000	염색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005353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005354000	날염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005360000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005370000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005380000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005390000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3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1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1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1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61041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4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4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6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삭 제>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910100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910100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10100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101000	티셔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109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9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9901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9901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1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1010	티셔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99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99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9902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9902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2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2010	티셔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9902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9902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2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9903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9903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3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3010	티셔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9903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9903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3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3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9909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9909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9010	티셔츠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9010	티셔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099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099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09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0120000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0120000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120000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120000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0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0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0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0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0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12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12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2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201000	의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12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12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2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202000	부속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13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13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3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301000	의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13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13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3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302000	부속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19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19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9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901000	의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19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19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9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1902000	부속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3001000	제5903호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3001000	제5903호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3001000	제5903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3002000	제5906호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3002000	제5906호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3002000	제5906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3003000	제5907호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3003000	제5907호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3003000	제5907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6921000	작업용 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6921000	작업용 장갑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6921000	작업용 장갑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69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69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69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69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7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7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7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117900000	부분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117900000	부분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17900000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1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1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1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13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13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13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14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14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14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1409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1409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1409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14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14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14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2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2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2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23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23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23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2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2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2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2409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2409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2409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24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24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24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34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4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4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43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3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4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5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5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5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046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6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6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46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46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46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1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1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1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79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79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7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92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92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92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9201000	의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2092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92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92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9202000	부속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93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93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9301000	의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9301000	의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93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93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93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9302000	부속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09901000	의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2099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099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09902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0101000	제5602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0101000	제5602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0101000	제5602호의 직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0102000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0102000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0102000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0102000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으로서 복사열에 의한 위험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피부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방열복 ② 화학물질용 보호복	산업안전보건법
	62104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04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04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04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04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04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04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04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04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05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05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05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05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05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05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0503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0503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0503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1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1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1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1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1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1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1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3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3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3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3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4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4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1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1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14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2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2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2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2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2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2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2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6001000	플라스틱・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	다음의 것으로서 감전에 위험 또는 화학물질용에 대한 피부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장갑(전기용) ② 안전장갑(화학물질용)	산업안전보건법

	62160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60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6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6009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감전에 위험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피부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장갑(전기용) ② 안전장갑(화학물질용)	산업안전보건법
	6217100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7100000	부속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7100000	부속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217900000	부분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217900000	부분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217900000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301100000	전기모포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1100000	전기모포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로 또는 모터가 내장된 기자재에 한함 (전기모포)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40000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40000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5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5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5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5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3029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9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창문블라인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창문블라인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창문블라인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4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4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492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492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4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4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4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4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53200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306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306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3062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텐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306300000	돛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306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30710000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30710000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6307200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307200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스포츠용구명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7200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307200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이 착용하는 안전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6307902000	보자기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7902000	보자기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7903000	드레스 패턴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7903000	드레스 패턴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7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7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7909000	기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이 착용하는 안전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6307909000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재사용가능외과용드레이프 ② 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 ③ 레이저저항성수술용드레이프 ④ 드레이프접착제	의료기기법
	6307909000	기타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약사법
	630790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6307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6307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30800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800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800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6310100000	선별한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10100000	선별한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10100000	선별한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6310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310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31090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다음의 것으로서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죽제 안전화 ② 고무제 안전화 ③ 정전기 안전화 ④ 발등안전화 ⑤ 절연화 ⑥ 절연장화 ⑦ 화학물질용 안전화	산업안전보건법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401921000	스키부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1929010	고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1929010	고무로 만든 것	다음의 것으로서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정전기 안전화 ② 절연화 ③ 절연장화	산업안전보건법
	640192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192909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정전기 안전화 ② 절연화 ③ 절연장화	산업안전보건법
	640192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고령자용 신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401991010	고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401991010	고무로 만든 것	다음의 것으로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절연장화	산업안전보건법
	64019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401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402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스노보드 ● 스키용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402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2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2200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2911000	방한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291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291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다음의 것으로서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죽제 안전화 ② 고무제 안전화 ③ 정전기 안전화 ④ 발등안전화 ⑤ 절연화 ⑥ 절연장화 ⑦ 화학물질용 안전화	산업안전보건법
	640291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299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다음의 것으로서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죽제 안전화 ② 고무제 안전화 ③ 정전기 안전화 ④ 발등안전화 ⑤ 절연화 ⑥ 절연장화 ⑦ 화학물질용 안전화	산업안전보건법
	640299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299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2999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죽제 안전화 ② 고무제 안전화 ③ 정전기 안전화 ④ 발등안전화 ⑤ 절연화 ⑥ 절연장화 ⑦ 화학물질용 안전화	산업안전보건법
	6402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40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으로서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죽제 안전화 ② 고무제 안전화 ③ 정전기 안전화 ④ 발등안전화 ⑤ 절연화 ⑥ 절연장화 ⑦ 화학물질용 안전화	산업안전보건법
	640340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510000	발목을 덮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591000	드레스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5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911000	드레스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912000	등산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913000	편상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91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9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991000	드레스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992000	등산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99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3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4191000	실내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4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510000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5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6405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405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5900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죽제 안전화 ② 고무제 안전화 ③ 정전기 안전화 ④ 발등안전화 ⑤ 절연화 ⑥ 절연장화 ⑦ 화학물질용 안전화	산업안전보건법
	6406201000	바깥바닥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6202000	뒷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6902000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6903000	각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06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50200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200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5001000	헤어네트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5001000	헤어네트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505009011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5009011	합성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50500901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500901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505009021	운동모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5009021	운동모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505009029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5009029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5050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50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506100000	안전모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506100000	안전모자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6506100000	안전모자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승차용안전모 ② 운동용안전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6100000	안전모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승차용 안전모 ● 운동용 안전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승차용안전모 ② 운동용안전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②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안전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5069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스포츠보호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69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5069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65070000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070000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5070000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60110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60110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우산 및 양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우산 및 양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601992000	양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601992000	양산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우산 및 양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601992000	양산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601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602001000	지팡이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고령자용지팡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602001000	지팡이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602001000	지팡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602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6702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704110000	전체가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704194000	가속눈썹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704194000	가속눈썹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704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7041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704205000	가속눈썹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70490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속눈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70490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6802911000	대리석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802930000	화강암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802990000	그 밖의 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내화성 세라믹섬유[Refractory ceramic fibers; 142844-0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6806201000	박리한 질석(蛭石)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질석	석면안전관리법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811400000	석면을 함유한 것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1%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6812800000	청석면의 것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1%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6812910000	의류·의류 부속품·신발·모자류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0.1%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6812990000	기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0.1% 이하인 것은 제외) 다만 석면개스킷제품에 대하여는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①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②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③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킷 ④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산업안전보건법
	6813200000	석면을 함유한 것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중량이 제품중량의 1%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6815990000	기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68159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902200000	알루미나(Al2O3) • 실리카(SiO2),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내화성 세라믹섬유[Refractory ceramic fibers; 142844-0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6907221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3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미끄럼 방지타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90723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미끄럼 방지타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907301000	자기제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미끄럼방지타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907401000	자기제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미끄럼방지타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909110000	자기제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미끄럼방지타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910103000	수세식변기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정격전압이 교류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전기변좌,오물흡입기) ●전기온수기[(전기온수기(끓는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것),순간온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6910104000	소변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910104000	소변기	정격전압이 교류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전기변좌,오물흡입기) ●전기온수기[(전기온수기(끓는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것),순간온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910104000	소변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6910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910109000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전기변좌,오물흡입기) ●전기온수기[(전기온수기(끓는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것),순간온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91010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69101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6911101000	커피 세트・티세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911102000	공기, 대접과 접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911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912001010	커피 세트・티세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912001020	공기, 대접과 접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9120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912002000	가정용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912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914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01002000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깨진 유리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유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001002000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깨진 유리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A201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0023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R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7010100000	앰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020000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0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322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328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333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337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34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34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34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391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39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720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7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8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9642000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택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19710000	베일(얇은 시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200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020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106100000	가루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의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691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692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6922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6923000	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692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700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7002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7003000	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7004000	관과 중공봉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700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8110000	가루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8121000	럼프(lump)·빌릿(billet)·알갱이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812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8131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813901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813902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813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108139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09000000	금을 입힌 비(卑金屬) 금속 또는 은(반가공의 것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10190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10290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102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오니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10390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104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10490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11230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연소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30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11000	잔재물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촉매 ② 연소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11000	잔재물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촉매 ② 연소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③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21000	잔재물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촉매 ② 연소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21000	잔재물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② 폐촉매(A2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2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촉매 ② 연소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2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② 폐촉매(A2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91000	잔재물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촉매 ② 연소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91000	잔재물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② 폐촉매(A2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의 것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촉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II,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촉매 ② 연소잔재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29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② 폐촉매(A203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113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113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13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114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114191000	식탁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115909020	은으로 만든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117191000	목걸이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17191000	목걸이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117191000	목걸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117192000	팔찌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17192000	팔찌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117192000	팔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117193000	귀걸이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17193000	귀걸이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117193000	귀걸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117194000	브로치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17194000	브로치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117195000	반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17195000	반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1171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171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117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117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118909000	기타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한다) 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다.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업자를 포함한다)과 내국통화를 수입하는 경우. 아. 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 화폐수집용・기념용・자동판매기시험용・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자.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7118909000	기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720150000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2042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410000	선삭・세이빙・칩・밀링웨이스트・톱밥・파일링・트리밍・스탬핑(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금속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410000	선삭・세이빙・칩・밀링웨이스트・톱밥・파일링・트리밍・스탬핑(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 비소 - 베릴륨 - 카드뮴 - 납 - 수은 - 셀레늄 - 텔레륨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 베릴륨화합물 - 카드뮴화합물 - 납화합물 - 셀레늄화합물 - 텔레륨화합물" ③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④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⑤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4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금속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4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 비소 - 베릴륨 - 카드뮴 - 납 - 수은 - 셀레늄 - 텔레륨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 베릴륨화합물 - 카드뮴화합물 - 납화합물 - 셀레늄화합물 - 텔레륨화합물" ③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④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⑤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 비소 - 베릴륨 - 카드뮴 - 납 - 수은 - 셀레늄 - 텔레륨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 베릴륨화합물 - 카드뮴화합물 - 납화합물 - 셀레늄화합물 - 텔레륨화합물" ③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④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⑤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21012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216690000	기타	다음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파이프서포트, 틀형 동바리용 부재(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강관 비계용 부재(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틀형 비계용 부재(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시스템 비계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이동식 비계용 부재(주틀, 발 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작업발판(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조임철물(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받침철물(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가설기자재[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4조의2]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산업안전보건법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04390000	기타	다음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참조: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 파이프서포트, 틀형 동바리용 부재(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강관 비계용 부재(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틀형 비계용 부재(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시스템 비계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이동식 비계용 부재(주틀, 발 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작업발판(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조임철물(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받침철물(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가설기자재[참고: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4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0호]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산업안전보건법

	7306302090	기타	다음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파이프서포트, 틀형 동바리용 부재(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강관 비계용 부재(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틀형 비계용 부재(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시스템 비계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이동식 비계용 부재(주틀, 발 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작업발판(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조임철물(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받침철물(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가설기자재[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4조의2]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산업안전보건법
	7308400000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다음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파이프서포트, 틀형 동바리용 부재(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강관 비계용 부재(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틀형 비계용 부재(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시스템 비계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이동식 비계용 부재(주틀, 발 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작업발판(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조임철물(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받침철물(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가설기자재[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4조의2]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산업안전보건법
	7308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휴대용 사다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계량에관한법률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물탱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 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② 상용온도 또는 35℃에서 게이지 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이상인 용기 및 저장탱크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계량에관한법률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10210000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 상용온도 또는 35℃에서 게이지 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이상인 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7310210000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7310210000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102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 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② 상용온도 또는 35℃에서 게이지 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이상인 용기 및 저장탱크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73102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계량에관한법률
	73102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7310290000	기타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73102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11001000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7311001000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것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7311001000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7311002000	용적이 3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인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7311002000	용적이 3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인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7311003000	용적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7311003000	용적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 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② 상용온도 또는 35℃에서 게이지 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이상인용기 및 저장탱크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률
	7311003000	용적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73141400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14200000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1815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11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11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다음의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통관하기 전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수입할 수 있음. ① 이동식부탄연소기 ②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321120000	액체연료용 철제조리기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통관하기 전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수입할 수 있음. ① 이동식부탄연소기 ②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3218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18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다음의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통관하기 전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수입할 수 있음. ① 이동식부탄연소기 ②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321820000	액체연료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기름난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통관하기 전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수입할 수 있음. ① 이동식부탄연소기 ②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321900000	부분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310000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391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391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32392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392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3239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39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4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4908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7325991000	주철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61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6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32690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7402001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스파이스 구리[Speiss copper; 69029-97-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40400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1090)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③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④ 콜탄류,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화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406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구리[Copper; 7440-5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입자 크기 1mm 이상인 경우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7406201000	층상조직인 가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구리[Copper; 7440-5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입자 크기 1mm 이상인 경우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7418109010	식탁용품 · 주방용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418109030	기타 가정용 물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418109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501100000	니켈의 매트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의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1201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의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1209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2101000	음극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210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2200000	니켈 합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504001000	가루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4002000	플레이크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5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5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52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52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61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6102000	박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62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6202000	박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7508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604210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다음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파이프서포트, 틀형 동바리용 부재(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강관 비계용 부재(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틀형 비계용 부재(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시스템 비계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이동식 비계용 부재(주틀, 발 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작업발판(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조임철물(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받침철물(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가설기자재[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4조의2]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산업안전보건법
	7604299000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다음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파이프서포트, 틀형 동바리용 부재(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강관 비계용 부재(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틀형 비계용 부재(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시스템 비계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이동식 비계용 부재(주틀, 발 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작업발판(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조임철물(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받침철물(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가설기자재[참고: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4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3호]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산업안전보건법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071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07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07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다음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파이프서포트, 틀형 동바리용 부재(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강관 비계용 부재(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틀형 비계용 부재(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시스템 비계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이동식 비계용 부재(주틀, 발 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작업발판(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조임철물(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받침철물(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가설기자재[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4조의2]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산업안전보건법
	7610908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휴대용 사다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611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12909010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12909020	용적이 1리터 이상 20리터 미만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12909030	용적이 20리터 이상인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12909030	용적이 20리터 이상인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7613001000	압축가스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13001000	압축가스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7613002000	액화가스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7615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15109020	식탁용품 · 주방용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15109020	식탁용품 · 주방용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615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15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615109090	부분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61699909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76169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780110100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11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1991000	정제하지 않은 납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1992010	납-주석 합금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199209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납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④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4111000	시트(sheet)·스트립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4112000	박(箔)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41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4201000	가루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4202000	플레이크(flake)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②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A1081) ③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④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903100000	아연 더스트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79070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007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101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04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마그네슘 폐기물과 스크랩(다량의 물, 가연성 가스와 접촉할 경우 가연성, 발연성일 것)(AA19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05201000	괴(塊)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코발트[Cobalt; 7440-4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8105202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코발트[Cobalt; 7440-4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8105203000	가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코발트[Cobalt; 7440-4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8105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금속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05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코발트[Cobalt; 7440-4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810590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코발트[Cobalt; 7440-4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8106101000	괴(塊)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8106103000	가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8108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08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108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110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12120000	괴(塊), 가루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베릴륨[Beryllium; 7440-41-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811213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베릴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1213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베릴륨[Beryllium; 7440-41-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81121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베릴륨[Beryllium; 7440-41-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81125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탈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1261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화학물질관리법

	8112690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화학물질관리법
	811292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갈바닉 전기 슬러지(A105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1129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갈바닉 전기 슬러지(A105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201100000	가래와 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1300000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140000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1500000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1500000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01600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1901000	낫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1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2101000	목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2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2200000	띠톱의 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3201000	플라이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3202000	집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03203000	핀셋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032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03300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3401000	파이프커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3402000	볼트크로퍼(bolt cropper)와 클리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5101000	드릴링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5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5200000	망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530000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5510000	가정용 공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5510000	가정용 공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5593000	그리스 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55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55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05702000	클램프(clamp)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참조: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 파이프서포트, 틀형 동바리용 부재(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강관 비계용 부재(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틀형 비계용 부재(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시스템 비계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이동식 비계용 부재(주틀, 발 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작업발판(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조임철물(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받침철물(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가설기자재[참고: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4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3호]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산업안전보건법
	8206000000	제82025부터 제8205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201000	인발(引拔)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202000	압출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401000	태핑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402000	드레딩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501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드릴 2.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207501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501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릴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20750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드릴 2.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2075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501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릴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brace bi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드릴 2.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릴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2075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드릴 2.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207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5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릴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207601000	리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603000	브로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6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701000	기어커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702000	밀링커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704000	로타리파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7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801000	선반용 공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7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08300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 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08400000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208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209001050	티타늄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0001000	분쇄기・마쇄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0001000	분쇄기・마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0002000	추출기・압착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0002000	추출기・압착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0004000	세절기・커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0004000	세절기・커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0005000	오프너・코르커・실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0005000	오프너・코르커・실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0008000	그 밖의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0009000	부분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②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③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의 것) ④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⑤ 월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⑥ 장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⑦ 검(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⑧ 창(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⑨ 치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②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③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의 것) ④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⑤ 월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⑥ 장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⑦ 검(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⑧ 창(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⑨ 치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②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③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의 것) ④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⑤ 월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⑥ 장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⑦ 검(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⑧ 창(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⑨ 치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1940000	칼날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②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③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의 것) ④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⑤ 월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⑥ 장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⑦ 검(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⑧ 창(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⑨ 치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8211940000	칼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2100000	면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213001000	가정용·사무용 가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3001000	가정용·사무용 가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3002010	재단용 가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3002020	이발용 가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30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30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3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30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4101000	연필깎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4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4200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490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 붙이와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490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 붙이와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4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4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스푼, 포크, 국자등 조합세트인 것에 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59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5991000	스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5991000	스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기타에 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5992000	포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5992000	포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기타에 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기타에 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5995000	각종 집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5995000	각종 집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215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215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기타에 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301100000	자물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디지털도어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도어록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3014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3014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301500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3024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디지털도어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306290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83062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830630100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830630100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8309100000	크라운 코르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309901000	캔뚜껑(E.O.E)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309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311309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2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이 0.1 ㎫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이 0.1 ㎫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0310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310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3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31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보일러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03900000	부분품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이 0.1 ㎫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04101000	연료절약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4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4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5104000	산소 발생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5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5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 초과 4,000시시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 초과 10,000시시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09911000	제87류의 차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09997000	제87류의 차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11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112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12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122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18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182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19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1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23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28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2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2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110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주유기(자동차 주유용에 한함)	계량에관한법률
	8413110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3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유체펌프,전기온수펌프(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3304000	제87류의 차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 배송 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509010	플런저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3509010	플런저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509010	플런저펌프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유체펌프,전기온수펌프(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3509020	피스톤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3509020	피스톤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509020	피스톤펌프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유체펌프,전기온수펌프(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5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50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509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유체펌프,전기온수펌프(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유체펌프,전기온수펌프(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3609010	기어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609010	기어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609020	베인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609030	스크루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609030	스크루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609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유체펌프,전기온수펌프(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36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60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음의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하며, 펌프의 전동기 출력이 2.1 kW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펌프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2) 방폭형 제품 3) 선박용 제품 4) 원심펌프의 경우, 비속도가 75 미만 및 630 초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413709010	터빈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709010	터빈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709010	터빈펌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음의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하며, 펌프의 전동기 출력이 2.1 kW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펌프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2) 방폭형 제품 3) 선박용 제품 4) 원심펌프의 경우, 비속도가 75 미만 및 630 초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413709020	볼류트 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709020	볼류트 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709020	볼류트 펌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음의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하며, 펌프의 전동기 출력이 2.1 kW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펌프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2) 방폭형 제품 3) 선박용 제품 4) 원심펌프의 경우, 비속도가 75 미만 및 630 초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4137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70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709090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음의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하며, 펌프의 전동기 출력이 2.1 kW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펌프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2) 방폭형 제품 3) 선박용 제품 4) 원심펌프의 경우, 비속도가 75 미만 및 630 초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381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유체펌프(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38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38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3819000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음의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하며, 펌프의 전동기 출력이 2.1 kW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펌프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2) 방폭형 제품 3) 선박용 제품 4) 원심펌프의 경우, 비속도가 75 미만 및 630 초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3911000	급유용 펌프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3915000	로터리펌프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39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109010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1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20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 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20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 펌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430100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30100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음의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에 적용한다. 적용 종류 및 전동기 출력은 다음과 같으며, 회전속도 제어 방식에 따라 정속형과 변속형이 있다. 압축기의 에어엔드 및 전동기가 동일하고 회전속도가 변경되거나, 삼상유도전동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고되었고 전동기 출력이 동일한 경우, 압축기 부품의 변경으로 압축기 종합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 왕복동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kW 이하 - 스크류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15kW 초과 110kW 이하 다만, 다음과 같은 공기압축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윤활방식이 무급유 또는 물인 경우 2) 냉각방식이 수냉식인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41430200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30200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음의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에 적용한다. 적용 종류 및 전동기 출력은 다음과 같으며, 회전속도 제어 방식에 따라 정속형과 변속형이 있다. 압축기의 에어엔드 및 전동기가 동일하고 회전속도가 변경되거나, 삼상유도전동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고되었고 전동기 출력이 동일한 경우, 압축기 부품의 변경으로 압축기 종합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 왕복동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kW 이하 - 스크류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15kW 초과 110kW 이하 다만, 다음과 같은 공기압축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윤활방식이 무급유 또는 물인 경우 2) 냉각방식이 수냉식인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414400000	예인용 바퀴 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400000	예인용 바퀴 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컴프레서(컴프레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4511000	항공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45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451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함) ●팬, 레인지후드(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451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451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냉풍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4591000	항공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4592000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함) ● 선풍기 ● 송풍기 ● 환풍기 ● 전기냉풍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45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45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함) ●팬, 레인지후드(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459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45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냉풍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4601000	항공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46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4609000	기타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팬, 레인지후드(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46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레인지후드(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4700000	기밀(氣密)식 생물안전 작업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함) ●팬, 레인지후드(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레인지후드(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48091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80921	소비전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80921	소비전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음의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에 적용한다. 적용 종류 및 전동기 출력은 다음과 같으며, 회전속도 제어 방식에 따라 정속형과 변속형이 있다. 압축기의 에어엔드 및 전동기가 동일하고 회전속도가 변경되거나, 삼상유도전동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고되었고 전동기 출력이 동일한 경우, 압축기 부품의 변경으로 압축기 종합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 왕복동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kW 이하 - 스크류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15kW 초과 110kW 이하 다만, 다음과 같은 공기압축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윤활방식이 무급유 또는 물인 경우 2) 냉각방식이 수냉식인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414809220	소비전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809220	소비전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음의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에 적용한다. 적용 종류 및 전동기 출력은 다음과 같으며, 회전속도 제어 방식에 따라 정속형과 변속형이 있다. 압축기의 에어엔드 및 전동기가 동일하고 회전속도가 변경되거나, 삼상유도전동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고되었고 전동기 출력이 동일한 경우, 압축기 부품의 변경으로 압축기 종합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 왕복동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kW 이하 - 스크류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15kW 초과 110kW 이하 다만, 다음과 같은 공기압축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윤활방식이 무급유 또는 물인 경우 2) 냉각방식이 수냉식인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414809230	소비전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8099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809900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에어커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48099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909010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4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5101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5101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 팬코일유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5101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5101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5101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5101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5102010	소비전력 11킬로와트 미만의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5102010	소비전력 11킬로와트 미만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 팬코일유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5102010	소비전력 11킬로와트 미만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5102020	소비전력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5102020	소비전력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 팬코일유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5102020	소비전력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5109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5109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5109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5109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5109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5109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52000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 팬코일유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 팬코일유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 팬코일유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5900000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 1,500리터 미만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6201000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6202000	기체연료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6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6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7101010	철광석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71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7102010	철강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71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7801010	시멘트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7801020	유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7801030	도자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78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7802000	이화학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7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8101010	용량 200리터 이하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101010	용량 200리터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셔가 내장된 것) ● 팬코일유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101010	용량 200리터 이하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101020	용량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101020	용량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101020	용량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101030	용량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101030	용량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101030	용량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10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1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1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21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21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21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21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21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21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213000	용량이 400리터 이상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213000	용량이 400리터 이상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213000	용량이 400리터 이상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829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2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2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2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501000	쇼케이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8501000	쇼케이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501000	쇼케이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501000	쇼케이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501000	쇼케이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쇼케이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50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850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5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50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5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아이스크림 프리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아이스크림 프리저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8692020	얼음 제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8692020	얼음 제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8692020	얼음 제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아이스크림 프리져 ● 제빙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692020	얼음 제조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아이스크림 프리저 ● 제빙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692020	얼음 제조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8692030	냉수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8692030	냉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8692030	냉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692030	냉수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692030	냉수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8692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8692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3.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692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69209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692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69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8693000	열펌프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8693000	열펌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693000	열펌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1899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899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9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899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89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91100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20000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1920000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501000	항공기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195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4195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1950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950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②상용온도 또는 35℃에서 게이지 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이상인 용기 및 저장탱크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연소기(연소장치 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 kw(20만 kcal/h) 이하인 것만을 말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커피메이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19899010	가열기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419899010	가열기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연소기(연소장치 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 kw(20만 kcal/h) 이하인 것만을 말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8419899010	가열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19899010	가열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899020	냉각기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419899020	냉각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19899020	냉각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899030	증발기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419899030	증발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19899030	증발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899040	응축기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419899040	응축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19899040	응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899060	고온항온기·저온항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9899070	항온항습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899080	공기조절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8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4198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②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③정압기용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④매몰형정압기 ⑤호스 ⑥배관용밸브(볼밸브와 글로우브밸브만을 말한다) ⑦콕(퓨즈콕·상자콕 및 주물연소기용노즐콕만을 말한다) ⑧배관이음관 ⑨강제혼합식가스버너(제10호에 따른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⑩연소기(연소장치 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 kw(20만 kcal/h)이하인 것만을 멀함 ⑪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함) ⑫로딩암 ⑬연료전지(가스소비량이 232.6 kw(20aks kcal/h)이하인 것만을 말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84198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198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89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989909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9909020	뜨거운 음료 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909020	뜨거운 음료 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19909030	공기조절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19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9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20101000	제지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0102000	직물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0103000	가죽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0104000	고무용・플라스틱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로울러기(동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학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변형시키는 것에 한하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의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0104000	고무용・플라스틱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0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로울러기(동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학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변형시키는 것에 한하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의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0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09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21110000	크림분리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1120000	의류탈수기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연소기(연소장치 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 kw(20만 kcal/h) 이하인 것만을 말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8421120000	의류탈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1120000	의류탈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탈수기 ● 전기세탁기 ● 회전형 전기건조기(의류용인 것) ● 전기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1120000	의류탈수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탈수기 ● 전기세탁기 ● 회전형 전기건조기 ● 전기건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21191000	내과용・외과용・이화학용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21191000	내과용・외과용・이화학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1191000	내과용・외과용・이화학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8421192000	식품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1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21211000	가정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211000	가정형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212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219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21909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23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291000	낙농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12920	유해성 폐수처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2920	유해성 폐수처리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293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12930	반도체 제조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29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29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29909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842131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13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1391000	가정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1391000	가정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1391000	가정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21392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139901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39901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39902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139902	반도체 제조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39902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399029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3990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39909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139909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399091	스테인레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399099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1991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99902	정수기용 필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99903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9990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199909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422110000	가정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2110000	가정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2110000	가정형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22110000	가정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221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2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2190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221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2230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230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 봉지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22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2409020	자동결속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2409030	진공포장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2409030	진공포장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224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240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물수건포장기 ● 물수건마는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2409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물수건포장기 ● 물수건마는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판수동 저울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계량에관한법률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3202000	피드미터・피드웨이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3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3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381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381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판수동 저울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계량에관한법률
	84238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판수동 저울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계량에관한법률
	842382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382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판수동 저울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계량에관한법률
	84238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판수동 저울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계량에관한법률
	8423891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계량에관한법률
	8423891090	기타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판수동 저울	계량에관한법률
	842389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계량에관한법률
	8423899090	기타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판수동 저울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계량에관한법률
	842390101	정확도 등급을 가진 분동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분동(E1 등급의 분동 제외)	계량에관한법률
	842390109	기타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분동(E1 등급의 분동 제외)	계량에관한법률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소화기 완제품 이외의 저장용기등에 함유되어 있는 Halon(소화설비에 부착 사용되는 용기에 저장된 하론을 포함)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4201000	스프레이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4201000	스프레이건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24202010	로봇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42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4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4301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고압증기세척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24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248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248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248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248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5111010	체인블록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②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5111010	체인블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111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②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511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112010	체인블록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②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5112010	체인블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112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②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511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②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531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3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3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②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539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3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②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하는 장치(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산업안전보건법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자동차용 휴대용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산업안전보건법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자동차용 휴대용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산업안전보건법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자동차용 휴대용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산업안전보건법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자동차용 휴대용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26110000	고정식 천정주행 크레인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천정 크레인(크래브식 및 호이스트식)	산업안전보건법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기타 크레인	산업안전보건법
	8426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천정 크레인(크래브식 및 호이스트식) ② 갠트리 크레인 ③ 타워 크레인 ④ 지브 크레인 ⑤ 차량탑재형 크레인 ⑥ 기타 크레인 ⑦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6200000	타워크레인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타워크레인은 제외) ① 타워 크레인	산업안전보건법
	8426301000	문형 크레인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갠트리 크레인	산업안전보건법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지브 크레인	산업안전보건법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6491000	식축붐식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6492000	앵글식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6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691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691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6991000	선박의 데릭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69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6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7101010	신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7101010	신품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7101020	중고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7101020	중고품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7102010	신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7102010	신품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7102020	중고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7102020	중고품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7201011	신품	다음은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지게차	대기환경보전법
	8427201011	신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7201011	신품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7201012	중고품	다음은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지게차	대기환경보전법
	8427201012	중고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7201012	중고품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7201021	신품	다음은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지게차	대기환경보전법

	8427201021	신품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7201022	중고품	다음은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지게차	대기환경보전법
	8427201022	중고품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7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72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7901000	수동식 팰릿(pallet) 트럭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7901000	수동식 팰릿(pallet) 트럭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7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7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 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 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8428101000	리프트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적재하중 0.5톤 이상 건설용 리프트(와이어로프식, 랙 및 피니언식) ② 산업용 리프트(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는 제외) ③ 적재하중 0.1톤 이상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④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⑤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8101000	리프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201000	압축공기식 엘리베이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202000	압축공기식 컨베이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202000	압축공기식 컨베이어	다음의 것으로서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3미터 이하 제외) ①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② 롤러 컨베이어 ③ 트롤리 컨베이어 ④ 버킷 컨베이어 ⑤ 나사 컨베이어	산업안전보건법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다음의 것으로서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3미터 이하 제외) ①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② 롤러 컨베이어 ③ 트롤리 컨베이어 ④ 버킷 컨베이어 ⑤ 나사 컨베이어	산업안전보건법
	8428320000	그 밖의 버켓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320000	그 밖의 버켓형	다음의 것으로서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3미터 이하 제외) ①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② 롤러 컨베이어 ③ 트롤리 컨베이어 ④ 버킷 컨베이어 ⑤ 나사 컨베이어	산업안전보건법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331020	분당 속도가 240미터 이상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332000	컨베이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332000	컨베이어	다음의 것으로서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3미터 이하 제외) ①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② 롤러 컨베이어 ③ 트롤리 컨베이어 ④ 버킷 컨베이어 ⑤ 나사 컨베이어	산업안전보건법
	84283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60000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701000	적재용 로봇(소호 제8479.50호의 것은 제외한다)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산업용 로봇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28702000	무인운반로봇(제8427호의 것을 제외한다)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산업용 로봇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기관차·화차의 트레버서·화차 경사기나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28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②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28909000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동식환자리프트 ② 전동식환자리프트	의료기기법
	8428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무한궤도식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429111000	불도저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111000	불도저	2005년 1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75㎾이상 130㎾이하는 2006년 1월 1일부터, 75㎾미만은 2007년 1월 2일부터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8429111000	불도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429112000	앵글도저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112000	앵글도저(Angledozer)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 무한궤도식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429190000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429200000	그레이더와 레벨러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300000	스크레이퍼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401000	탬핑머신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402000	로드롤러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402000	로드롤러	2005년 1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75㎾이상 130㎾이하는 2006년 1월 1일부터, 75㎾미만은 2007년 1월 2일부터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84295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r)과 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	다음의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로우더 ② 굴삭기	대기환경보전법
	8429511011	신품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11012	중고품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11021	신품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11022	중고품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11031	신품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11032	중고품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21011	신품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21012	중고품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21021	신품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21022	중고품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21022	중고품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429521090	기타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29521090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430100000	항타기와 항발기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30100000	항타기와 항발기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430310000	자주식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303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30411000	천공용 기계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30411000	천공용 기계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430412000	시굴용 기계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30412000	시굴용 기계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430491000	시추기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4304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4311000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311000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313100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313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2100000	플라우(쟁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2210000	디스크라로우(쇄토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2292000	제초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2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2410000	퇴비 살포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2420000	비료 살포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2800000	그 밖의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잔디깍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잔디깍기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잔디깍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33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31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잔디깍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331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잔디깍기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잔디깍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잔디깍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잔디깍기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잔디깍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33300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3400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433520000	그 밖의 탈곡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3520000	그 밖의 탈곡기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4335300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35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3601000	새의 알 선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36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3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4100000	착유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4100000	착유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착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34201000	균질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4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35109000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35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5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 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 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3510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35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35900000	부분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36101000	사료절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6102000	사료분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6103000	사료배합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6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6211000	부란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6211000	부란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동물부화용 히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362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6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6800000	그 밖의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7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3780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780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 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 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38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81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3820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8400000	양조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8400000	양조용 기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다음의 것(식품가공용기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 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 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38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85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3860000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860000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 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 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3860000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 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 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38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88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 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 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388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38900000	부분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39201000	초지 준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9202000	초지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9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9301000	종이·판지를 감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39302000	표면 가공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9303000	침투 가공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39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본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제본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제본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본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0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01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제본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01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함) ● 제본기 ● 스테이플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1100000	절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1201000	종이백・봉지 제조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1202000	봉투 제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130000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140000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1801000	종이・판지의 트리밍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1801000	종이・판지의 트리밍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함)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류에 사용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1801000	종이・판지의 트리밍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라우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1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2300000	기계류・장치・장비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분말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4311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 한정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에한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11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 한정한다]	판면에 잉크를 묻혀 조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4312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사무실용 시트(sheet) 공급식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12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사무실용 시트(sheet) 공급식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판면에 잉크를 묻혀 조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43130000	그 밖의 오프셋 인쇄기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130000	그 밖의 오프셋 인쇄기계	판면에 잉크를 묻혀 조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판면에 잉크를 묻혀 조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판면에 잉크를 묻혀 조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판면에 잉크를 묻혀 조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431700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1700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판면에 잉크를 묻혀 조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43191000	직물날염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191000	직물날염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조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43192000	그 밖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놀륨 등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192000	그 밖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놀륨 등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조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4319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199000	기타	판면에 잉크를 묻혀 조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프린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11020	도트 프린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311020	도트 프린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11020	도트 프린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프린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프린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11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311090	기타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 것은 제외, 다만,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모니터[(모니터,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다만,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스캐너 ●투영기(스라이드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11090	기타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13000	복사기(프린터,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팩시밀리 ● 복사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13000	복사기(프린터,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에 한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기기를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1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팩시밀리 ● 복사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1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에 한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기기를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21020	도트 프린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321020	도트 프린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21020	도트 프린터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21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32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3KW이하인 것에 한함)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전용인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21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프린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24000	복사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팩시밀리 ● 복사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24000	복사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에 한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기기를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2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팩시밀리 ● 복사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2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에 한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기기를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391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392000	복사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팩시밀리 ● 복사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92000	복사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에 한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기기를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39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3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복사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433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또는 안전검사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43991000	프린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3991000	프린터의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3994020	종이공급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3994030	분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3994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399409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44399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43999000	기타	판면에 잉크를 묻혀 조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44001000	방사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4002000	연신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4003000	텍스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4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5110000	카드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5120000	코밍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5130000	연조기나 조방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5191000	혼타면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5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5201010	정방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52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5202000	모방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5203000	견방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5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5301000	필라멘트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5302000	방적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5401000	콘 와인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54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5901000	정경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5902000	정경부호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5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610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6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6301010	면직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63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7111000	양말편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7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7201010	수(手) 편직기(반자동 횡(橫) 편직기는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7201020	자동 횡(橫) 편직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72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7202010	랏셀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7202020	트리코트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72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7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7901000	레이스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7902010	자동자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79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7903000	결망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7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8111000	도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8112000	자카드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8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8191000	경사용 빔스탠드와 크릴(creel)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48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49002000	모자제조용 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 일체형 세탁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 일체형 세탁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50190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501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 일체형 세탁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01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50200000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50200000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 일체형 세탁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0200000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50900000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51210000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51210000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할 수 있음. ● 회전형 전기건조기(의류용인 것) ● 전기건조기 ● 의류관리기 ● 일체형 세탁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1210000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이하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전형 전기건조기 ● 전기건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51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512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할 수 있음. ● 회전형 전기건조기(의류용인 것) ● 전기건조기 ● 의류관리기 ● 일체형 세탁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12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회전형 전기건조기 ● 전기건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51301000	스티임 프레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51301000	스팀 프레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1301000	스팀 프레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51301000	스팀 프레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51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513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13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51401000	세탁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402000	표백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403000	염색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50100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502000	절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801000	열처리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802000	폭출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803000	머서라이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809010	방축가공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809020	도포기, 침투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809030	기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809050	가정용 의류관리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되고정격소비전력이10KW이하인다음의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안전인증을받은전기용품을수입할수있음. ●의류관리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18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180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할 수 있음. ● 의류관리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1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21010	전동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가정용 전동재봉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21010	전동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21010	전동식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가정용 전동재봉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52101020	지그재그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2101020	지그재그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가정용 전동재봉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2101020	지그재그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가정용 전동재봉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521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210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가정용 전동재봉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52101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가정용 전동재봉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52102000	수동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2212000	포장대 봉합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22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2292000	포장대 봉합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2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3101000	유피준비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3102000	유피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3103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3200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3800000	그 밖의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4100000	전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4200000	잉곳용 주형과 레이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4301010	다이케스팅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43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4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5100000	관 압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5210000	열간이나 열·냉간 겸용 압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5220000	냉간 압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611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6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63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6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6500000	워터제트 절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7104000	5축 머시닝 센터(분할 5축 가공이 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공작물을 장착하거나 고정시키고 절삭 및 드릴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7109010	수직형	공작물을 장착하거나 고정시키고 절삭 및 드릴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7109020	수평형	공작물을 장착하거나 고정시키고 절삭 및 드릴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7109030	문형	공작물을 장착하거나 고정시키고 절삭 및 드릴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	공작물을 장착하거나 고정시키고 절삭 및 드릴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신	공작물을 장착하거나 고정시키고 절삭 및 드릴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8110000	수치제어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8110000	수치제어식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8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8190000	기타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8910000	수치제어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8910000	수치제어식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89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8990000	기타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100000	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	공작물을 장착하거나 고정시키고 절삭 및 드릴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21	수치제어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21	수치제어식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머신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292000	직립 드릴링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292000	직립 드릴링머신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293000	다축 드릴링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293000	다축 드릴링머신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299000	기타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310000	수치제어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3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411000	지그 보링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412000	수평 보링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4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510000	수치제어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510000	수치제어식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5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590000	기타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612000	평삭 밀링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612000	평삭 밀링머신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6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619000	기타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6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699000	기타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59701000	태핑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59709000	그 밖의 나사절삭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120000	수치제어식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220000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230000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241000	내면연삭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242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24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291000	원통연삭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291000	원통연삭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292000	내면연삭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292000	내면연삭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293000	무심연삭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293000	무심연삭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29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29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2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310000	수치제어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310000	수치제어식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휴대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3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390000	기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휴대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401000	호닝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401000	호닝머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휴대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402000	래핑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402000	래핑머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휴대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0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0900000	기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휴대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1200000	쉐이핑머신이나 슬로팅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1200000	쉐이핑머신이나 슬로팅머신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61300000	브로칭머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1401010	수치제어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1401010	수치제어식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휴대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14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1401090	기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휴대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1402000	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1402000	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휴대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1500000	톱기계나 절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1500000	톱기계나 절단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1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2191000	에어해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21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 계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2221000	수치제어식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221000	수치제어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굽힘기,접음기에 한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22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230000	수치제어식 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240000	수치제어식 패널 굽힘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250000	수치제어식 롤 성형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편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260000	그 밖의 수치제어식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편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321010	수치제어식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편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321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편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322010	수치제어식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편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322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편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330000	수치제어식 전단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3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 계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3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2420000	수치제어식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4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610000	액압식 프레스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620000	기계식 프레스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630000	서보프레스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편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6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편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2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편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6310000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3200000	나사 전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3300000	선 가공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3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4100000	톱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4201000	광학유리용·안경유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4202000	그 밖의 유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4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4903000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4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101000	목재 가공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101000	목재 가공용	다음의 것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 ②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③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④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⑤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⑥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⑦ 동력식 수동대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65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109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 ②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③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④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⑤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⑥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⑦ 동력식 수동대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65911000	목재 가공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11000	목재 가공용	다음의 것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 ②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③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④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⑤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⑥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⑦ 동력식 수동대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659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19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 ②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③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④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⑤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⑥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⑦ 동력식 수동대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65921000	목재 가공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21000	목재 가공용	다음의 것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기계 ②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	산업안전보건법
	84659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29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기계 ②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	산업안전보건법
	8465931000	목재 가공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31000	목재 가공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593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3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65941000	목재 가공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4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51000	목재 가공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51000	목재 가공용	다음의 것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 ②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③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④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⑤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⑥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⑦ 동력식 수동대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칼날 접촉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6595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59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 ②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③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④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⑤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⑥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⑦ 동력식 수동대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칼날 접촉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65961000	목재 가공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6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91000	목재 가공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5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6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6300000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6910000	제8464호의 기계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6910000	제8464호의 기계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이 50 ㎜ 미만인 연삭기 덮개는 제외 ②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③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66920000	제8465호의 기계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6920000	제8465호의 기계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이 50 ㎜ 미만인 연삭기 덮개는 제외 ②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③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6693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693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이 50 ㎜ 미만인 연삭기 덮개는 제외 ②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③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66940000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6940000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67111000	착암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라이버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드라이버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라이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67113000	그라인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7113000	그라인더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그라인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67113000	그라인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그라인더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그라인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67114000	임팩트 렌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7115000	드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7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7191000	착암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7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7210000	각종 드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드릴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67210000	각종 드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7210000	각종 드릴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릴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67220000	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원형톱● 전기왕복톱● 전기체인톱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원형톱● 전기왕복톱● 전기체인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67220000	톱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7220000	톱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672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드라이버● 전기잔디깍기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라이버● 전기잔디깍기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67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72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67810000	체인톱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7810000	체인톱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라이버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67810000	체인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드라이버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라이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67891010	소호 제8430.49호, 제8479.10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7891020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91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78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78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포리셔 ● 전기샌더 ● 전기햄머 ● 전기금속가위 ● 전기테이퍼 ● 전기진동기 ● 전기대패 ● 전기못총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678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드라이버● 전기잔디깍기●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햄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전기대패● 전기못총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라이버● 전기잔디깍기●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햄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전기대패● 전기못총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68100000	수지식 취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8201000	가스 용접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8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8800000	그 밖의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68900000	부분품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산업안전보건법
	8470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0300000	그 밖의 계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0500000	금전 등록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0500000	금전 등록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금전등록기(POS시스템은 제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0500000	금전 등록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0500000	금전 등록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금전등록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0902000	표권 발행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0902000	표권 발행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번호표 발행기 ● 티켓 발행기 ● 순번대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0902000	표권 발행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번호표 발행기, 티켓 발행기, 순번대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0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노트북컴퓨터 ● 태블릿 PC(휴대폰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cm 이상인 것) ●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41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41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41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 포스시스템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 포스시스템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491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491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 포스시스템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49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4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 포스시스템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50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5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601010	문자(표식) 판독장치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카드판독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601010	문자(표식) 판독장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1601020	키 입력장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601020	키 입력장치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키보드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601020	키 입력장치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71601030	마우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마우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601030	마우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휴대용 레이저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1601030	마우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1601030	마우스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71601040	스캐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1601040	스캐너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스캐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1601040	스캐너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스캐너 ● 바코드스캐너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6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1601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이스틱 ● 카드리더기 ● PC게임기 ● PC카메라 ● 지문인식기 ● 전자칠판및보드 ● 트랙볼 ● 터치스크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6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휴대용 레이저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160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자칠판 및 보드 (텔레비전,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1602000	출력장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에 한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1602000	출력장치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리더기 ● 터치스크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603000	입출력 겸용의 것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603000	입출력 겸용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자칠판 및 보드 (텔레비전,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롬)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단, 형식승인 대상기기는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외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단, 형식승인 대상기기는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1702032	디브이디(DVD)드라이브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단, 형식승인 대상기기는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702032	디브이디(DVD)드라이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단, 형식승인 대상기기는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1702039	기타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단, 형식승인 대상기기는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70203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1702090	기타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단, 형식승인 대상기기는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7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170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단, 형식승인 대상기기는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7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18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 기계의 단위 기기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단, 형식승인 대상기기는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8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 기계의 단위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1900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단, 형식승인 대상기기는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1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2100000	등사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지폐계수기 ● 금융단말기기 ● 현금자동취급기 ●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뎀을 내장한 기기 ● 지폐계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지폐계수기 ● 금융단말기기 ● 현금자동취급기 ●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뎀을 내장한 기기 ● 지폐계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입금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입금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지폐계수기 ● 금융단말기기 ● 현금자동취급기 ●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입금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뎀을 내장한 기기 ● 지폐계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동전계수기 ●지폐계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동전계수기 ● 지폐계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290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광택기● 수하물보관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지폐계수기 ●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2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72901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광택기 ● 수하물보관기 ● 지폐계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2902000	등사용이나 인쇄용 자동제판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72903000	표권발행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72903000	표권발행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번호표발행기 ● 티켓 발행기 ● 순번대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2904000	연필절삭기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3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학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8472904000	연필절삭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2905000	서류절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2905000	서류절단기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문서세단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재단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2905000	서류절단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문서세단기 ● 재단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29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및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필름접착기 ●서비스기기[(전기광택기, 수하물보관기, 지폐교환기, 동전교환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천공기 ● 코팅기(종이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동타자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2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29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필름접착기, 서비스기기(전기광택기, 수화물보관기, 지폐교환기, 동전교환기), 코팅기(사무용품),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3301000	자기헤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3302000	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3302000	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메인보드 ● 마더보드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3304060	디램 모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410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또는세척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4201000	파쇄・분쇄능력이 시간당 20톤 이하인 것	다음의 것으로서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 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식품용 제외) ①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 용량이 50kg 초과일 것	산업안전보건법
	8474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4209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 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식품용 제외) ①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 용량이 50kg 초과일 것	산업안전보건법
	84743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43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4802000	조괴기・형입기와 성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4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510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섬광전구(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5210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75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5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①연소기(연소장치 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 kw(20만 kcal/h) 이하인 것만을 말함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자동판매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기계·장치의 내부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직접 닿는 부분이 있어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캔, 병 등 포장이 완료된 식품만을 판매하는 등 내부의 기계·장치가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76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762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6290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62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자동판매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62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기계·장치의 내부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직접 닿는 부분이 있어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캔, 병 등 포장이 완료된 식품만을 판매하는 등 내부의 기계·장치가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768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68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자동판매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기계·장치의 내부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직접 닿는 부분이 있어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캔, 병 등 포장이 완료된 식품만을 판매하는 등 내부의 기계·장치가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76894000	화폐 교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지폐교환기● 동전교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6894000	화폐 교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76894000	화폐 교환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지폐교환기 ● 동전교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68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4768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689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68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자동판매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7101000	고무 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7101000	고무 공업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한다.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및 인젝션 블로우몰딩(Injection Blow Molding) 머신	산업안전보건법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한다.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및 인젝션 블로우몰딩(Injection Blow Molding) 머신	산업안전보건법
	8477201000	고무 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7300000	취입 성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75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75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한다.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및 인젝션 블로우몰딩(Injection Blow Molding) 머신	산업안전보건법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한다.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및 인젝션 블로우몰딩(Injection Blow Molding) 머신	산업안전보건법
	8477900000	부분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78100000	기계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102000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20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30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40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501000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60호, 제8479.89-9091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501000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60호, 제8479.89-9091호의 것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산업용 로봇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795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5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산업용 로봇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79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600000	증발식 에어쿨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600000	증발식 에어쿨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 가습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제습기 3.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9600000	증발식 에어쿨러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9600000	증발식 에어쿨러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 가습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9811000	금속 세척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81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13000	권선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1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21000	혼합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21000	혼합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9821000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용기회전형, 기류교반형, 용기용량 200리터 미만, 모터구동력 1kw미만, 식품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79821000	혼합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9821000	혼합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79821000	혼합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제조공장에 설치하여 상시 제어관리하는 기계류는 제외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다음의 것으로서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식품용 제외) ①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 용량이 50kg 초과일 것	산업안전보건법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9823000	균질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9823000	균질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23000	균질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9824000	교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24000	교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9824000	교반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용기회전형, 기류교반형, 용기용량 200리터 미만, 모터구동력 1kw미만, 식품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79824000	교반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9824000	교반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98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2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음식물처리기[음식물처리기, 주방용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함)] 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수도법(주방용오물분쇄기에 한함)
	847982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982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7982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음식물처리기(음식물 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허용 후 제조수입판매가능)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냉방기 ● 가습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제습기 3.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98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89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가습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제습기 ●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함) 3.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989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제조공장에 설치하여 상시 제어관리하는 기계류는 제외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7989109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9891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제습기(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 가습기 ● 음식물처리기 ●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9899010	프레스・압출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②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한다.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및 인젝션 블로우몰딩(Injection Blow Molding) 머신	산업안전보건법
	8479899010	프레스・압출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899020	선박용・어업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99030	아이레팅기・튜불러리베팅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코팅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99080	조상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899091	제87류의 차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99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89909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수도동결방지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애완동물목욕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479899099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47989909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79899099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애완동물 목욕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479899099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8479901010	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901020	가정형 기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901030	제87류의 차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9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909050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교반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909060	프레스・압출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909070	선박용・어업 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799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84799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80100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0200000	주형 베이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0200000	주형 베이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80300000	주형 제조용 모형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4804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04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0600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07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07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07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81100000	감압밸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81400000	안전밸브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이 0.1 ㎫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8481400000	안전밸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1400000	안전밸브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1801030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1801030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818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18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818020	탭·코크와 트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18020	탭·코크와 트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81802010	수도꼭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인증을 득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도법
	8481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18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818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481900000	부분품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81900000	부분품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열판은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 0.1 ㎫ 미만인 것	산업안전보건법
	8482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니들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250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280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3109010	제87류 차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31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3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3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340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농업용 콤바인의 원동기 배출가스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인증생략을 받아 농업기계화촉진법 검정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농업기계화촉진법
	8483409010	기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3409020	기어박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3409030	무단변속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34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3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36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3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4101000	제87류 차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4200000	메커니컬 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4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6102000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103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1050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620602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6091	레이저 작동식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6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6099	기타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84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920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기계(휴대용 제외) ② 연삭기의 덮개(단, 직경이 50 ㎜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84862093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9400	웨이퍼·캐리어·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2099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6401010	패턴형성기(주로 사진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640103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또는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와이어접착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제거시키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제거시키는 기계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203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2091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공작기계(반도체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86402091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공작기계(반도체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접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기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접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와 오븐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와 오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2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셋트, 상자나 그 밖의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6403020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揚荷)용의 것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산업용 로봇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486403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87901000	제87류 차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1101000	직류 전동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101000	직류 전동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102000	교류 전동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102000	교류 전동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20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 100와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20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 100와트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2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2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203000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203000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31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31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31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311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312000	직류 발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312000	직류 발전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321000	직류 전동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321000	직류 전동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322000	직류 발전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331000	직류 발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331000	직류 전동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3320	직류 발전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341000	직류 전동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342000	직류 발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342000	직류 발전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40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40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4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4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40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40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404000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404000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51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아래사항을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있으며, . 분류 : 보호형 또는 전폐형 . 정격출력 : 0.75kW 이상부터 375kW 이하까지 . 극수 : 2극, 4극, 6극, 8극 * 단, 효율 기준이 설정된 극수 제품에 한함 . 용도 및 프레임 : 범용 프레임 . 속도 : 정속운전 . 형태 : 풋 마운트 또는 플랜지 . 토오크 특성 : 디자인 A형 또는 B형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유도전동기를 대상범위로 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 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50151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51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52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52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529000	기타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아래사항을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있으며, . 분류 : 보호형 또는 전폐형 . 정격출력 : 0.75kW 이상부터 375kW 이하까지 . 극수 : 2극, 4극, 6극, 8극 * 단, 효율 기준이 설정된 극수 제품에 한함 . 용도 및 프레임 : 범용 프레임 . 속도 : 정속운전 . 형태 : 풋 마운트 또는 플랜지 . 토오크 특성 : 디자인 A형 또는 B형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유도전동기를 대상범위로 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 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501531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531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531090	기타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아래사항을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있으며, . 분류 : 보호형 또는 전폐형 . 정격출력 : 0.75kW 이상부터 375kW 이하까지 . 극수 : 2극, 4극, 6극, 8극 * 단, 효율 기준이 설정된 극수 제품에 한함 . 용도 및 프레임 : 범용 프레임 . 속도 : 정속운전 . 형태 : 풋 마운트 또는 플랜지 . 토오크 특성 : 디자인 A형 또는 B형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유도전동기를 대상범위로 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 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501532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532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534000	출력이 1,5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534000	출력이 1,5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6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6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6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62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62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63100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63100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63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63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1640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1640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21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21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2131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213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2132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2134000	출력이 3,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220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220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231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239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10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10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10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안정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10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10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10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안정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10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10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410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안정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10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10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410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안정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1901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1902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2901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2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22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29030	용량이 5,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230000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312000	전압 조정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312000	전압 조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31901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31901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31902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31902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319040	용량이 500볼트암페어 초과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319040	용량이 500볼트암페어 초과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04322000	전압 조정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322000	전압 조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432901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32901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33901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33904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34901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349030	용량이 2,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전원 30V초과 1,000V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V 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직류전원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3. 정격전압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440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1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것은 제외)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무정전전원장치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201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것은 제외)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201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2019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무정전전원장치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209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2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2099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 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차 어댑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1MW 이하인 것에 한함)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충전기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3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4403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 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차 어댑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1MW 이하인 것에 한함)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3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충전기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1MW 이하인 것에 한함)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4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4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4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자동차 어댑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1MW 이하인 것에 한함)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5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자동차 어댑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1MW 이하인 것에 한함)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5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5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5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1MW 이하인 것에 한함)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901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1MW 이하인 것에 한함)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901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9019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충전기 ●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1MW 이하인 것에 한함)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909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치대를 포함한다,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1MW 이하인 것에 한함) 3.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4409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409099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4409099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4409099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콘덴서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45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5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5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40호·제 8504.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4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클러치·브레이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59010	전자석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590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클램프·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5909000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6101000	망간건전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건전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6101000	망간건전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건전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6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건전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6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630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640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6500000	리튬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6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720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07300000	니켈 카드뮴 축전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7300000	니켈 카드뮴 축전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7300000	니켈 카드뮴 축전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교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 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7500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7500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7500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교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 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 리튬이차단전지(전기저장장치 구성품에 한정한다) 2.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 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전기저장장치 구성품으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7603000	에너지 저장장치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안전인증을받은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하며당해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의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음 ●리튬이차단전지(전기저장장치구성품에한정한다) 2.다음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안전확인신고를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하며,당해전기용품은안전확인기관의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음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전기저장장치구성품으로정격용량이300kWh이하인것에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76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 리튬이차단전지(전기저장장치 구성품에 한정한다) 2.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지 ●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전기저장장치 구성품으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8111000	로봇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8111000	로봇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8111000	로봇형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8111000	로봇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8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811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811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811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8192000	로봇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8192000	로봇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8192000	로봇형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81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8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819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81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전기탈수기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 전기탈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9801000	커피분쇄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09801000	커피분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9801000	커피분쇄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커피분쇄기 2.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커피분쇄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9801000	커피분쇄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9801000	커피분쇄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커피분쇄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9802000	얼음분쇄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09802000	얼음분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9802000	얼음분쇄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빙삭기(다만,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빙삭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9802000	얼음분쇄기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빙삭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9802000	얼음분쇄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9803000	바닥광택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9803000	바닥광택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표면세척기(다만,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9803000	바닥광택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하수도법 제33조에 의거 수입이 금지됨	하수도법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음식물처리기[음식물처리기, 주방용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98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09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098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 전기탈수기 ●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 ● 기포발생기 ● 과일껍질깎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 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풀제거기, 전기빵자르개 4.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0980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098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 ●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플제거기, 전기빵자르개 ●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09809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8509900000	부분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0100000	면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0100000	면도기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모발관리기(모발건조기, 전기머리인두, 모발말개) ●손건조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면도기 및 전기이발기 ●안면사우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0100000	면도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면도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0200000	이발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0200000	이발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 이발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0200000	이발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이발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0300000	모발제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0901000	면도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0902000	이발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1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1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1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14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1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1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1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2101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2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2201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2201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2201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22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22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22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2400000	원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제무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31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31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31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3102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3109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3109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31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3109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191000	실험실용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192000	금속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4192000	금속공업용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193000	식품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4193000	식품공업용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193000	식품공업용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4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419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1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4201000	실험실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4201000	실험실용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202000	금속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4202000	금속공업용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203000	식품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4203000	식품공업용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42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3	그 밖의 노(爐)와 오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43	그 밖의 노(爐)와 오븐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4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44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9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49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5110000	납땜용 인두와 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110000	납땜용 인두와 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납땜인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110000	납땜용 인두와 건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땜인두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51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1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납땜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19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땜제거인두 ● 권총형납땜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5211010	로봇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521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521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용접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212010	로봇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21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5212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용접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213010	로봇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213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213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용접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219010	로봇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2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521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고주파웰더 ● 전기용접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291000	점 용접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5299000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고주파웰더 ●전기용접기(전기용접기, 권총형아크접착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311010	로보트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531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531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권총형아크접착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311090	기타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을 실시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5319010	로봇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53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531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권총형아크접착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권총형아크접착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3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권총형아크접착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802000	전자빔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5802000	전자빔용 기기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5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58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페인트제거기 ● 가열총● 전기조각기● 플라스틱절단기 ● 필름접착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58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열가소성도관용접기 ● 페인트제거기 ● 가열총 ● 전기조각기 ● 플라스틱절단기 ● 필름접착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주전자,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전기순간온수기 ●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가습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하며, 방폭형은 제외) ● 사우나용 전열기기(전기 스팀바스, 전기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전열기, 스팀바스용 전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 전기순간온수기 ●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가습기 ● 사우나기기(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열기기(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구모양 히터 ● 펠릿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안면사우나기 ●사우나기기(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전열기, 스팀사우나용전열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열기구(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 축열식 전기난방기 ● 전기라디에이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62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열보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관상어용 히터, 식물용 히터, 동물부화용 히터, 사육용 히터 ● 소용돌이용 전기욕조(욕조용기포발생기 포함), 전기반신(전신)욕조, 전기발욕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290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162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열보드 ● 소용돌이 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 발생기 포함),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 관상어용 식물용 히터, 동물부화 사육용 히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모발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발건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모발관리기(전기머리인두, 모발건조기, 모발말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머리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발관리기(전기머리인두, 모발건조기, 모발말개) ● 전기머리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330000	손 건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330000	손 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손건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330000	손 건조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손건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400000	전기다리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400000	전기다리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400000	전기다리미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16400000	전기다리미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자레인지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601000	전기오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601000	전기오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오븐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601000	전기오븐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16601000	전기오븐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오븐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601000	전기오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전기보온기, 전기주온기, 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밥솥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60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66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6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레인지,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휴대형그릴, 전기고기구이기,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 전기프라이팬 및 기타 전기식조리기●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증기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쿠르트제조기)●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6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레인지,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 전기프라이팬 ● 전기휴대형그릴 ● 전기고기구이기 ● 와플기기 ● 핫플레이트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증기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쿠르트제조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7100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67100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7100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커피메이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7100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커피메이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720000	토스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6720000	토스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720000	토스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토스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720000	토스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토스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되고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보온밥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보온밥솥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79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67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7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회전형전기건조기(의류용인 것)● 전기건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손난로● 전기스팀사우나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온열보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 ● 왁스 용해기, 쵸코렛 용해기, 파라핀 용해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수도동결방지기 ●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전기보온기(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 3.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손난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679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167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전기보온기 ● 회전형전기건조기 ● 전기건조기 ●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 전기스팀사우나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 왁스용해기, 쵸코렛용해기, 파라핀용해기 ●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 수도동결방지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6900000	부분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130000	스마트폰	[전파법] 1.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130000	스마트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교류전원30V이하,직류전원42V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14	그 밖의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141000	코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동기식	[전파법] 1.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141000	코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동기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교류전원30V이하,직류전원42V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142000	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비동기식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142000	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비동기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교류전원30V이하,직류전원42V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143000	코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비동기식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143000	코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비동기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교류전원30V이하,직류전원42V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144000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동기식	[전파법] 1.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144000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동기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교류전원30V이하,직류전원42V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149000	기타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14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교류전원30V이하,직류전원42V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180000	기타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18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610000	기지국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10000	기지국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마이크. 이어폰. 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대화형 감청설비) ● 마이크. 이어폰. 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17621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1010	유선통신용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1010	유선통신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단말장치(IPTV용셋톱박스등) ●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말장치(디지털CATV용셋톱박스)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지상파디지털TV용셋톱박스D/A용셋톱박스,A/V신호수신기등) ●A/D및D/A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디지털방송신호로변환해주는셋톱박스등)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아날로그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전화기(유선·무선,공중및영상전화기를포함한다) ●전화기와함께사용되는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회의용브릿지,번호표시기,착신표시기,통화감지기,통화시간기록기,자동다이얼기,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착신전환기,자동응답기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621020	무선통신용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1020	무선통신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 무선 헤드셋 ● IP주소 공유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6220	그 밖의 송신기기(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2030	유선통신용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2040	무선통신용	[전파법] 1.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2040	무선통신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 무선 헤드셋 ● IP주소 공유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622040	무선통신용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마이크·이어폰·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대화형 감청설비) ● 마이크·이어폰·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176230	교환기 및 라우팅 기기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3010	유선통신용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3010	유선통신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단말장치(IPTV용셋톱박스등) ●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말장치(디지털CATV용셋톱박스)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지상파디지털TV용셋톱박스D/A용셋톱박스,A/V신호수신기등) ●A/D및D/A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디지털방송신호로변환해주는셋톱박스등)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아날로그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전화기(유선·무선,공중및영상전화기를포함한다) ●전화기와함께사용되는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회의용브릿지,번호표시기,착신표시기,통화감지기,통화시간기록기,자동다이얼기,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착신전환기,자동응답기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623020	무선통신용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3020	무선통신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교류전원30V이하,직류전원42V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된다)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HF주파수대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VHF/UHF주파수대기기)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 ●무선마이크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무선헤드셋 ● IP주소 공유기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공중및영상전화기를포함한다) ●전화기와함께사용되는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회의용브릿지,번호표시기,착신표시기,통화감지기,통화시간기록기,자동다이얼기,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착신전환기,자동응답기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6290	기타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종류의 것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종류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전화기와함께사용되는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회의용브릿지,번호표시기,착신표시기,통화감지기,통화시간기록기,자동다이얼기,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착신전환기,자동응답기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629020	그 밖의 유선통신용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9020	그 밖의 유선통신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단말장치(IPTV용셋톱박스등) ●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말장치(디지털CATV용셋톱박스)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지상파디지털TV용셋톱박스D/A용셋톱박스,A/V신호수신기등) ●A/D및D/A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디지털방송신호로변환해주는셋톱박스등)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아날로그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전화기(유선·무선,공중및영상전화기를포함한다) ●전화기와함께사용되는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회의용브릿지,번호표시기,착신표시기,통화감지기,통화시간기록기,자동다이얼기,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착신전환기,자동응답기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629030	그 밖의 무선통신용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29030	그 밖의 무선통신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교류전원30V이하,직류전원42V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된다)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HF주파수대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VHF/UHF주파수대기기)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 ●무선마이크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무선헤드셋 ● IP주소 공유기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공중및영상전화기를포함한다) ●전화기와함께사용되는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회의용브릿지,번호표시기,착신표시기,통화감지기,통화시간기록기,자동다이얼기,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착신전환기,자동응답기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693000	유선통신용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93000	유선통신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비디오폰 ● 인터넷 IP 주소 공유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 비디오도어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694000	무선통신용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7694000	무선통신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비디오폰 ● 인터넷 IP 주소 공유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 비디오도어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7694000	무선통신용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장비내부에 안테나. 신호레벨. 도청거리 산출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원거리에서 송신된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가청주파수신기(무선주파수수신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무선마이크 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8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8109010	무선 마이크로폰(무선 마이크로폰 세트를 포함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무선마이크 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8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82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82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8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83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183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무선헤드셋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벽면 또는 유리 등에 부착할 수 있고, 마이크. 이어폰이 내장되어 진동으로 전달되는 음성을 모으고 증폭할 수 있는 장치가 결합된 소형장치(콘크리트마이크형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제8518.10-1000호·제8518.29-100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18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19200000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9200000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음성기록계/음성플레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9300000	턴 테이블 (레코드 데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턴테이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930000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전파법] 1.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9812000	자기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음성기록계/음성 플레이어● 어학실습기●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9812000	자기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9814000	광학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9814000	광학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음성기록계/음성플레이어●어학실습기●오디오및비디오학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9815000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9815000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음성기록계/음성플레이어●어학실습기●오디오및비디오학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9816000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 중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9816000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 중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음성기록계/음성플레이어●어학실습기●오디오및비디오학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98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 디스크플레이어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음성기록계/음성 플레이어● 어학실습기●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19890000	기타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음성기록계/음성플레이어 ● 어학실습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1100000	마그네틱 테이프형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1100000	마그네틱 테이프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영상기록계 ● 어학실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1100000	마그네틱 테이프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영상기록계 ● 어학실습기 ● DVR(Digital Video Recorder) ● NVR(Network Video Recorder)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1901000	디스크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1901000	디스크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디스크 플레이어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영상기록계 ● 어학실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1901000	디스크형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1901000	디스크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스크 플레이어 ● 영상기록계 ● 어학실습기●DVR (DIGITAL VIDEO RECORDER) ●NVR (NETWORK VIDEO RECORDER)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1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19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디스크 플레이어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영상기록계 ● 어학실습기 ● 실물화상기(OHP) ● 입체영상기(OH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190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19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MP3 PLAYER ● 디스크플레이어 ● 영상기록계 ● 어학실습기 ● 실물화상기(OHP) ● 입체영상기(OHP)●DVR (DIGITAL VIDEO RECORDER) ●NVR (NETWORK VIDEO RECORDER)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3410000	기록이 안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23491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8523491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1.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2. 다음의 비디오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시청 제공되는 비디오물 ②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되는 비디오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④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1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3.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영화는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③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1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6. 다음의 게임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②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1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8. 다음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준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1030	비디오 녹화된 것	1.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2. 다음의 비디오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시청 제공되는 비디오물 ②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되는 비디오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④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1030	비디오 녹화된 것	3.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영화는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③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1030	비디오 녹화된 것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6. 다음의 게임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②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1030	비디오 녹화된 것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8. 다음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준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109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8523491090	기타	1.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2. 다음의 비디오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시청 제공되는 비디오물 ②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되는 비디오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④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1090	기타	3.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영화는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③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1090	기타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6. 다음의 게임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②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1090	기타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8. 다음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준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523499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852351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23512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8523529000	기타와 그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359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2380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2411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II,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2491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II,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24913000	텔레비전용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II,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24923000	텔레비전용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II,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II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IX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방송통신위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 주파수대 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8525502000	텔레비전용	방송통신위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5502000	텔레비전용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5502000	텔레비전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위성방송수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8525502000	텔레비전용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5509000	기타	방송통신위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550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550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55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마이크. 이어폰. 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대화형 감청설비) ● 마이크. 이어폰. 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방송통신위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 주파수대 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8525602000	텔레비전용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5602000	텔레비전용	방송통신위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5602000	텔레비전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위성방송수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560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5609000	기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58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 카메라레코더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581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고속 카메라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582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방사선 강화·내(耐)방사선 카메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583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규정된 야간 투시 카메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589	기타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5891000	초소형 카메라(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 일상소품이나 다른 전기기기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5892000	그 밖의 텔레비전 카메라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5893000	그 밖의 디지털 카메라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5899000	기타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58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장비내부에 초소형카메라 및 음성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영상 및 음성을 촬영하여 송신할 수 있는 소형장치(마이크가 내장된 초소형카메라형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26101000	항공기용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1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6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61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26911010	항공기용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911090	기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91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내비게이션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6912010	항공기용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912090	기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912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내비게이션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6913010	항공기용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913020	자동차용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913020	자동차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6913020	자동차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내비게이션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6913090	기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913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내비게이션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6914000	로란 리시버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919010	항공기용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919020	자동차용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자동차용 휴대용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6919020	자동차용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919020	자동차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6919020	자동차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내비게이션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691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자동차용 휴대용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6919090	기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269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691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내비게이션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1. [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휴대용 레이저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원격제어방송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131000	카세트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7131000	카세트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131000	카세트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132000	디스크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7132000	디스크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132000	디스크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13300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713300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13300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13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713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13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MP3 PLAYER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71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1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211000	카세트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272120	디스크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27213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721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27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7911010	카세트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7911010	카세트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911010	카세트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911020	디스크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7911020	디스크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911020	디스크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91103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791103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91103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라디오수신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91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791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911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9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791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91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79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79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79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42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2842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니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4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84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528491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849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491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28491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니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4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84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528492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8492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492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28492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니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521000	액정모니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8521000	액정모니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521000	액정모니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니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52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852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52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니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5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85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528591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859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591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28591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니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5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285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528592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8592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592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28592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니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62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프로젝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6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286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프로젝터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프로젝터 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실물화상기(OHP)● 투영기(슬라이드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OHP, 필름투영기)● 입체영상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6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프로젝터 ● 실물화상기(OHP) ● 투영기(슬라이드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711000	비디오 튜너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8712020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것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8712020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712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8712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713000	TV튜너가 내장된 프로젝터	[전파법] 1.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71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87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장비내부에 안테나. 이어폰이 내장되어 있고, 원거리에서 송신된 영상 및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영상 및 음성 수신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28722000	액정디스플레이 방식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722000	액정디스플레이 방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안전확인신고를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하며,당해전기용품은안전확인기관의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음(기계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 ●텔레비전수상기●텔레비전내장형전자칠판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2.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CATV방송수신기●TV용셋톱박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72500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방식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72500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방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안전확인신고를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하며,당해전기용품은안전확인기관의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음(기계기구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 ●텔레비전수상기●텔레비전내장형전자칠판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2.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CATV방송수신기●TV용셋톱박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726000	마이크로 LED 방식	[전파법] 1.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72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2872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텔레비전 수상기 ●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872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텔레비전 수상기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72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장비내부에 안테나. 이어폰이 내장되어 있고, 원거리에서 송신된 영상 및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영상 및 음성 수신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28730000	기타(단색)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텔레비전수상기(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모니터[(모니터,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다만,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터(다만,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CATV방송수신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28730000	기타(단색)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텔레비전 수상기 ●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291099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31101000	도난경보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1102000	화재경보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1102000	화재경보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1103000	가스경보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1103000	가스경보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휴대용 경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자동다이얼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120100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번호표시기)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착신표시기) ● 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번호표시기)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착신표시기) ● 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1802000	도어벨・차임・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18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1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18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착신표시기) ● 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1901000	소호 제8531.10호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1902000	소호 제8531.20호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19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2210000	탄탈륨의 것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2250000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2290000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29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3310000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33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34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34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35100000	퓨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5301000	정격전압 7.25 킬로볼트 미만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5301000	정격전압 7.25 킬로볼트 미만의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개폐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35302000	정격전압 7.25킬로 볼트 이상 72.5 킬로 볼트 미만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5302000	정격전압 7.25킬로 볼트 이상 72.5 킬로 볼트 미만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5302000	정격전압 7.25킬로 볼트 이상 72.5 킬로 볼트 미만의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개폐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인 것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개폐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3540000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5901000	커넥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5901000	커넥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5902000	터미널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5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59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5909000	기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다음의 관리대상기기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유입식 차단기 ●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8536101000	관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퓨즈 (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 ●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101000	관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1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퓨즈 (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 ●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200000	자동차단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과부하보호・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200000	자동차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200000	자동차단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누전차단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온도과승방지장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4100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4100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4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4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구동 모터 릴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1000	회전형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스위치[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1000	회전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502000	푸쉬 버튼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스위치[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2000	푸쉬 버튼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503000	마이크로형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스위치[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3000	마이크로형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3000	마이크로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504000	전자계폐형(전자접속기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스위치[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이하인 것) 2.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4000	전자계폐형(전자접속기 포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504000	전자계폐형(전자접속기 포함)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자식스위치 ● 전자개폐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스위치[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스위치[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 (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스위치[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 (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36509090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스위치[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9090	기타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5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5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 ②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산업안전보건법
	8536610000	램프홀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형광등용 소켓에 있어서는 1000V 이하)정격 전류가 50A이하인 것으로 극수가 5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형광램프 홀더 ● 에디슨 나사형 홀더 ● 기타 램프 홀더 ●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610000	램프홀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691000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691000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6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한다),플러그 및 콘센트[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퓨즈 및 퓨즈홀더[퓨즈 및 퓨즈홀더(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통형인 것에 한한다),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6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물놀이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702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702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703010	주조・주형・압착・단조(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703010	주조・주형・압착・단조(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703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703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901000	접속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901000	접속함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6901000	접속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909010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한다),플러그 및 콘센트[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스위치[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909010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909010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6909090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한다),플러그 및 콘센트[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스위치[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6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6909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7104000	배전용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7104000	배전용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71050	전기 제어용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7105010	수치 제어반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7105020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7105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7105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7203000	배전용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7203000	배전용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7204000	전기 제어용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7204000	전기 제어용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8901000	개폐기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8903000	계전기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8905000	전기제어용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89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39210000	텅스턴 할로겐의 것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221000	백열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일반조명 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그밖의 조명기구[(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221000	백열램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9223000	빔 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일반조명 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그밖의 조명기구[(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223000	빔 램프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그밖의 조명기구[(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223000	빔 램프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223000	빔 램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3922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일반조명 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그밖의 조명기구[(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229000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그밖의 조명기구[(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229000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2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92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일반조명 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그밖의 조명기구[(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안정기내장형램프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형광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안정기내장형램프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9321000	수은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수은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나트륨램프(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컬러램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메탈할라이드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램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램프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393910	냉음극 형광램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93910	냉음극 형광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안정기내장형램프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형광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3910	냉음극 형광램프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안정기내장형램프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3939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안정기내장형램프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형광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93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안정기내장형램프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39399000	기타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393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안정기내장형램프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무전극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410000	아크램프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394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9491090	기타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395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 램프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395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52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모듈(램프)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3952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52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일반조명 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그밖의 조명기구[(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9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일반조명 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그밖의 조명기구[(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39909000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0110000	천연색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120000	단색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200000	텔레비전용 촬상관 (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 (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 (photocathode tube)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4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 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601000	천연색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6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710000	자전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791000	속도변조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7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810000	수신관이나 증폭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891000	송신기용 열전자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892000	방전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8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09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2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302000	사이리스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303000	다이액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304000	트라이액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41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141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모듈(안정기 또는 컨버터 내장형 램프) ※ 단순 구조물에 능동회로가 없는 LED모듈은 대상 아님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41601000	수정전동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6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1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고령자용 위치추적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2321010	디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2321020	에스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232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233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239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3100000	입자가속기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① 사이크로트론(Cyclotron) ② 신크로트론(Synclotron) ③ 신크로 사이크로트론(Synclocylotron) ④ 선형 가속장치(Linear Accelerator) ⑤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Van de graff Accelerator) ⑥ 콕크로프트 왈톤형 가속장치(Cockrofter Walton Accelertor) ⑦ 베타트론(Betatron) ⑧ 변압기형 가속장치 ⑨ 마이크로트론 가속장치 ⑩ 가속이온주입기 ⑪ 방사광가속기 ⑫ 기타 하전입자를 가속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장치	원자력안전법
	8543100000	입자가속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3200000	신호발생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330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영동(泳動)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340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8543401000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제24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 것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8543401000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제24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 것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8543409000	기타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3702010	이온정수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543702010	이온정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3702010	이온정수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정수기(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3702010	이온정수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543702010	이온정수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이온수기 ● 전기정수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43702020	미용기기	미용기기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543702020	미용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3702020	미용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손톱정리기● 피부관리기● 안면사우나기● 모발가습기● 두피모발기● 전기머리손질기● 샴푸기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3702020	미용기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손톱정리기 ● 피부관리기 ● 안면사우나기 ● 모발가습기 ● 두피모발기 ● 전기머리손질기 ● 샴푸기기 ●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43702030	오디오믹서	미용기기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543702030	오디오믹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3702030	오디오믹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믹서를 포함한다) ● 음질조절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3702030	오디오믹서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믹서(음질조절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43702040	이퀄라이저	미용기기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543702040	이퀄라이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3702040	이퀄라이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믹서를 포함한다) ● 음질조절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3702040	이퀄라이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이퀄라이저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43702050	오존 발생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3702090	기타	미용기기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5437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3702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전기소독기(살균등을 사용하는 것에 한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전기집진기● 편집기● 전기훈증살충기● 산소이온발생기●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이온발생기 ●오존수발생장치 ● 전기방향확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이온발생기 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A/V신호수신기● 모듈레이터● 콤프레셔 게이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TV용셋톱박스류 ● 오디오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370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8543702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전기소독기 ● 애완동물목욕기 ●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전기집진기 ● 편집기 ● 전기훈증살충기 ● 산소·이온발생기 ● 공기청정기 ● 전기분무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 영상프로세서 ● 오디오프로세서 ● 전기방향탈취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 공기청정기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컴프레서 게이트 ● 신호변환장치(AD/DA) ● TV용셋톱박스류 ● 전격살충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43703000	전자번역기·전자사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3705000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용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3705000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용 제품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VoIP기능을 내장한 기기 ● 진폭변조기(종합유선방송국주전송용) ● 디지털변조기(종합유선방송국주전송용) ● 텔레비전 신호처리기(종합유선방송국주전송용)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3709020	디텍터(소호 제8541.51호의 것을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3709060	휴대용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 리더기(문자, 정지화상 또는 음성파일의 기록 및 재생용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태블릿 PC(전자 리더기) ● MP4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43709060	휴대용 밧데리로 작동하는 전자 리더기(문자, 정지화상 또는 음성파일의 기록 및 재생용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태블릿 PC(전자 리더기) ● MP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3709070	디지털신호처리기(사운드 믹싱을 위해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오디오 프로세서(오디오믹서를 포함한다)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A/D 및 D/A 신호변환기 ●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 홈오토메이션 ●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TV용셋톱박스, D/A형 셋톱박스, A/V 신호수신기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3709070	디지털신호처리기(사운드 믹싱을 위해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유선 및 무선기능이 있는 오디오 믹서 ● 유선 및 무선기능이 있는 오디오 프로세서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437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370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기포발생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에어커튼● 초음파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기타 전기세척기● 컴프레서● 팬코일유닛● 폐열회수환기장치● 전기헬스기구 ●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자시계● 콤프레셔게이트● A/V신호수신기● 모듈레이터● 전기소자기● 비디오카메라● 튜너● 리시버● 위성방송수신기● CCTV카메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입체영상기(OHP) ● 교통카드충전기 ● 원격제어방송기기 ● 오디오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 전기주류숙성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3709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 ●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 전기에어커튼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컴프레서 ● 팬코일유닛 ● 폐열회수환기장치 ● 전동형롤스크린 ● 전기헬스기구 ● 편집기 ● 오디오프로세서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프로세서 ● 전자악기 ● 영상전송기 ● 공기청정기 ● 전자시계 ● 컴프레서 게이트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전기소자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리시버 ● 위성방송수신기 ● CCTV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입체영상기(OHP) ● 전기주류성숙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작동 도어록 ● 전기시계 ● 전기분수기 ● 착유기 ● 전격살충기 ● 공기청정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543709090	기타	다음의 것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대기환경보전법
	85437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특정장소에서 휴대폰 통화 등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 할 수 있는 장치(전파차단기)	통신비밀보호법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54390900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85439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적외선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수신 할 수 있는 장치(적외선통신방식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421010	전기통신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42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42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422010	전기통신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4422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42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429010	전기통신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442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42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491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491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49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4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4492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492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492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492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492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49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499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499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499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499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49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5444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46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6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4603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4603090	기타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54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547900000	기타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8549110000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21000	납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22000	카드뮴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23000	수은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③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30000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된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41000	철강·구리·니켈·아연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42000	망간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4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190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211000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212000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2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291000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292000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2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311000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312000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31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391000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392000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3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912000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991000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54999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②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70110000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70191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이하인 것	농업용 트랙터의 원동기 배출가스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인증생략을 받아 농업기계화촉진법 검정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농업기계화촉진법

	8701912000	농업용 트랙터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701922000	농업용 트랙터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701932000	농업용 트랙터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701942000	농업용 트랙터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701952000	농업용 트랙터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702101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2101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2102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2102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2102020	중고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02103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2103010	신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02103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2103020	중고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02901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2901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2902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2902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2903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2903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101000	설상 주행용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101000	설상 주행용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101000	설상 주행용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102000	골프용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102000	골프용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102000	골프용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109000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10900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109000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의료용스쿠터	의료기기법
	8703109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1700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1700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1700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1800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1800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스테이션 웨건과 경주용차량 포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1800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2700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2700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2700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2800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2800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2800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31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3101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3101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31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3102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3102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39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3901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3901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39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3902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3902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41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4101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4101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41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4102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4102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49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4901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4901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49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24902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24902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1700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31700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1700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1800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31800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1800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21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32101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2101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21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32102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2102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29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32901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2901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29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32902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2902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3700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33700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3700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3800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333800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33800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390000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덤프트럭 : 적재용량이 12톤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이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함	건설기계관리법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8704211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1101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21101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211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1102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21102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219010	냉동차·냉장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19010	냉동차·냉장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219010	냉동차·냉장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219020	탱크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19020	탱크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219020	탱크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219090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19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21909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221011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21011	신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04221012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21091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21092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29010	냉동차·냉장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29020	탱크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29090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31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31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39010	냉동차·냉장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39020	탱크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239090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311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31101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31101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311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31102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31102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319010	냉동차·냉장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319010	냉동차·냉장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319010	냉동차·냉장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319020	탱크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319020	탱크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04319090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319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31909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321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321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329010	냉동차·냉장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329020	탱크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329090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901010	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901010	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901010	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901020	중고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901020	중고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901020	중고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909010	냉동차·냉장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909010	냉동차·냉장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909010	냉동차·냉장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909020	탱크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909090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4909090	기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4909090	기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05101000	신축붐식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 ③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705101000	신축붐식	다음의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75㎾이상 130㎾이하는 2006년 1월 1일부터, 75㎾미만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① 기중기	대기환경보전법
	8705101000	신축붐식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102000	앵글식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 ③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705102000	앵글식	다음의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75㎾이상 130㎾이하는 2006년 1월 1일부터, 75㎾미만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① 기중기	대기환경보전법
	8705102000	앵글식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 ③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705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75㎾이상 130㎾이하는 2006년 1월 1일부터, 75㎾미만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① 기중기	대기환경보전법
	8705109000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300000	소방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 ③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9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 ③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8705901090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909010	구난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909020	도로청소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909030	이동공작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909040	이동방송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909050	이동진료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909070	제설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5909090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6002000	제8702호의 것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6003000	제8703호의 것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6003000	제8703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6004000	제8704호의 것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6004000	제8704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6005000	제8705호의 것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7100000	제8703호의 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7100000	제8703호의 차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7902000	제8702호의 것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7903000	제8704호의 것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7903000	제8704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7904000	제8705호의 것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210000	안전벨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951000	에어벡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95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991030	제8703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991040	제8704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8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9110000	전기식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9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09900000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10001000	전차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ㅇ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ㅇ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ㅇ 총포신, 기관부, 포가, 소음기, 조준경	방위사업법
	8710002000	그 밖의 장갑차량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ㅇ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ㅇ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ㅇ 총포신, 기관부, 포가, 소음기, 조준경	방위사업법
	8710009000	부분품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ㅇ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ㅇ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ㅇ 총포신, 기관부, 포가, 소음기, 조준경	방위사업법
	8711101000	모터사이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놀이용 킥보드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인증대상에서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8711101000	모터사이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1102000	모페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놀이용 킥보드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인증대상에서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8711102000	모페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11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1201000	모터사이클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11201000	모터사이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1209000	기타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11209000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놀이용 킥보드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인증대상에서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8711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1301000	모터사이클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11301000	모터사이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1309000	기타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11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11401000	모터사이클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11401000	모터사이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1409000	기타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114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11501000	모터사이클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11501000	모터사이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1509000	기타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11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11601000	모터사이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711601000	모터사이클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7116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7116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711901000	모터사이클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11901000	모터사이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119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711909000	기타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8711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2001000	경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120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12009020	삼륜자전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71200909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87120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이륜자전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7120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동식휠체어 ② 전동식휠체어	의료기기법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3900000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동식휠체어 ② 전동식휠체어	의료기기법
	8713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49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고령자용 보행차 ②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모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16310000	탱커트레일러와 탱커세미트레일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16390000	기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16400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8716801000	손수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쇼핑카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716801000	손수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8716801000	손수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716802000	우마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16803000	썰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716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802111000	군용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ㅇ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ㅇ 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방위사업법
	8802121000	군용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ㅇ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ㅇ 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방위사업법
	8806	무인기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2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21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22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230000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240000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290000	기타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9	기타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91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92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930000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940000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806990000	기타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8906100000	군함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ㅇ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ㅇ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ㅇ 총포신, 기관부, 포가, 소음기, 조준경	방위사업법
	8906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물놀이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906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8907100000	공기주입식 부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907901000	부교(소호 제890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907902000	탱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907904000	부잔교(landing stage)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907905000	부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8907906000	수로부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907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1300000	콘텍트렌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01300000	콘텍트렌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1400000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다음의 것으로서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경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차광보안경 ② 유리보안경 ③ 플라스틱 보안경 ④ 도수렌즈 보안경	산업안전보건법
	9001501000	시력 교정용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01501000	시력 교정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1501000	시력 교정용	다음의 것으로서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경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차광보안경 ② 유리보안경 ③ 플라스틱 보안경 ④ 도수렌즈 보안경	산업안전보건법
	900150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01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1509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경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차광보안경 ② 유리보안경 ③ 플라스틱 보안경 ④ 도수렌즈 보안경	산업안전보건법
	9001901000	프리즘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01901000	프리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1902000	반사경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01902000	반사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1903000	그 밖의 렌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01903000	그 밖의 렌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190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01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2111000	사진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2119010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2119020	영사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21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2191000	현미경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2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2201000	사진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2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2901000	사진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2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31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319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물안경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안경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031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003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다음의 것으로서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경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차광보안경 ② 유리보안경 ③ 플라스틱 보안경 ④ 도수렌즈 보안경	산업안전보건법
	9004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선글라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04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004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4109000	기타	다음의 것으로서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경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차광보안경 ② 유리보안경 ③ 플라스틱 보안경 ④ 도수렌즈 보안경	산업안전보건법
	9004901000	시력교정용 안경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04902000	3D 입체영상용 안경(능동방식인지 수동방식인지에 상관없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04902000	3D 입체영상용 안경(능동방식인지 수동방식인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4902000	3D 입체영상용 안경(능동방식인지 수동방식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의 것으로서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경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차광보안경 ② 유리보안경 ③ 플라스틱 보안경 ④ 도수렌즈 보안경	산업안전보건법
	9005100000	쌍안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6531000	특수용도 사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653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6591000	특수용도 사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6910000	카메라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69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07100000	촬영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08500000	투영기・확대기와 축소기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008500000	투영기・확대기와 축소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 ●슬라이드투영기●필름스트립투영기●OHP●필름투영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10101000	인쇄 제판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0109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01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0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동형 롤스크린[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12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1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1802000	금속 현미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1804000	생물 현미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1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21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2102000	회절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3101000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ㅇ 권총・소총・기관총・공기총・엽총・포 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되는 조준경	방위사업법
	9013101000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소총・기관총・포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되는 조준경 : 경찰청장 ● 공기총・엽총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조준경 : 시도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013109000	기타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ㅇ 권총・소총・기관총・공기총・엽총・포 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되는 조준경	방위사업법
	9013109000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소총・기관총・포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되는 조준경 : 경찰청장 ● 공기총・엽총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조준경 : 시도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휴대용 레이저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3803000	도어아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3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41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410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48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5100000	거리측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5200000	경위의와 시거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5300000	수준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5801000	토지 측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5802000	수로 측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5803000	해양 측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5804000	수리 측량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5805000	기상 관측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5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6001000	직시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6002000	전자식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계량에관한법률
	9016002000	전자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6008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7101000	플로터	다음의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시행하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드래프팅머신	전파법
	90171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시행하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드래프팅머신	전파법
	9017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7801000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78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111000	심전계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111000	심전계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11000	심전계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111000	심전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812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12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131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131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39000	부분품과 부속품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139000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400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400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1400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8191000	뇌파계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191000	뇌파계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91000	뇌파계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191000	뇌파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819800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198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98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198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19800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321000	주사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321000	주사침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322000	봉합침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329000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재사용가능채혈침 ② 일회용채혈침 ③ 재사용가능천자침 ④ 일회용천자침 ⑤ 일회용마취용천자침 ⑥ 재사용가능요추천자도구한벌 ⑦ 일회용요추천자도구한벌 ⑧ 재사용가능요추천자침 ⑨ 일회용요추천자침 ⑩ 재사용가능흉막복막침 ⑪ 일회용흉막복막침 ⑫ 일회용양수천자도구한벌 ⑬ 재사용가능투관침 ⑭ 일회용투관침 ⑮ 재사용가능생검침 16^ 일회용생검침 17^ 골수생검도구한벌 18^ 신장생검도구한벌 19^ 폐생검도구한벌 20^ 뇌생검도구한벌	의료기기법
	901839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39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392000	카테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392000	카테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398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398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398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8491000	치과용 버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491000	치과용 버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491000	치과용 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8492000	치과용 유닛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492000	치과용 유닛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492000	치과용 유닛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493000	치석 제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493000	치석 제거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493000	치석 제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849800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498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498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498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50109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501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501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5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901000	임신진단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901000	임신진단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901000	임신진단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8901000	임신진단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1890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90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90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8902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90209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18903000	산부인과용 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903000	산부인과용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890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90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90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 등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90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 등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8905000	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906000	경피전기신경자극기	미용기기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907000	수의과용 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8907000	수의과용 기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8907000	수의과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890890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890890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18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 마사지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욕조(소용돌이욕조(욕조용기포발생기포함),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 마사지기 ● 전기욕조(소용돌이욕조(욕조용기포발생기포함),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9202000	산소 흡입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9202000	산소 흡입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9202000	산소 흡입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9204000	인공호흡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9204000	인공호흡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9204000	인공호흡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1920800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19208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9208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19208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20001000	가스마스크	다음의 것으로서 산소가 18% 미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분진 또는 유해가스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 및 외기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방진마스크 ② 방독마스크 ③ 송기마스크 ④ 전동식호흡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9020001000	가스마스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0008000	기타의 호흡용 기기	다음의 것 중 ①항내지 ③항의 것은 분진 또는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고 ④항의 것은 산소결핍장소 또는 가스, 증기, 분진의 흡입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방진마스크 ② 방독마스크 ③ 송기마스크 ④ 전동식호흡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902000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000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다음의 것으로서 산소가 18% 미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분진 또는 유해가스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 및 외기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방진마스크 ② 방독마스크 ③ 송기마스크 ④ 전동식호흡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21101000	스크루・스테이플・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10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210000	의치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210000	의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9021290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290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9021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1310000	인공관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1310000	인공관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39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90213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1391000	인공수정체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39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19010	스크루・스테이플・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의 것을 제외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9021901010	스텐트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901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90800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1908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908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9021908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214109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2141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214109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22141090	기타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14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142000	수의과용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22142000	수의과용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142000	수의과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2191000	물리・화학시험용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① 엑스선형광분석기기 ② 엑스선재료배합분석기기 ③ 엑스선금형계측기기 ④ 엑스선귀금속 각도 측정기기 ⑤ 엑스선라디오그래픽기기 ⑥ 엑스선물체감식기기 ⑦ 엑스선품질검사기기 ⑧ 엑스선조사장치 ⑨ 엑스선회절분석기기 ⑩ 엑스선수화물검색기 ⑪ 엑스선두께측정기 ⑫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엑스선을 이용한 측정 또는 분석기 등	원자력안전법
	9022191000	물리・화학시험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2191000	물리・화학시험용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2192000	공업용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① 엑스선형광분석기기 ② 엑스선재료배합분석기기 ③ 엑스선금형계측기기 ④ 엑스선귀금속 각도 측정기기 ⑤ 엑스선라디오그래픽기기 ⑥ 엑스선물체감식기기 ⑦ 엑스선품질검사기기 ⑧ 엑스선조사장치 ⑨ 엑스선회절분석기기 ⑩ 엑스선수화물검색기 ⑪ 엑스선두께측정기 ⑫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엑스선을 이용한 측정 또는 분석기 등	원자력안전법
	9022192000	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192000	공업용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2199000	기타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① 엑스선형광분석기기 ② 엑스선재료배합분석기기 ③ 엑스선금형계측기기 ④ 엑스선귀금속 각도 측정기기 ⑤ 엑스선라디오그래픽기기 ⑥ 엑스선물체감식기기 ⑦ 엑스선품질검사기기 ⑧ 엑스선조사장치 ⑨ 엑스선회절분석기기 ⑩ 엑스선수화물검색기 ⑪ 엑스선두께측정기 ⑫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엑스선을 이용한 측정 또는 분석기 등	원자력안전법
	9022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211030	코발트 60 치료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2211030	코발트 60 치료기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2211030	코발트 60 치료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21109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2211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2211090	기타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암치료기 ② 기타 치료용 기기 등	원자력안전법
	902221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21109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22212000	수의과용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22212000	수의과용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212000	수의과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29	그 밖의 용도의 것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2291000	물리・화학시험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① 방사선 추적자 이용의 것 가. 공업용의 유속, 누수,유량, 하수구 이동등 추적자 조사기기 나. 기계마모 추적자측정기기 다. 윤활유 순환 추적자 조사기기 라. 용광로 감손량 추적자 측정기기 마. 공정해석 추적자 분석기기 바. 분석, 반응, 구조결정, 추적자 시험기기 사. 생체기능 시험용기기 아. 생화학연구 시험용기기 자. 유전자공학 연구용기기 차. 시비법 시험기기 ② 이온발생용의 것 가. 연기감지기(Smoke Detector) 나. 형광등 글로우 방전관(Glow Discharge Tube in Fluorescence) 다. 표시용 방전관(Indicating Discharge Tube) 라. 진공계(Vacuum Gauge)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바. 전리방사선유도(피뢰침) 장치(Lightning Radiation Lightning) ③ 계측제어용의 것 가. 두께계(Thickness Guage) 나. 레벨계(Level Gauge) 다. 밀도계(Density Gauge) 라. 농도계(Concentration Gauge) 마. 설량계(Snow Gauge) 바. 지하검측계(Slab Position Detector) 사. 중성자 수분계(Neutron Moisture Gauge) 아. 유황분석계(Sulfur Meter) 자. 정전제거장치(Static Eliminator) 차. 방사선릴레이(Radiation Relay)	원자력안전법
	9022291000	물리・화학시험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292000	공업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① 방사선 추적자 이용의 것 가. 공업용의 유속, 누수,유량, 하수구 이동등 추적자 조사기기 나. 기계마모 추적자측정기기 다. 윤활유 순환 추적자 조사기기 라. 용광로 감손량 추적자 측정기기 마. 공정해석 추적자 분석기기 바. 분석, 반응, 구조결정, 추적자 시험기기 사. 생체기능 시험용기기 아. 생화학연구 시험용기기 자. 유전자공학 연구용기기 차. 시비법 시험기기 ② 이온발생용의 것 가. 연기감지기(Smoke Detector) 나. 형광등 글로우 방전관(Glow Discharge Tube in Fluorescence) 다. 표시용 방전관(Indicating Discharge Tube) 라. 진공계(Vacuum Gauge)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바. 전리방사선유도(피뢰침) 장치(Lightning Radiation Lightning) ③ 계측제어용의 것 가. 두께계(Thickness Guage) 나. 레벨계(Level Gauge) 다. 밀도계(Density Gauge) 라. 농도계(Concentration Gauge) 마. 설량계(Snow Gauge) 바. 지하검측계(Slab Position Detector) 사. 중성자 수분계(Neutron Moisture Gauge) 아. 유황분석계(Sulfur Meter) 자. 정전제거장치(Static Eliminator) 차. 방사선릴레이(Radiation Relay)	원자력안전법
	9022292000	공업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292000	공업용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2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299000	기타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2300000	엑스선관	방사선발생장치의 주요부분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300000	엑스선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방사선발생장치의 주요부분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방사선발생장치의 주요부분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90109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2901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2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2909010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2909010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290909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3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4101000	경도시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4104000	피로시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4105000	만능시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볼이나 와이어의 접착력·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4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4801020	마모시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48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4809010	탄성시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48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5111000	의료용・수의과용 온도계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5111000	의료용・수의과용 온도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5119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5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5119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025191000	온도계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5191000	온도계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5191000	온도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5191000	온도계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5191000	온도계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519209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519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5192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5192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02580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25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2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6101000	유량계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101000	유량의 측정·검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6101000	유량의 측정·검사용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6102000	액면의 측정·검사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102000	액면의 측정·검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6102000	액면의 측정·검사용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6202000	액체형 압력계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203000	금속형 압력계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204000	전기식 압력계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209000	기타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62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6801000	열측정계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801000	열측정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6802000	풍력계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802000	풍력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026809000	기타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8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6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6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9022.29-1000의 수입요령 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및 이에 내장하여 사용하는 전자포획검출기(ECD)	원자력안전법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27303000	분광사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7304000	분광계・분광광도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27501000	편광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7502000	굴절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7503000	비색계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027503000	비색계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9027503000	비색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7504000	조도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750900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7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7509000	기타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2750900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27810000	질량분석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2789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789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789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27892020	열량계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적산식 열량계(호칭 구경이 350 mm 이하의 것으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함)	계량에관한법률
	9027892030	점도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2789209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027892090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27901000	마이크로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7909091	가스·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7909099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8101010	디지털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8101010	디지털식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8101010	디지털식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스미터(최대유량 1000 ㎥/h 이하의 것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90281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8101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81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스미터(최대유량 1000 ㎥/h 이하의 것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9028102000	검정용 계기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8201010	디지털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8201010	디지털식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8201010	디지털식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LPG 미터(자동차 충전용으로 호칭지름 40 mm 이하인 것에 한함) ② 수도미터(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함) ③ 온수미터(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함) ④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함) ⑤ 주유기(자동차 주유용에 한함) ⑥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90282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8201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82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LPG 미터(자동차 충전용으로 호칭지름 40 mm 이하인 것에 한함) ② 수도미터(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함) ③ 온수미터(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함) ④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함) ⑤ 주유기(자동차 주유용에 한함) ⑥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9028202000	검정용 계기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8202000	검정용 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8301010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8301010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8301010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것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전력량계 ②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에 관한 법률
	9028301020	전류가 50암페어 미만인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8301020	전류가 50암페어 미만인 것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8301020	전류가 50암페어 미만인 것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전력량계 ②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에 관한 법률
	9028302000	검정용 계기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8302000	검정용 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29101000	적산회전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9102000	생산량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9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910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자식 운행기록계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029201010	시계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92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9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29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31000	전압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31000	전압계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32000	전류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32000	전류계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33000	회로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33000	회로계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34000	저항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34000	저항계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3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3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91000	전압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91000	전압계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92000	전류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92000	전류계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93000	회로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93000	회로계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94000	저항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94000	저항계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39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040000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3040000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82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8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901000	소호 제9030.82호의 것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및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30901000	소호 제9030.82호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901000	소호 제9030.82호의 것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9030909000	기타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및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30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09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1100000	균형시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200000	테스트벤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41200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4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494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4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802000	로드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802000	로드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18090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809020	기어 테스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1809070	흠·균열 등 측정기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및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9031809070	흠·균열 등 측정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809080	동력시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8090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809099	기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031901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1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1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2101010	냉장고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온도조절기 ● 에너지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32101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온도조절기 ● 에너지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321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2102000	고정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2102000	고정식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온도조절기 ● 에너지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3289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32892010	항공기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32892090	기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32892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032893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28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032899090	기타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03289909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2909000	기타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03300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1210000	자동권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1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1910000	전기구동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19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11000	시각장애인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1901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2100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29010	시각장애인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2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9100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99010	시각장애인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9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19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211000	시각장애인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2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2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291000	시각장애인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292000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2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911000	스톱워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912000	시각장애인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91901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91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991000	스톱워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992000	시각장애인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2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5110000	전기구동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5110000	전기구동식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시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105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105210000	전기구동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5210000	전기구동식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시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9105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5910000	전기구동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5910000	전기구동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시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91059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통화시간기록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9106902000	타이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6902000	타이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9106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700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8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8200000	자동권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8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9100000	전기구동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09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11800000	그 밖의 케이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12200000	케이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13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13902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113902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205901040	리코더(recorder)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학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205904000	하모니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205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206001000	북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206003000	심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학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207103000	피아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207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207901000	기타(guitars)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207902000	아코디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207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208100000	뮤지컬박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전기,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에 한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208100000	뮤지컬박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301101000	자주식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101000	자주식	군용이외의 것으로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장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② 검(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③ 창(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④ 치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⑤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⑥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의 것) ⑦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⑧ 월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⑨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1109000	기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109000	기타	군용이외의 것으로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장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② 검(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③ 창(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④ 치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⑤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⑥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의 것) ⑦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⑧ 월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⑨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인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군용 이외의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총・소총・기관총・포 : 경찰청장 ② 그 밖의 총 : 시도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군용 이외의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총・소총・기관총・포 : 경찰청장 ② 그 밖의 총 : 시도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1902010	노리쇠작동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2010	노리쇠작동	군용 이외의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총・소총・기관총・포 : 경찰청장 ② 그 밖의 총 : 시도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1902020	반자동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2020	반자동	군용 이외의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총・소총・기관총・포 : 경찰청장 ② 그 밖의 총 : 시도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1902030	완전자동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2030	완전자동	군용 이외의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총・소총・기관총・포 : 경찰청장 ② 그 밖의 총 : 시도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1902090	기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2090	기타	군용 이외의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총・소총・기관총・포 : 경찰청장 ② 그 밖의 총 : 시도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1903000	기관총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3000	기관총	군용 이외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	군용 이외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1904090	기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4090	기타	군용 이외의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총・소총・기관총・포 : 경찰청장 ② 그 밖의 총 : 시도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1909000	기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1909000	기타	군용 이외의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총·소총·기관총·포 : 경찰청장 ② 그 밖의 총 : 시도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2001010	리볼버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1021	반자동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1029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1030	피스톨(다열총열)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109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9010	리볼버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9010	리볼버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군용이외의 권총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2009021	반자동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9021	반자동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군용이외의 권총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2009029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9029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군용이외의 권총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2009030	피스톨(다열총열)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9030	피스톨(다열총열)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군용이외의 권총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200909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20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군용이외의 권총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100000	총구장전 화기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100000	총구장전 화기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1011	펌프작동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201011	펌프작동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1012	반자동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201012	반자동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1019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201019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109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2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9011	펌프작동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9012	반자동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9019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2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301010	단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301010	단발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301020	반자동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301020	반자동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30109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33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309010	단발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309020	반자동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3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390000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공포용 권총 ② 경기용총과 표적사격용총 ③ 경기용, 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방위사업법
	9303900000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권총,소총,기관총은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여타의 것은 경찰서 경유 시도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4001000	공기총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4001000	공기총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 ① 스프링총 ② 공기총 ③ 분사기(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 휴대용 분사기) ④ 전자충격기(총포, 막대형, 기타 휴대용 전자충격기) 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포로 분류되는 것(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400900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40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 ① 스프링총 ② 공기총 ③ 분사기(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 휴대용 분사기) ④ 전자충격기(총포, 막대형, 기타 휴대용 전자충격기) 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포로 분류되는 것(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40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비비탄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30400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305101010	격발장치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1010	격발장치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1030	총열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1030	총열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1040	피스톤・잠금러그・가스완충기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1040	피스톤・잠금러그・가스완충기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109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1090	기타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9010	격발장치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9010	격발장치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9030	총열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9030	총열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9040	피스톤・잠금러그・가스완충기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9040	피스톤・잠금러그・가스완충기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9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9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10909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109090	기타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201000	산탄총의 총열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201000	산탄총의 총열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209010	라이플 총열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209010	라이플 총열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209020	탄알집과 그 부분품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권총,소총,기관총의 부품은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여타의 것은 경찰서 경유 시도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20909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209090	기타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11010	격발장치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11010	격발장치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11030	총열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11030	총열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11040	피스톤・잠금러그・가스완충기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11040	피스톤・잠금러그・가스완충기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1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1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11070	소염기와 그 부분품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11070	소염기와 그 부분품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11080	브리치・노리쇠와 노리쇠집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11080	브리치・노리쇠와 노리쇠집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1109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11090	기타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1900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19000	기타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599000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5990000	기타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6210000	탄약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6210000	탄약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629000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6290000	기타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6301000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6301000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630900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6309000	기타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6900000	기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6900000	기타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3070000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93070000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군용이외의 것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401200000	차량용 의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4015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구 ② 간이빨래걸이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15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구 ② 간이빨래걸이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16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161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구 ② 간이빨래걸이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16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4016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16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169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구 ② 간이빨래걸이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16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4016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17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171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구 ② 간이빨래걸이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171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4017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17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17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1799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고령자용 목욕의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1800000	그 밖의 의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402109010	이발용・미용실용 의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이발용 의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2109010	이발용・미용실용 의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402109010	이발용・미용실용 의자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이발용 의자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210909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열의자, 각도조절의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21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40210909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온열의자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2901000	수술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402901000	수술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402901000	수술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402908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402908000	기타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9402908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3201000	침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403201000	침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침대 ● 전기온수침대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3201000	침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침대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수침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20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구 ② 침대 매트리스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30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구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40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구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501000	침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 어린이용 이단침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403501000	침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침대 ● 전기온수침대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3501000	침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침대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수침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50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구 ② 침대 매트리스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60909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 어린이용 이단침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403609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구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7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보행기 ●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 어린이용 이단침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4037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침대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수침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7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침대 ● 전기온수침대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38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4038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침대 ● 전기온수침대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38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침대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수침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8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4038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침대 ● 전기온수침대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38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침대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수침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8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4038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구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8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침대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수침대 ● 전동침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38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침대 ● 전기온수침대 ● 전동침대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온수매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온수매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온수매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4300000	침낭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4900000	기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9404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40490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온수매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490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1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1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 안정기 내장형램프(LED용 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1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1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519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19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인 것)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인 것) ● 샹들리에(1KW이하인 것에 한정) ● 백열전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19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192000	형광램프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안전인증을받은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하며,당해전기용품은안전인증기관의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음. ●형광등기구 ● 안정기 내장형램프(LED용 포함) ● 샹들리에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형광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192000	형광램프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1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한다)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의 것에 한한다)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무전극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수은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메탈할라이드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트륨램프(컬러램프 포함,(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컬러램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1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2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조명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2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조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인 것)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인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2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2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 안정기 내장형램프(LED용 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2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529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29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29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인 것)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인 것) ● 샹들리에(1KW이하인 것에 한정) ● 백열전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2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2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한다)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의 것에 한한다)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무전극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수은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메탈할라이드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트륨램프(컬러램프 포함,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컬러램프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3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스트링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3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3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체인형 조명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390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390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체인형 조명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4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410000	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410000	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 안정기 내장형램프(LED용 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420000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420000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 안정기 내장형램프(LED용 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420000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549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491000	방폭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491000	방폭형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9405492000	투광형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492000	투광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493000	가로등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493000	가로등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54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49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다음의 것은 수입허가 신청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입신고 검토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액화석유 가스 및 도시가스용 가스램프와 랜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4056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6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6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40569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691000	네온관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69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56990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406100000	나무로 만든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3 참조)	식물방역법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1200	스쿠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1200	스쿠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1200	스쿠터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킥보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3001300	페달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1300	페달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180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18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30018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킥보드 3.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을 하여야 함 ① 스케이트보드 ② 전기자전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3001800	기타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세그웨이(Segway) ● 전동 킥보드 (Kickboard) ● 전기 자전거 ● 전동휠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5030021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21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3002120	고무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2120	고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3002140	도자제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2150	유리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2150	유리로 만든 것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503002160	나무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21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21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300299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110	전기식 기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110	전기식 기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제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제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41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41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419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41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49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492	고무로 만든 것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492	고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495	도자제의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496	유리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497	나무로 만든 것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497	나무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499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49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500	완구(악기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600	퍼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600	퍼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어린이 전동자동차 ● 드론(카메라 장착 및 미장착용) ● RC CAR ● 전동형 승용완구 ● 모터로 동작되는 모든 완구류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91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3003919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비비탄총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3003919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3003919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503003919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제9503.00.3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4201000	당구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4202000	당구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42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43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 용구는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게임기구(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기타게임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43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 용구는 제외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레이저사격기기 ●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504400000	오락용 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450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450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450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비디오게임기구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5045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4509000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게임기구(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기타게임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4901030	볼링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49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게임기구(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기타게임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인형뽑기 ● 다트판 ● 농구게임기 ● 기타 게임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석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49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9505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5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완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5900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506110000	스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스노보드 ② 스키용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6110000	스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6120000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스노보드 ② 스키용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6120000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619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스노보드 ② 스키용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61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6210000	세일보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6290000	수상운동용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6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6320000	골프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63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6402000	탁구라켓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6403000	탁구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64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65100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65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66100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506621000	축구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6622000	농구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6623000	배구공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662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6691000	배드민턴 셔틀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66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50670000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를 포함한다)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스케이트보드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롤러스케이트 ②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670000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바퀴운동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950670000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킥보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헬스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6990000	기타	디지털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의료제품법
	9506990000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506990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롤러스포츠보호장구 ② 헬스기구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킥보드 ② 모터달린 보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5069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6990000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동식기능회복기구 ② 전동식기능회복기구	의료기기법

	9506990000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석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507101000	유리섬유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7102000	카본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7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720000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추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전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낚시관리및육성법
	9507300000	낚시 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추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전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낚시관리및육성법
	950810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50810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6에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9601901010	진주 양식용 핵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901010	진주 양식용 핵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90109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901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901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601909010	진주 양식용 핵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909010	진주 양식용 핵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90909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90909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1909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9602001000	젤라틴 캡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602001000	젤라틴 캡슐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602001000	젤라틴 캡슐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9602001000	젤라틴 캡슐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9602001000	젤라틴 캡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예: 상아아자)와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9602009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60200909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9602009090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960200909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602009090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6032100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6032100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9603290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29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29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60329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60329000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960330000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30000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30000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603900000	기타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900000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603900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603900000	기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9603900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6040000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프레스스터드와 이들의 부분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6062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6291000	조개껍질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606300000	단추의 몰드와 단추의 부분품,단추 블랭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960719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720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8100000	볼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8200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8301000	만년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83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8600000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89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609101000	연필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학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609101000	연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9102000	색연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학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609102000	색연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9103000	크레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학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609103000	크레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학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9901000	크레용·오일파스텔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학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609901000	크레용·오일파스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9902000	파스텔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학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609902000	파스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09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611001000	스탬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1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6121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612109000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612200000	잉크 패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2200000	잉크 패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6131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31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스라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6132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32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스라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613800000	그 밖의 라이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3800000	그 밖의 라이터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가스라이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9615111000	빗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511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5191000	빗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519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5901000	머리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5901000	머리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접촉성 금속장신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96159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6200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7001000	진공 플라스크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617001000	진공 플라스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7002000	보온 도시락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617002000	보온 도시락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7008000	기타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617008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7009000	부분품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9618001000	마네킹 인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800900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619001010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9619001010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619001010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9619001090	기타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탐폰, 생리대, 팬티라이너 -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산모패드) - 구강청결용 물휴지	약사법
	9619001090	기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619001090	기타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수유패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61900109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9619002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961900400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 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9619009010	유아용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liner)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9619009090	기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생용품관리법
	9620000000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목재류로 만든 물품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9620000000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일각대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9701211000	회화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1211000	회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1212000	데생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1212000	데생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1213000	파스텔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1213000	파스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19	기타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2103000	석판화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2103000	석판화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3101000	조각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3101000	조각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3102000	조상(彫像)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3102000	조상(彫像)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5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9706101000	도자기류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되는 고위험병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